

軍備統制 檢證 研究

-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1992. 9.

全星勳(政策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 은 아님.

要

約

第 I 章 序 論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 힘으로 대처하는 군사적 대응태세와 달리 軍備統制는 相互主義에 입각해서 軍事的 威脅과 戰爭의 可能性 및 전쟁 발발시의 被害를 줄이기 위한 國家政策手段이다. 군비통제는 군사적 대응태세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보다 낮은 위협수준에서 國家安保를 성취하는 政策手段으로서 軍事的 對應態勢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군비통제는 다음과 같은 目的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1) 軍事的 安定 증진과 작용-반작용 사이클에 의한 軍備競爭 중지, (2) 군사적 충돌위기 발생시 전쟁의 위협을 줄임으로써 危機時의 安定 증진, (3) 상대방의 군사활동에 대한 豫測可能性을 제고하여 相互不信과 疑惑 제거, (4) 奇襲攻擊의 위협을 제거하고 전쟁발발시 被害 최소화, (5) 우발적 혹은 비의도적 戰爭勃發 危險 감소.

이와 같은 군비통제의 목적은 군비통제조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국간에 이러한 점들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설정된 것이다. 즉 군비통제협상 당사국간에는 군사적 및 위기시의 安定水準과 豫測可能性의 程度가 우방국간에 비해 매우 낮으며 奇襲攻擊의 可能性도 상존할 뿐만 아니라 偶發的인 戰爭이 발발할 수 있는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군비통제조약 체결 당사국간에는 相互不信의 골이 깊

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따라서 군비통제조약이 규정대로 遵守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實質的이고 具體的인 檢證裝置를 조약내에 制度化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남북한은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1992.2.18~21)에서 「기본합의서」와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및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시켰다. 이에 따라 남북군사분과위원회가 1992년 3월 13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정식 가동되었으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1992년 5월 18일 구성되었다. 또한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는 1992년 3월 19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비핵화 공동선언」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實踐問題를 논의하고 있다. 이제 바야흐로 한반도에서 本格的인 軍備統制協商이 시작된 것이다.

檢證은 군비통제조약의 核心 要素로서 군비통제협상의 시작에서부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한국은 검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檢證政策을 수립하여 북한과의 군비통제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군비통제 검증을 理論的으로 고찰하고 美·蘇 및 유럽의 軍備統制와 檢證 協商經驗으로부터 한반도에 適用可能한 敎訓을 도출함과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檢證政策 推進方向을 제시하고자 한다.

第Ⅱ章 檢證의 定義

실제 군비통제협정이나 문헌에 언급된 기존의 8가지 定義를 통해 검증에 대한 認識의 變遷過程을 검토하고 새로운 시각에 입각한 分析的 定義를 제시하고자 한다. 檢證이란 일방적, 상호 협력적, 그리고 자발적인 手段과 方法으로 상대방의 條約遵守 與否에 대한 情報 不均衡(「준수정보 불균형」)을 解消하는 過程이다. 이러한 검증의 定義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검증을 目的, 特徵, 過程, 機能 및 效果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 檢證의 目的

군비통제조약에서 협정의 준수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협정 당사자들의 조약준수 여부에 대한 情報 不均衡(「준수정보 불균형」) 때문이다. 검증은 이러한 준수정보 부족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軍備統制條約의 履行過程이다.

2. 檢證의 特徵

검증은 조약 체결의 窮極的인 目的은 아니며 검증에는 司法的인 制裁 機能이 부여되지도 않는다.

3. 檢證의 過程

檢證過程은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1) 조약 협상시에 검증에 관한 제반 문제들을 함께 협의하여 구체적인 檢證方法이 조약의 일부로서 制度化되는 協商過程, (2) 각종 정보수집수단을 동원하여 상대방의 조약준수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情報蒐集 및 分析過程, (3) 분석된 정보를 기초로 상대방의 조약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위반시 초래된 정치적·전략적 不均衡을 解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判斷 및 對應過程.

4. 檢證의 機能 및 效果

검증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機能을 수행한다: (1) 상대방의 약속이행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相互信賴를 증진하고 군비통제조약이 자국의 國家安保를 증대한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주는 信賴構築機能, (2) 조약위반을 탐지하고 조기에 경보하는 安全裝置機能, (3) 조약위반의 적발가능성을 증대시켜 이를 억제하는 誘導機能, (4) 군사적 개방과 투명도 및 예측가능성 증대에 기초한 새로운 安保構築機能.

第Ⅲ章 국제레짐과 檢證

1. 국제레짐

가. 레짐의 定義

레짐은 개념적으로 원칙, 규범, 규정 및 의사결정절차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특정 레짐의 原則은 레짐 참여자들이 레짐을 만듦으로써 추구하는 目的이나 目標이며, 規範은 합법적·비합법적 행위에 관하여 레짐 참여자에게 보다 분명한 명령을 내리고 일반적인 차원에서 責任과 義務를 규정하는 단순한 行爲의 標準이다. 규정과 규범이 약간 중복될 수도 있으나 規定은 보다 구체적이고 원칙이나 규범보다는 좀 더 쉽게 변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規定은 일반적으로 조문화되는 반면 意思決定節次는 규정을 이행하는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두 개념은 분명히 구분되며, 의사결정절차는 條約의 規定履行을 위해 설치되는 「機構」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나. 레짐에 影響을 미치는 因果變數

레짐의 형성, 지속, 변화 및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利己主義, 政治的인 힘, 포괄적인 原則과 規範, 習慣 및 知識 등 다섯 가지 因果變數가 있는데 이 중 레짐 참여자의 意思決定에 궁극적 要因으로 작용하는 것은 利己主義이며 나머지 변수는 레짐 참여자의 이기주의적 계산시 고려요소로 반영된다.

「理性的인 效用 極大主義者」가 공동의 意思決定을 선호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행동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으며 각각의 경우 相互協力の 程度가 달라진다. 첫째, 「共同利害의 딜레마」에서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여 초래되는 나쁜 결과보다는 레짐에 참여하여 「相互協力」함으로써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동시에 공동의 이해를 증진하는 상황이다. 둘째, 「共同回避의 딜레마」는 레짐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결과는 없으나 공동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상황은 있는 경우로서 「相互調整」을 통해 목적을 성취한다.

다. 레짐의 意義

레짐의 형성과 관련하여 레짐은 매우 제한된 경우에만 존재의의를 갖는다는 「修正된 構造的 傳統」(modified structural tradition)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수정된 구조적 전통」은 국제사회가 각자의 利益을 極大化하려는 主權國家로 구성된다는 구조적 전통의 基本前提에는 동의하지만 특정한 경우에, 즉 개별 행동을 통해 모두에게 만족스런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경우 레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각 개인의 獨自的인 行動이 모든 참여자에게 最適이지 못한 結果를 초래하게 될 때 각 개인은 독자적인 행동을 포기하고 共同의 意思決定에 합류함으로써 레짐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군비통제를 예로 들면, 競爭的 關係에 있는 당사자들이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지 않고 獨自的인 軍備增強政策을 추진함으로써 結果的으로 軍備競爭이 발생한다. 그러나 특정 군사분야에서 상호 협력과 조정을 통해 軍備統制條約을 체결하는 것이 軍備增強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軍備統制條約 체결이 가능해진다.

라. 레짐의 變化

레짐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變化하는 바, 레짐의 변화는 두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레짐의 원칙과 규범, 즉 레짐의 규범적 틀은 그대로이나 세부규정에 변화가 오는 「規範 範圍內的 變化」이다. 둘째, 레짐의 規範的 틀에 變化가 오는 경우이다. 이 경우 레짐의 원칙과 규범이 수정되거나 포기됨으로써 레짐 자체에 根本的인 變化를 초래하게 된다.

마. 레짐의 自律性

레짐의 자율성은 遲延과 歸還이라는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난다. 遲延은 레짐이 因果變數의 영향을 덜 받고 이들 변수로부터 獨立되는 상황을 말한다. 歸還은 이미 존재하는 레짐이 레짐형성의 인과변수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부분안보레짐과 檢證

가. 부분안보레짐

국가간의 전반적인 安保關係를 하나의 레짐으로 파악하기보다는 部分的인 懸案들로 구성된 모자이크로 간주하고 특정 軍비통

제조약을 개별 懸案에 대한 안보레짐, 즉 부분안보레짐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간에 왜 일부 현안에 대해서만 군비통제조약이 체결되었는지를 설명하고 레짐 이론을 개별 軍備統制條約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전제에서 국제레짐 이론은 軍備統制條約과 檢證의 關係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인 틀을 제공해 주고 있다.

부분안보레짐의 形成은 수정된 구조적 전통에 입각하여 상당히 제한된 조건하에서, 즉 레짐 참여자들의 개별 행동으로는 참여자 모두에게 최적의 결과인 파레토 最適點(Pareto-optimal point)을 도출할 수 없을 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전제를 따른다. 환언하면 軍備統制條約이 존재하는 경우, 당사국들은 레짐이 커버하는 분야에서 근시안적인 利己主義에 의한 軍備增強行動을 自制하게 된다.

나. 부분안보레짐의 事例

「核武器擴散禁止條約」의 원칙은 核武器의 水平的 擴散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므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핵무기 확산금지 레짐의 규범은 (1) 핵보유국은 타국의 核武裝 能力保有에 도움을 주지 말 것, (2) 핵비보유국은 核保有 努力을 포기할 것, (3) 핵의 平和的 利用을 위한 協力은 계속할 것, (4) 평화적 핵이용이 軍事的 目的으로 轉用되는 것을 막기 위해 IAEA에 의한 적절한 檢證을 실시할 것 등이다. 이러한 원칙과 규범이 1968년에 체결된 「핵무기확산금지조약」으로 조문화되었다.

핵무기확산금지 레짐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機構를 두고 있다: (1) 「NPT」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5년마다 개최되는 「檢討會議」, (2)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國際原子力機構」, (3) 개발도상국에 핵연료와 장비를 수출하는 지침과 절차를 만들어 내는 「核輸出國委員會」, (4) 상업적 경쟁으로 안전검사체제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포드행정부의 주도로 결성된 「核供給그룹」, (5) 카터행정부의 주도로 핵연료 주기의 모든 면을 토의하기 위해 개최된 「國際核燃料週期評價會議」, (6) 미국의 「核武器擴散禁止法案」.

다. 안보레짐과 기타 분야 레짐의 差異

레짐에 관한 연구는 주로 經濟分野에 치중되어 있다. 그러나 경제분야에서는 레짐의 違反問題가 안보분야에서처럼 심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遵守檢證問題가 레짐이론적 측면에서 다루어진 예는 거의 없다. 반면에 군사 및 안보분야에서는 문제의 重要性, 사안의 秘密性, 이에 따른 監視 및 情報獲得의 어려움, 조약위반 시 國家安保에 미치는 여파 등 제반 요인 때문에 검증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

라. 檢證: 부분안보레짐의 規範

일반적으로 군비통제 레짐의 原則은 다음과 같은 군비통제조약 체결의 目的으로 볼 수 있다: (1) 군사관계의 安定 증진과 軍備競爭 중지, (2) 위기시의 安定 증진, (3) 豫測可能性 제고, (4) 奇襲攻擊能力 제거 및 戰爭被害 최소화, (5) 우발적 戰爭勃

發 위험 감소. 檢證은 레짐의 구조상 군비통제조약의 遵守 與否를 확인하는 정도 혹은 기준을 표시하는 부분안보레짐의 規範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검증이 레짐의 원칙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조약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조약체결의 목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檢證 規範은 구체적인 檢證條項의 형태로 條文化되며 조약의 원활한 履行과 조약준수와 관련한 紛爭 해결을 위한 機構들도 조약내에 제도화된다.

마. 檢證 基準

부분안보레짐의 檢證規範도 하나의 固定된 規範이 있는 것은 아니며 檢證受容程度(혹은 검증에 사용되는 검사방법의 강도)와 條約違反을 평가하는 基準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의 검증규범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조약에 특정한 검증기준을 두지 않는 無檢證基準, (2) 준수분쟁 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명과 협의절차를 명시하는 象徵檢證基準, (3)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험과 전략적 불균형을 초래할 정도의 위반을 적시에 탐지하여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時間 確保를 목표로 하는 適切檢證基準, (4) 소규모의 조약위반도 중요하게 간주하며 기술적으로 浸透성이 강한 검증방법인 現場檢查를 허용하는 效果檢證基準, (5) 조약준수 여부에 대한 100% 검증을 의미하는 完璧檢證基準.

第Ⅳ章 檢證의 歷史와 事例

1. 檢證의 歷史

가. 1899년 헤이그 平和會議

檢證問題가 국제무대에서 처음으로 公式 提起된 것은 1899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平和會議에서였다. 그러나 헤이그 平和회의에서는 軍備縮小에 대한 具體的인 合意가 없었으며 따라서 檢證문제도 자세하게 논의되지 않았다.

나. 1920년대와 1930년대

제1차 세계대전후 실시되었던 唯一한 軍備統制 檢證은 「베르사이유 條約」을 통해 패전국 독일의 武裝解除 與否를 확인하기 위한 聯合軍의 檢査였다. 그러나 패전국 독일의 軍備해제에 대한 檢査는 독일의 計劃的인 條約違反으로 인해 성공적으로 실시되지 못했다. 대부분의 軍備통제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 기간중 에 중요한 軍備統制 業績은 바로 1922년 2월 6일에 체결된 「워싱턴 海軍條約」이다. 그러나 이 조약에는 檢證에 관한 조항이 없었으며 단지 조약 참가국들의 信賴에 전적으로 의존할 뿐이었다.

다. 1945~1962년: 軍備縮小 論議時代

「全般的이고 完全한 軍備縮小」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던 이 시기에는 아무리 사소한 조약위반도 조약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

하는 「司法的」 觀點에서 條約의 違反 與否가 다루어졌다. 검증에 대한 東·西間의 見解差도 매우 심했지만 이러한 양 진영간의 견해차이는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것이었다. 서방측은 檢證이 軍備統制條約에 先行하기를 원했고 상대측의 軍事力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情報獲得을 軍비통제조약 체결의 필수불가결한 前提條件으로 간주한 반면, 소련은 서방측의 檢證構想을 間諜行爲의 조짐으로 인식하였다.

라. 1963~1979년: 데탕트時代

1960년대의 軍備統制協商은 「전반적이고 완전한 軍비축소」라는 포괄적인 제안보다는 檢査問題가 덜 심각한 보다 범위가 縮小된 提案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범위가 制限된 個別的인 軍備統制條約에 대한 檢證이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이 기간중에는 검증문제가 「戰略的」 觀點에서 “어느 정도의 探知能力이면 군사적으로 중요한 條約違反을 막을 수 있을까”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전략적 관점이 수용될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人工衛星을 통한 革新的인 遠距離 偵察技術의 발전이었다.

마. 1980~1986년: 緊張時代

미·소관계가 競爭과 敵對感으로 특징지워지는 이 時期에는 단 하나의 구조적 軍備統制條約도 체결되지 못했다. 검증문제도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졌으며 檢證이 軍비통제조약의 締結 與否를

결정지을 수 있는 요소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레이건행정부는 닉슨, 포드 및 카터행정부에서 채택했던 「適切한 檢證」과는 달리 「效果的 檢證」이라는 보다 嚴格한 檢證基準을 채택하여 강력한 검증을 요구함으로써 軍비통제협상 進전에 어려움을 加증시켰다.

바. 1987년~현재: 新데탕트時代

1987년 12월 레이건과 고르바초프간에 체결된 「中距離核미사일廢棄條約」은 미·소 양국관계가 和解와 協力關係로 變化된 新데탕트時代의 도래를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였다. 레이건의 뒤를 이은 부시행정부도 檢證을 軍縮協商의 주요 부분으로 간주하고 보다 확실하고 엄격한 검증을 요구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그대로 따라 왔다. 부시대통령 취임이후 체결된 「유럽在來式武器減縮條約 I」과 「戰略武器減縮條約」에는 「중거리핵미사일폐기조약」보다 더욱 強力한 檢證시스템이 制度化되어 있다.

2. 美·蘇의 檢證政策

가. 蘇聯의 檢證政策

(1) 1920년대~1930년대

소련은 軍備縮小優先을 전제로 現場檢査 실시 등 구체적인 검증방법을 제시하였다.

(2) 1940년대~1950년대

조약체결에 앞서 檢證機構를 우선 설치하자는 미국의 「先 검증합의, 後 군비축소합의」 입장과 軍備縮小條約에 먼저 합의한 후 검증기구를 설치하자는 소련의 「先 군비축소합의, 後 검증합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소련은 검증이 군비축소와는 무관한 것이 되지 않기를 원했으며 특히 軍縮이 실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검증을 빙자하여 자국의 軍事力에 관한 諜報를 수집할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였다.

(3) 1960년대~고르바초프 등장이전

소련은 檢證에 대해 消極的이었으며, 특히 浸透性이 강한 現場 檢査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最小限의 檢證만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4) 고르바초프 등장이후~현재

고르바초프 등장이후에 소련은 기존의 군비통제에 대한 입장 뿐만 아니라 검증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態度變化를 보였다. 고르바초프의 改革과 開放政策은 강력한 軍備統制政策 추진과 아울러 檢證에 대한 소련의 立場에도 큰 變化를 가져옴으로써 소련은 더 이상 현장검사와 같은 침투성이 강한 검증방법을 거부하지 않게 되었다.

나. 美國의 檢證政策

(1) 1920년대~1930년대

1920년대에 미국은 檢證 자체를 認定하지 않았으며 1930년대에는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역시 검증에 대해 매우 消極的이었다.

(2) 1940년대~1950년대

제2차 세계대전후 냉전체제가 본격화되면서 강력한 적대국으로 부상한 蘇聯의 核武器 開發·保有가 미국으로 하여금 檢證問題에 관심을 갖게 하는 주된 動機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先 검증합의, 後 군비축소합의」를 주장하였는 바, 소련사회의 閉鎖性和 당시의 技術的 檢證能力 不足으로 군축회의에서 당연히 現場檢查를 강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소련이 미국의 현장검사요구를 간첩행위로 간주하여 반대함으로써 해결점을 찾지 못하였다. 검증과 검증될 내용의 선후문제에 대한 美·蘇 양측의 立場差異는 1961년 「맥클로이-조린 宣言」에서 군비축소와 동시에 검증을 실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원칙적으로 해소되었다.

(3) 1960년대~카터행정부시대

미국은 소련보다 검증에 대해 적극적이었으며 정찰위성을 비롯한 技術的 探知能力 향상을 배경으로 「適切한 檢證」을 檢證政策으로 채택하여 많은 군비통제조약을 체결하였다. 1969년 닉슨 대통령이 SALT I 협상대표에게 시달한 지침을 통해 알려진

「適切한 檢證」은 완벽한 검증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미국에 重大한 危險을 초래할 정도로 큰 규모의 違反을 발견하여 충분히 對應할 수 있을 만큼 필요한 時間을 確保할 수 있어야 한다는 檢證政策이다.

(4) 레이건행정부 등장 이후~현재

國家技術手段(정찰용 인공위성, 비행기나 함정에 부착된 레이더, 地上 탐지장비 등)에 의한 검증가능성에 의거하여 조약의 實質條項을 협상하려 했던 카터행정부의 軍備統制政策이 비판받고 기존 조약의 違反 與否가 논란의 대상이되고 있던 상황에서 레이건행정부는 새로운 검증기준으로 「效果的 檢證」을 채택하고 現場檢査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레이건행정부는 NTM에 제약 받지 않고 조약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한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적 배경에서 미국은 NTM을 지원할 수 있는 현장검사 등 協力檢證方案을 강조하였고 부시행정부에 들어 와서도 이러한 정책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3. 國際條約의 檢證事例

1925년에 체결된 「제네바議定書」에서부터 최근의 「전략무기감축협정」에 이르기까지 11가지 군비통제조약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條約의 概要」에서는 각 조약의 (1) 締結時期, (2) 發效時期, (3) 有效期間, (4) 조약 가맹국의 數, (5) 조약의 內容과 特徵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檢證條項의 特徵」에서

는 각 조약의 검증조항을 분석·정리하였다.

第 V 章 南北韓 軍備統制 檢證 方向

1. 理論 및 歷史와 事例 研究의 示唆點

가. 국제레짐 理論의 示唆點

(1) 부분안보레짐과 檢證

軍備統制條約을 부분안보레짐으로 정의하고 레짐 이론을 이용하여 軍備統制條約과 檢證의 關係를 규명하였다. 檢證은 레짐의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부분안보레짐의 한 規範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檢證規範은 검증조항의 형태로 條約에 반영되고 검증 실시시 야기되는 紛爭解決機構도 설치된다.

(2) 레짐의 情報提供機能

특정 안보현안에 대해 레짐이 형성되는 경우, 레짐 참여자들은 부분안보레짐을 통하여 情報를 교환하고 주기적인 모임을 개최하는 등 상호 意思疏通의 양과 질을 증대시키게 됨으로써 레짐은 情報提供機能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레짐 참여자들은 레짐을 통해 開放과 透明度를 증대시키고 豫測可能性을 향상시킴으로써 상호 理解增進과 信賴構築을 촉진하고 協力을 통한 장기적인 利益增大를 도모한다. 레짐의 정보제공기능의 큰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檢證이며 조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검증은

情報交流의 擴大를 통해 遵守情報 不均衡을 解消함으로써 레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레짐의 形成

레짐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레짐 자체에 대한 참여자들의 선호도가 「共同利害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각국이 독자적인 군비증강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야기되는 軍備競爭보다 상호 협력과 조정을 통해 군비통제조약을 체결함으로써 軍備增強을 自制하는 것이 모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 軍備統制條約 체결이 가능해진다. 레짐 형성의 選好度を 결정하는 주요 要因은 이기주의적 계산에 의한 國家利益이다. 檢證이 부분안보레짐의 규범으로서 국가이익을 결정하는 데 한 가지 요인으로 반영될 수는 있으나 레짐 참여자들간의 보다 포괄적인 政治·經濟·戰略·外交的 要因들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

레짐 자체에 대한 레짐 참여자들의 受容意志가 레짐 형성의 先行條件이라는 사실은 참여자들의 選好度 때문에 레짐 형성이 불가능한 상황이 조성되었을 경우에는 검증의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되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레짐 형성에 대한 基本的인 合意가 이루어진 경우 레짐 참여자들은 레짐의 일부인 검증과 관련하여 檢證의 規範, 規定 및 履行節次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합의하거나 檢證에 대한 協商을 레짐 형성후로 미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부분핵실험금지조약」, 「전략무기제한협정 II」, 「스톡홀름협약」, 「비핵화 공동선언」 등의 事

例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4) 레짐의 變化

레짐 형성의 주요 요인인 利己主義的 計算에 의해서 國家利益이 변할 경우, 새로운 레짐을 形成하거나 이미 생성된 레짐을 變化시킬 수 있다. 국가이익에 대한 認識은 새로운 사고를 가진 政治엘리트의 등장, 레짐의 규범에 영향을 주는 周邊環境의 변화 및 새로운 情報習得과 知識開發을 통한 學習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 또한 조약이 상호 矛盾되는 내용을 담고 있거나 조약문안 解釋上 差異가 있는 경우, 레짐의 변화를 원하는 레짐 참여자가 조약의 허점을 이용할 수도 있다.

나. 歷史와 事例 研究의 示唆點

(1) 國際關係와 檢證의 函數關係

전반적인 국제관계의 흐름과 군비통제 및 검증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友好的인 國際關係에서는 검증이 쟁점화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많은 군비통제조약이 체결되었으며, 國際關係가 冷却되었을 때는 군비통제협상도 진전을 보지 못했고 檢證은 오히려 협상의 障礙要因으로 부각되었다.

(2) 社會體制와 檢證의 關係

사회체제와 검증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 국가의 사회체제가 開放될수록 검증을 중요시하고 강력한 검증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閉鎖된 사회일수록 검증에 대해 소

극적인 입장을 보인다.

(3) 戰略的 均衡과 軍備統制條約 締結

군비통제협상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은 협상 당사자간에 협상대상 무기에 대한 戰略的 均衡이 달성되어야 조약체결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4) 軍備統制와 檢證에 대한 政策決定者의 意志

군비통제와 검증은 상대방과의 협상에 의해 타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결국 政治的인 問題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군비통제와 검증에 대한 最高 政策決定者의 意志가 협상결과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은 再論의 여지가 없다.

(5) 檢證에 대한 國際社會의 認識

제2차 세계대전후의 군비통제협상에서 檢證이 군비통제의 주요 要素라는 國際的인 合意가 형성되었다. 데탕트시대에 체결된 여러 가지 조약들은 각 조약마다 적절한 검증제도를 포함함으로써 檢證이 軍備統制의 필수불가결한 要素라는 認識이 국제사회에 자리잡게 되었다. 레이건행정부 등장이후 檢證의 必要性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나 美·蘇를 중심으로 檢證의 受容程度問題에 이견이 표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도 고르바초프가 등장하여 검증협상의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現場檢査를 수용함으로써 해소되었다.

2. 檢證에 대한 北韓의 立場

가. 停戰協定

정전협정은 남북한이 검증문제에 합의한 최초의 조약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정전협정의 軍備統制 및 檢證條項은 성공적으로 실행되지 못했다. 북한은 정전협정을 위반하면서 軍事力 增強을 꾀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려는 한국과 UN군축의 노력은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의 組織的인 妨害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되었다.

나. 南北高位級會談

정전협정이후 남북사이에 검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남북고위급회담에서였다. 북한은 제1차 南北高位級會談에서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상대측 지역에 대한 호상 현지시찰을 통하여 군축합의 리행 정형을 검증한다”고 언급하였으나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반면에 한국은 제1차 고위급회담에서 “군축과정에서의 合意事項 履行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現場檢證과 監視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합니다”라고 주장하며 共同檢證團과 常駐監視團의 구성·운영을 요구하였고 이후의 협상에서도 계속 검증문제를 언급하면서 檢證을 남북간 合意事項의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남북한은 제5차 南北高位級會談에서 「기본합의서」의 불가침이

행을 보장하기 위한 실천방안의 하나로 「검증」을 채택하였지만 이는 단순한 원칙적 합의일 뿐이다. 「기본합의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북한의 거부에 부딪혀 상주감시소 설치 주장을 철회해야 했다는 사실은 북한의 開放拒否的 姿勢가 앞으로의 남북한 군비통제 검증협상에 가져올 어려움을 예고하는 전주곡으로 보인다.

다. 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는 남북간 검증협상이 이루어진 최초의 회의로서 검증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相互核査察協商에서 북한은 핵시설이나 군사시설의 여부를 막론하고 自國의 시설이 相互査察對象이 되는 것에 대해 매우 消極的 立場을 보였다. 핵시설의 경우, 북한은 영변 이외에 평양, 순천, 평산, 박천 등지에도 핵관련 시설이 존재한다고 IAEA에 보고하였지만 남북한 相互査察協商에서는 영변만을 査察對象으로 공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軍事施設에 대해서도 북한은 핵통제공동위원회의 사찰대상은 核武器와 核基地이므로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 북한의 군사시설은 상호사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자국의 군사시설에 대해 단기간내에 奇襲的인 査察이 가능한 한국의 特別査察 提議를 완강히 거부하였다.

군사적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남북간 교류·협력 분야에서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전반적인 개방거부적 자세로 미루어 볼 때

북한으로서는 檢證이 體制에 미치는 波及效果를 최소화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검증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檢證에 否定的인 立場을 취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증에 대한 南北韓 協商展望이 현재로서는 매우 어두운 것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예상은 상호핵사찰 협상에서 북한이 보여준 소극적 태도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특히 남북한이 國家技術手段과 같은 원거리 정찰위성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검증에 대한 남북간의 논의는 現場檢査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장검사는 浸透性이 가장 큰 검증방법으로서 검증의 公開性과 開放效果가 체제에 미칠 여파를 우려하는 북한이 가장 받아 들이기 힘든 방법이라는 점에서 남북한 檢證協商의 問題點이 되고 있다.

3. 韓國의 檢證政策 推進方向

가. 基本 要件

(1) 協商環境 造成

국가간의 우호정도와 군비통제 및 검증협상의 타결가능성이 함수관계에 있다는 사실에서 볼 때, 군비통제협상에 有利한 環境造成을 위해서는 남북간 전반적인 關係改善이 필수적이다. 즉 가장 민감한 군사분야에서 조약이 체결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분야에서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하여 不信과 敵對感을

해소시켜 나가야 한다. 남북간의 전반적인 관계개선을 통하여 양측의 選好度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쌍방의 안보에 덜 민감한 특정 분야에서부터(예: 군사훈련과 이동의 상호 통보 및 참관) 부분안보레짐의 형성이 가능해질 것이다.

(2) 北韓體制의 開放 誘導

군비통제협상 환경이 조성되더라도 남북한 社會體制의 差異로 인해 검증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체제의 開放 誘導는 보다 광범위한 對北戰略次元에서 다루어지겠지만 북한의 開放이 檢證協商에 유리한 與件을 조성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3) 選別的인 軍現代化計劃 推進

군비통제조약체결의 주요 요건은 해당 분야에서 협상 당사자들의 戰力이 대체적인 均衡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북한과의 軍備統制協商 議題로 삼으려는 분야에서 戰力 不均衡을 深化시키는 政策을 추진할 경우 군비통제 협상이 어려워질 것이다. 한국은 향후 북한과의 군비통제협상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야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는 분야를 미리 선정하고 選別的으로 軍現代化計劃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政策決定者의 意志

군비통제협상은 政治的인 問題로서 정책결정자의 意志가 협상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책결정자는 군비통제와 검증에 대한 확고한 信念과 意志를 갖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國際環境 造成

군비통제와 검증에 대한 국제적인 환경은 한국에 매우 유리하게 조성되고 있다. 특히 검증에 대한 國際的 立場은 UN의 16개 檢證原則에서 볼 수 있듯이 強力한 檢證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나. 協商時 考慮事項

(1) 檢證 原則

一貫性있는 檢證政策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검증에 대한 다음과 같은 12개 基本的인 原則을 수립하고 이를 향후 군비통제 檢證協商의 指針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 (가) 검증은 軍備統制條約의 必須不可缺한 要素이다.
- (나) 검증은 主權을 侵害하거나 內政을 干涉하는 것이 아니다.
- (다) 검증은 합법화된 間諜行爲가 아니며 검증을 통해 획득된 情報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誤用되어서는 안된다.
- (라) 效果的이고 信賴할 수 있는 검증이 실시되어야 한다.
- (마) 검증은 군비통제조약 協商 始作段階에서부터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 (바) 검증 權限과 義務는 相互主義에 입각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사) 검증은 軍事的 開放 및 透明性의 제고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 (아) 검증은 조약가맹국의 社會體制 差異에서 야기되는 情

報獲得의 非對稱性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 (자) 군비통제조약은 檢證 實施가 용이한 방향으로 합의되어야 한다.
- (차) 군비통제조약이 規制對象에 例外를 들 경우 효과적인 검증이 실현될 수 없다.
- (카) 多樣한 檢證方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 (타) 특정 검증방법의 採擇基準은 現實性和 相互 受容可能性이다.

(2) 北韓의 豫想態度和 對應論理

검증에 대한 南北韓의 현재 立場은 고르바초프 등장 이전에 각각 미국과 舊소련이 취했던 입장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 군비통제 협상에서 北韓이 개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네 가지 問題點과 한국이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북한이 「信賴의 原則」에 입각하여 自體 檢證을 선호하고 한국의 檢證要求를 묵살할 경우, 한국은 미·소간 협상에서 볼 수 있듯이 소련이 주장했던 「信賴의 原則」은 협상타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군비통제조약에 效果的인 檢證方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은 國際的인 合意事項임을 강조한다.
- (나) 북한이 대규모 軍縮을 前提로 한국의 검증요구 受容意思를 표명할 경우, 한국은 군비통제협상에서는 檢證에 대한 合意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條約 자체의 內容

에 대한 提案들이 쌍방이 받아 들일 수 있는 現實性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다) 북한이 軍備統制條約 內容에 합의한 후 檢證에 대한 합의를 주장할 경우, 한국은 軍備統制와 檢證의 同時 實施라는 基本原則은 이미 1961년에 미·소간에 합의된 바 있으며 또한 國際的 合意事項임을 강조하고 「비핵화 공동선언」의 사례를 들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效果的인 檢證體制를 갖춘 條約을 체결하는 것이 추후 문제발생 소지를 없애는 바람직한 協商方法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라) 북한이 조약의 文案作成을 소홀히 할 경우, 한국은 조약 문안이 명료하게 작성되지 못하거나 상이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 둘 경우 條約 履行過程에서 반드시 紛爭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한국은 남북한이 사용하는 用語의 意味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조약의 문안을 명료히 작성하는 문제에 대해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북한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다. 檢證方法 確保方案

한국은 검증정책의 基本原則 수립과 아울러 구체적인 檢證方法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검증의 목적이 遵守情報 不均衡을 解消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바와 같이, 검증은 결국 정보의 문제이므로 情報蒐集 및 分析能力이 우세할수록 북한과의 檢

證協商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기술적인 검증방법은 크게 각국이 독자적으로 운용가능한 獨自檢證方法과 상대방의 동의나 협조가 필요한 協力檢證方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한국이 獨自적으로 운용가능한 檢證方法

군사 및 상업용 인공위성, 지상·해상·항공 탐지장비, 부수적인 정보수집.

(2) 북한과의 協商이 요구되는 檢證方法

현장검사(정규검사, 임의검사, 특별검사), 현장감시장치, 상주 감시소, 영공개방협정, 다국적 기술수단, UN 평화유지군.

目 次

第Ⅰ章 序 論	1
第Ⅱ章 檢證의 定義	10
1. 既存의 定義	10
2. 分析的 定義	15
가. 檢證의 目的	15
나. 檢證의 特徵	16
다. 檢證의 過程	18
라. 檢證의 機能 및 效果	21
第Ⅲ章 국제레짐과 檢證	23
1. 국제레짐	23
가. 레짐의 定義	24
나. 레짐에 影響을 미치는 因果變數	28
다. 레짐의 意義	37
라. 레짐의 變化	40
마. 레짐의 自律性	41
2. 부분안보레짐과 檢證	44
가. 部分안보레짐	44
나. 部分안보레짐의 事例	46
다. 안보레짐과 기타 분야 레짐의 差異	50

라. 檢證: 부분안보레짐의 規範	53
마. 檢證 基準	56
第IV章 檢證의 歷史와 事例	59
1. 檢證의 歷史	59
가. 1899년 헤이그 平和會議	59
나. 1920년대와 1930년대	60
다. 1945~1962년: 軍備縮小 論議時代	63
라. 1963~1979년: 데탕트時代	66
마. 1980~1986년: 緊張時代	69
바. 1987년~현재: 新데탕트時代	71
2. 美·蘇의 檢證政策	77
가. 蘇聯의 檢證政策	77
나. 美國의 檢證政策	91
3. 國際條約의 檢證 事例	104
第V章 南北韓 軍備統制 檢證 方向	125
1. 理論 및 歷史와 事例 研究의 示唆點	125
가. 국제레짐 이론의 示唆點	125
나. 歷史와 事例 研究의 示唆點	132
2. 檢證에 대한 北韓의 立場	145
가. 停戰協定	146
나. 南北高位級會談	148

다. 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	150
3. 韓國의 檢證政策 推進方向	152
가. 基本 要件	152
나. 協商時 考慮事項	155
다. 檢證方法 確保方案	164
第VI章 結 論	170
參考文獻	178
附 錄：軍備統制條約의 檢證條項	189

第 I 章 序 論

한 국가가 외부의 軍事的 威脅에 대처하기 위한 國家政策手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우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힘으로 대처하는 軍事的 對應態勢(military preparedness)이다. 무정부상태의 국제사회에서 군사적 대응태세는 자위를 위한 가장 기초적이며 최후의 보루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지나친 軍備增強은 자원의 낭비 및 긴장과 불신의 증대라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이와 달리 軍備統制(arms control)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군사적 위협과 전쟁의 가능성 및 전쟁 발발시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國家政策手段이다. 군사적 대응태세 유지와 군비통제는 일견 모순되는 것같이 보이나 國家安保를 성취하는 政策手段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軍備統制는 군사적 대응태세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낮은 위험수준에서 國家安保를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군사적 대응태세와 相互補完的 關係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¹⁾

軍備統制條約에서 규정한 제반 조치들은 條約加盟國의 國家安保와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²⁾ 따라서 어느 국가도 상

1) Arms Control Association, *Arms Control and National Security: An Introduction* (Washington, D.C.: Arms Control Association, 1989), p. 10.

2) 國家安保와 직결되어 있지 않은 軍備統制條約의 예로는 「남극조약」(The Antarctic Treaty)이나 「세균 및 독성무기 금지협정」(The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Convention: BTWC)을 들 수 있다.

대방이 조약을 遵守하고 있다는 確信을 줄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조약을 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檢證은 상대방의 조약준수 여부에 대한 確信을 주고 이를 보장함으로써 조약의 체결을 촉진하고 실행을 원활히 해 나가기 위한 군비통제 과정의 필수불가결한 要素이다. 과거 유럽의 군비통제 역사에 비추어 볼 때 檢證問題에 대한 合意가 검증될 조약 자체의 내용에 합의하기 만큼이나 어려울 때가 많았다. 군비통제 역사가 진전됨에 따라 이러한 경향이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해당 조약이 國家安保에 미치는 重要度가 증대함과 더불어 檢證이 갖는 重要性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증문제는 근본적으로 人間이란 존재가 완벽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 인간들이 어떠한 약속을 하거나 협정을 맺을 때 상대방의 약속이행 여부를 완벽한 情報體系에 의해서 또는 초인적인 能力으로 확인하거나 상대방의 심리를 간파해 낼 수 있다면 검증이란 애당초 논의의 여지가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인간이란 時間的, 空間的 制約에 구속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측 진영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肉眼으로 확인하거나 기계 장치의 힘을 빌어서 간접적으로라도 검사하지 않고서 상대방의 약속이행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준수하겠다”라는 修辭的 約束만으로 서로의 행위를 믿을 수 있는 정도의 信賴가 조성되어 있지 못한 관계, 특히 敵對關係에 있는 당사자 간의 조약일 경우, 條約의 遵守 與否를 확인할 檢證 裝置가 마련되어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검증문제는 다른 분야에서보다 軍備統制分野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간의 경제와 교역분야에서는 체결된 조약의 준수를 확인하는 검증과 조약위반문제가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점은 「關稅貿易一般協定」(The General Agreements on Tariffs and Trade: GATT)의 규정이 느슨하게 지켜지고 위반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³⁾ 軍備統制를 포함한 安保分野는 다른 분야와 달리 다음과 같은 特徵을 지니고 있다: (1) 안보문제의 優先性, (2) 상당한 利害關係가 걸린 문제라는 점, (3) 조그마한 失手도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4) 어느 정도의 안보가 適正水準인가 하는 것이 불확실하다는 점.⁴⁾

「고도의 정치조약」(high politics treaty)인 군비통제조약과는 달리 環境條約에서도 구체적인 검증조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⁵⁾ 환경에 관한 조약이 위반될 경우,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軍事 및 安保問題의 중대성, 事案의 비밀성, 이에 따른 監視 및 情報獲得의 어려움, 상대방 違反時에 야기될 수 있는

3) 본 논문의 제Ⅲ장에서는 레짐 이론(Regime Theory)에 의거하여 經濟와 安保分野의 差異에 관해 보다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4) Robert Jervis, "Security Regimes," in Stephen Kraser, ed.,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p. 187.

5) Wolfgang Fischer, "The Verification of a Greenhouse Gas Convention: a New Task for International Politics," in J. Poole, ed., *Verification Report 1991* (London: VERTIC, 1991), p. 197.

危險에 대한 우려 등 제반 문제 때문에 군비통제분야에서는 검증문제가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군비통제조약에서 檢證의 必要性에 대해 현실적인 측면에서 고찰해 보겠다. 軍備統制는 다음과 같은 目的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 (1) 전반적인 軍事關係의 安定 증진과 작용-반작용 사이클 (action-reaction cycle)에 의한 軍備競爭 중지,
- (2) 군사적 충돌위기 발생시 戰爭의 危險을 줄임으로써 위기시의 安定 증진,
- (3) 상대방의 군사활동에 대한 豫測可能性을 제고하여 相互不信과 疑惑 제거,
- (4) 奇襲攻擊의 위험을 제거하고 전쟁 발발시 被害 최소화,
- (5) 우발적 혹은 비의도적 戰爭 勃發의 危險 감소.

이와 같은 군비통제의 目的은 군비통제조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국간에 이러한 점들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설정된 것이다. 즉 군비통제협상 당사국간에는 군사적 및 위기시의 安定性和 豫測可能性의 정도가 우방국간에 비해 매우 낮으며 奇襲攻擊의 가능성도 상존할 뿐만 아니라 偶發的인 戰爭이 발발될 수 있는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불확실하고 적대적인 상황하에서, 특히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軍事力을 統制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약속하는 것을 무조건 믿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信賴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대부분의 군비통제조약에는 條約의 遵守가 自國의 利益을 위태롭게 한다고 생각될 때에는 조약에서 규정한 유예기간전에 통보한 후 條約을 脫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自國利益 最優先 條項」(supreme national interest clause)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군비통제조약의 限界는 분명해진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군비통제조약이라는 적대적 當事者間의 約束이 규정대로 遵守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遵守情報의 不均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檢證裝置를 조약내에 制度化시키는 것이 必須的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군비통제 검증에 대한 연구는 크게 技術的 側面(technical aspect)과 政治的 側面(political aspect)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技術的 側面의 檢證研究은 검증에 사용되는 기술적 장비나 방법의 종류, 능력 및 비용 등 각종 檢證手段의 技術的 問題를 다룬다. 반면에 政治的 側面의 檢證研究은 검증의 歷史, 검증정책의 採擇 및 變化過程, 검증의 許容 정도, 특정 檢證技術의 採擇 여부, 協商戰略, 국내외 政治的 環境과 檢證의 관계, 遵守問題 발생시 해결 등과 관련해서 야기되는 제반 문제를 다룬다.

특정 검증기술이나 장비의 채택 여부가 정치적 협상을 통해 타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술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은 不可分의 關係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자적인 檢證技術의 발전을 통해 檢證이 군비통제협상의 障礙要因이 되지 않고 협상 타결의 促進要因으로 작용함으로써 기술적 발전이 정치적 협상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도 있다.⁶⁾ 반면에 인공위성과 같은 高度의 檢證技術은 소수의 特定 國家만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이러한 검증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매우 정치적인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검증의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政治的인 側面에 초점을 맞추고 검증문제를 논하고자 한다.

남북한은 제5차 南北高位級會談(1991.12.10~13)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基本合意書」)에 서명하였다. 그간 고위급회담에서 쟁점이 되어 왔던 사항들에 대해 한국은 북한의 軍事的 信賴構築과 軍縮의 並行推進 立場을 원칙적으로 수용하였고 북한이 거부하는 군사훈련참관과 상주감시체제 교환·운영을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북한도 그동안 거부해 오던 불가침보장조치를 협의하는 데 동의하였다.

향후 남북한 軍備統制協商의 틀을 제시하고 있는 「기본합의서」의 「남북불가침」 부분은 6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력불사용(9조), 분쟁의 평화적 해결(10조), 불가침 경계선 설정(11조),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12조),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13조), 「남북군사분과위원회」 구성(14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

6) 인공위성에 의한 遠距離 偵察技術의 發展으로 「SALT I 조약」의 검증대상인 발사대(launcher)의 소재 파악이 가능해졌으며, 이로 인해 조약체결이 수월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상발사 미사일의 발사대는 사일로(silo)이고, 잠수함발사 미사일은 발사튜브(launch tube), 공중발사 미사일은 폭격기 자체가 발사대이다.

히 不可侵의 履行과 保障을 위하여 남북한은 합의서 발효후 3개월내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1)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通報 및 統制問題, (2) 非武裝地帶의 平和的 利用問題, (3) 軍人事 交流 및 情報交換問題, (4)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段階的 軍縮實現問題, (5) 檢證問題 등 군사적 信賴造成과 軍縮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1992.2.18~21)에서는 「기본합의서」와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및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하 「비핵화 공동선언」)이 발효됨으로써 남북군사분과위원회가 1992년 3월 13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정식 가동되었으며 南北軍事共同委員會는 1992년 5월 18일 구성되었다. 또한 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는 1992년 3월 19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비핵화 공동선언」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실천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제 바야흐로 한반도에서 本格的인 軍備統制協商이 시작된 것이다.

檢證은 군비통제조약의 核心 要素로서 군비통제협상의 시작에서부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한국은 검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檢證政策을 수립하여 북한과의 軍備統制協商에 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軍備統制 檢證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美·蘇 및 유럽의 軍備統制와 檢證協商 經驗으로부터 한반도에 적용가능한 敎訓을 도출함으로써 한국의 檢證政策 樹立에 기여하고자 한다.

한국이 정책적 차원이나 학문적 연구 차원에서 軍備統制問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불과 3~4년전에 불과하다. 따라서 군비통제문제에 대한 理論的 基盤이 아직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한국 학계의 현실이며 특히 檢證問題에 대한 研究는 석사학위 논문 서너편과 일부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고작이다. 검증 문제가 국제적으로 學界의 關心事項으로 부각한 것이 1980년대 초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 검증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국내에서 발간된 研究論文도 주로 유럽에서 체결된 條約의 단편적인 分析이나 검증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의 紹介에 그치고 있을 뿐, 檢證問題의 韓國化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못하고 있다. 또한 군비통제조약과 검증의 관계를 이론적 틀을 빌려 분석하려는 시도는 전무한 형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理論的 側面에서 그리고 검증의 歷史와 事例를 중심으로 軍備統制 檢證問題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檢證政策 樹立方向을 제시함으로써 검증문제의 한국화를 꾀하고자 한다.

이론적 측면의 검증연구에서는 국제레짐 이론을 이용하여 군비통제조약과 검증의 關係를 규명하고자 한다. 검증이 군비통제조약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검증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군비통제 및 검증 협상의 필수 요건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검증의 歷史와 事例研究에서는 美·蘇 및 유럽의 檢證歷史와 事例分析을 통해 이들의 檢證經驗이 한반도에 주는 示唆點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반도와 유럽이 정치·경제·지리·역사·문화적으

로 많은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차원에서 군비통제 검증의 선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특히 군비통제의 두 주역인 미국과 舊소련의 檢證政策 變化過程을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론적 연구 및 역사와 사례 고찰에서 얻은 示唆 點을 바탕으로 한국의 檢證政策 推進方向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검증정책은 한국의 협상상대인 北韓의 立場을 고려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검증에 대한 國際的인 合意에 위배되어서도 안된다. 한국의 검증정책 추진방향을 성공적인 검증협상과 이행을 위해 갖추어야 할 基本 要件, 협상시에 견지해야 할 구체적인 基本 原則, 및 檢證方法 確保方案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第 II 章 檢證의 定義

本章에서는 실제 군비통제협정이나 문헌에 언급된 既存의 定義를 통해 검증에 대한 認識의 變遷過程을 검토하고 새로운 시각에 입각한 分析的 定義를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적 정의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본틀을 토대로 하여 검증의 실체를 규명한다: (1) 검증의 目的, (2) 검증의 特徵, (3) 검증 過程 및 (4) 검증의 機能(또는 效果).

1. 既存의 定義

군비통제분야의 전문가나 관련 학자들 사이에, 검증의 概念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은 일치하고 있으나 보편적으로 받아 들여지는 검증의 분명한 定義를 도출해 내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단지 檢證이 조약의 遵守 與否를 확인하는 過程이라는 점이 이의없이 받아 들여지고 있는 정도이다. 검증문제를 보는 觀點이 사람에 따라 다르고 더욱이 검증, 더 나가서는 군비통제 자체가 국제정치의 現狀을 특징짓는 제반 요소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검증에 대해 劃一的인 定義를 내리기는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本節에서는 실제 군비통제협정이나 문헌에 언급된 것을 기초로, 중요한 검증의 정의 몇 가지를 시대별로 나열해서 검증에 대한 視角의 變遷 및 그 特徵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美 軍縮處(The US ACDA, 1974)

군비통제조약 당사자들이 조약을 준수하는 「程度」를 결정하는 「過程」.¹⁾

칼코스즈카(Karkoszka, 1977)

군비통제협정 당사자들이 조약의 각 조항을 이행함으로써 조약에서 규정한 義務를 수행하는 「程度」를 결정하기 위해서 軍備統制協定에 의해 보장된 「過程」으로서 조약 당사자들에 의해서 單獨으로 혹은 相互間에, 또는 공인된 國際機構에 의해서 人的, 技術的 方法으로 행해진다.²⁾

콜드웰(Coldwell, 1985)

조약 당사자들의 행동이 조약 내용과 一致하는가를 결정하는 「政治的인 過程」.³⁾

크레스(Krass, 1985)

다양한 기술적, 제도적 手段에 의해서 얻어진 證據나 情報에 의해서 조약의 준수 여부를 「證明」하는 행위.⁴⁾

1) Andrzej Karkoszka, *Strategic Disarmament, Verification and National Security* (Stockholm: SIPRI, 1977), p. 13.

2) Ibid., pp. 13~14.

3) Dan Coldwell, "The Stading Consultative Commission: Past Performance and Future Possibilities," in William Potter, ed., *Verification and Arms Control* (Los Angeles: Center for International and Strategic Affairs, UCLA, 1985), p. 220.

4) Allan Krass, *Verification: How Much is Enough?* (Stockholm: SIPRI, 1985), p. 6.

모리스(Morris, 1985)

한 국가의 행위가 특정 군비통제조약과 一致하는가에 대한 「政治的 判斷」을 내리는 「過程」.⁵⁾

옥스포드 事典(Oxford Dictionary, 1976)

調査(examination)나 證明(demonstration)에 의해 특정 사항의 眞實이나 正確性を 확립하는 것.⁶⁾

캐나다 外務部(Canadian Government, 1986)

옥스포드 사전에 정의된 내용의 附錄說明으로서, 「調査」는 檢査(inspection)와 解釋(interpretation)을 의미하는데 이는 검증이 기술적 행위 이상의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檢證(verification)은 군비통제조약 자체의 해석과 더불어 확보된 증거의 해석을 포함하는 매우 解釋的인 行爲인 것이다. 「證明」은 어느 면에서는 協力方案의 개념과 유사한데 이는 군축협상 진행시에 信賴構築過程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⁷⁾

5) Ellis Morris, "Comparison of United States and Soviet Approaches to Verification," in John O'Manique, ed., *A Proxy for Trust* (Ottawa: Carleton University, 1985), p. 45.

6) F. R. Cleminson and E. Gilman, *A Conceptual Working Paper on Arms Control Verification* (Ottawa: The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Division, Department of External Affairs, Canada, January 1986), p. 3.

7) Canadian Government, *Verification in All Aspects: A Comprehensive Study on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Verification Pursuant to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0/152(0)* (Ottawa: Canadian Government, April 1986), p. 15.

올리치(Oelrich, 1990)

다양한 기술적 감시시스템에 의해 얻어진 情報와 상대방의 意圖와 眞實性에 대한 추측에 근거한 判斷이다.⁸⁾

위의 정의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檢證의 몇 가지 중요한 特徵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SALT I 협상을 하면서 美 軍縮處는 최초로 검증을 連續性이 강조되는 「過程」으로 규정하였다는 사실이다.

둘째, 美 군축처의 정의와 더불어 칼코스즈카의 정의에서는 조약의 遵守 「程度」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조약의 준수문제를 준수 아니면 위반이라는 식의 黑白論理로 파악하기보다는 兩 極端을 연결하는 連續線上의 위치에 따라 조약의 준수 정도를 평가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정도」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사실 발견의 模糊性, 즉 정보수집 및 분석상 어느 정도의 誤差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완벽한 100%의 검증은 불가능하다는 사실과 조약 문헌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나 차이에서도 遵守問題가 야기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셋째, 크레스와 캐나다 외무부의 정의에서는 검증에서 「證明」(또는 立證)의 측면을 명시하고 있다. 크레스의 「立證」은 단순히 「事實을 確認한다」는 의미로 파악되지만 캐나다 외무부의 정의

8) Ivan Oelrich, "The Changing Rules of Arms Control Verification: Confidence is Still Possible," *International Security*, Vol. 14, No. 4 (1990), p. 177.

에서는 입증을 「協力 方案」과 類似하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입증은 「自發的인 情報交換」이나 「協力檢證方案」(cooperative verification measures: CVM)의 실시 등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⁹⁾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立證行爲는 결국 受檢國이 檢査國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검증을 받는 것보다는 조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청하여 檢證을 받겠다고 要求하는(예: 自發的으로 현장검사단을 초청하는 것) 積極的인 檢證行爲를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증행위는 獨自的으로 혹은 相互主義에 입각해서 행해질 수 있을 것이다. 군비통제의 역사와 경험이 초보적인 단계일 때에는 能動的인 立證보다는 受動的인 檢査가 검증의 주요 機能으로 부각되었지만 군비통제과정이 성숙되고 조약 당사자간에 信賴가 증진되어 감에 따라 상대적으로 檢證의 立證側面이 活性化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콜드웰과 모리스의 정의에서는 검증의 「政治的인 面」을 언급함으로써 검증이 단지 情報蒐集과 分析이라는 技術的인 行爲일 뿐만 아니라 매우 政治的인 要素를 포함하는 복잡한 문제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검증의 政治的인 측면은 검증을 상대방의 意圖와 眞實性에 대한 추측에 근거하는 판단이라고 본 올위치의 정의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9) 「協力檢證方案」에 관해서는 전성훈, “유럽의 신뢰구축방안: 경험과 그 의미,” 「한반도 군비통제: 제2집」(서울: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1990), pp. 54~57 참조.

2. 分析的 定義

檢證이란 일방적, 상호협력적, 그리고 자발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상대방의 條約遵守 與否에 대한 情報 不均衡을 해소하는 과정이다.¹⁰⁾ 이러한 검증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검증을 目的, 特徵, 過程, 機能 및 效果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가. 檢證의 目的

군비통제조약에서 協定の 遵守問題가 제기되는 것은 조약의 준수 여부에 대한 협정 당사자간 情報 不均衡(준수정보 불균형) 때문이다. 遵守情報 不均衡이란 협정 참여자가 자신의 조약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반면, 상대방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즉 상호간에 상대방의 遵守行爲에 대해 精確한 情報가 不足하다는 사실이 조약 체결 및 이행시 나타나는 一般的인 現象이다. 더욱이 조약 자체가 조약 가맹국의 國家利益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情報 不均衡은 조약체결시 혹은 실행과정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어떤 국가도 상대방이 위반함으로써 政治的·戰略的 損失이 수반되는 조약을 체결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檢證은 이러한 遵守情報 不足을 메워주고 不均衡을 해소

10) 上記 옥스포드 事典의 정의와 비교할 때 一方的, 相互協力的 檢證은 檢査(examination)을 측면을, 自發的 檢證은 立證(demonstration)의 측면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하기 위한 군비통제조약의 履行過程이다.

나. 檢證의 特徵

검증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범하기 쉬운 誤謬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檢證을 조약 체결의 目的으로 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조약 위반시의 制裁問題도 검증에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러나 檢證은 조약 체결의 궁극적인 目的은 아니며 검증에는 制裁機能이 부여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 바로 검증의 특징이다.

(1) 檢證이 조약 체결의 目的은 아님.

검증이 군비통제조약의 「目的」은 될 수 없다. 이는 조약 자체에 대한 當事者들의 意向이나 意志가 검증문제에 대한 고려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조약이 국가간 政治的 妥協의 산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결국 政治的 環境이 특정 군비통제조약의 체결 내지는 검증형태의 합의에 우선하며 검증은 군비통제조약의 目的 達成을 위한 한 가지 手段일 뿐이다.

검증을 조약의 목적으로 간주하는 경우, 상대방의 수용 여부에 대한 고려없이 무리한 檢證方法을 추구하여 완벽한 검증, 상대의 일거수 일투족을 100% 확인할 수 있는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협상 자체를 방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군비통제조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현명한 접근방법도 아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逆說的인 論理를 발견하게 되는데 검증을 요구한다는 사실이 당

사자간에 不信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지나친 檢證要求는 오히려 불신을 고착화 내지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檢證의 패러독스」(paradox of verification) 문제이다. 더 나아가서는 군비통제조약 자체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당사국간에 체결가능한 것이지만 서로 충분한 신뢰가 존재하는 우호적인 국가간에는 이미 군비통제조약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軍備統制의 패러독스」(paradox of arms control)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2) 조약 違反時의 制裁는 검증과는 별개임.

대부분의 군비통제조약은 상대방의 조약준수 여부에 대한 의심이 일거나 해명을 필요로 할 때 정기적으로 혹은 수시로 개최되는 檢討會議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군비통제 역사가 발전함에 따라 「SALT I 조약」의 「常設協議委員會」(The Standing Consultative Commission: SCC)와 같이 조약내에 制度化된 特別討議機構에서 준수문제를 전담하여 풀어 나가는 방안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군비통제조약의 檢證에는 조약 위반시의 司法的 制裁問題는 포함되지 않으며 국내법에서와 같이 「罪刑法定主義」에 의거하여 檢證에 司法的 制裁機能을 부여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조약 위반이 발생하거나 위반의 가능성이 탐지되었을 때 당사자들은 이를 정치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며 이는 매우 민감한 문제인 것이다. 물론 UN 安全保障

理事會에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약도 있지만¹¹⁾ UN이 얼마나 實質的인 制裁措置를 신속히 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연례조약검토회의나 상설협의위원회는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역할은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조약내에 制度化된 對話窓이나 外交經路를 통해 준수분쟁을 시정할 수 없는 경우, 참가국의 獨自的인 制裁만이 존재할 뿐이며 이러한 독자적인 행동은 檢證과는 別個로 여겨져야 한다.

다. 檢證의 過程

검증과정은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1) 協商過程

군비통제조약 협상시에 검증에 관한 제반 문제들을 함께 협의하여 구체적인 檢證方法이 조약의 일부로서 제도화된다. 예를 들면 검증이 必要한가 하는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필요하다면 어떤 檢證方法을 이용할 것인가, 검증하기 어려운 條項도 조약에 포함시킬 것인가 등의 문제들이 조약 협상시에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검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조약으로 文書化되기까

11) 한 예로서 1971년 「해저비핵지대화조약」(The Seabed Treaty)의 제Ⅲ조 4항을 들 수 있다. 조약 전문은 Jozef Goldblat, *Arms Control Agreements: A Handbook* (Stockholm: SIPRI, 1982), pp. 158~60 참조.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에 대해 UN 결의안 687호에 의거하여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실시하고 있는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파괴 및 검증 등 對이라크 제재는 군비통제조약 위반에 따른 제재는 아니다.

지의 과정이 바로 協商過程에 해당된다.

이 과정에서 검증이 協商 카드로서 군비통제조약의 기타 조항과 交換(trade-off) 상대로 이용될 수도 있다. 즉 검증에 회의적인 상대와 협상시에 보다 확실한 검증방법을 조약에 포함시키기 위해 그 反對給付로서 상대측에게 더 有利한 條項들이 첨가되거나 不利한 條項들이 삭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확실한 검증방법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상대방에게 노출시키지 않고 상대에게 엄격한 檢證基準을 요구하다가 양보하면서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유도해 나가는 것도 情報蒐集能力이 보다 優位에 있는 측에서 하나의 協商戰略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점이다.

(2) 情報蒐集 및 分析過程

정보수집 및 분석과정에서는 「國家技術手段」(National Technical Means: NTM),¹²⁾ 「多國籍 技術手段」(Multinational Technical Means: MTM), 「協力檢證方案」(Cooperative Verification Measures: CVM), 그리고 기타 情報源을 통해 상대방의 조약준수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분석함으로써 협정 당사자간의 遵守情報 不均衡을 해소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은 技術的 過程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情報分析家에 의해 실시된다.

12) 「國家技術手段」이란 한 국가가 군비통제조약의 遵守 與否를 확인할 목적으로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技術的 諜報蒐集手段들이다. NTM의 예로는 사진정찰위성, 비행기에 부착된 레이더나 촬영장치 및 해상, 지상 레이더와 안테나 등을 들 수 있다. 「多國籍 技術手段」은 上記 기술장비가 여러 나라에 의해 공동으로 소유되는 것을 말한다.

(3) 判斷 및 對應過程

분석된 정보를 기초로 상대방의 條約違反 與否를 판단하며 조약위반에 의해 초래된 政治的·戰略的 不均衡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判斷 및 對應過程의 임무이다. 그러나 포착된 행위가 불확실한 경우 조약위반의 可能性과 위반의 結果, 조약 자체의 重要度 등을 고려하여 위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준수분쟁은 조약내에 제도화된 상설협의위원회와 같은 협의기구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政治的 過程으로서 일반적으로 政策專門家에 의해 다루어진다.

상대측의 조약위반 여부에 대한 判斷根據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技術的인 情報蒐集 및 分析過程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조약위반에 대한 判斷은 기술적인 정보수집에 의해 제공된 자료 이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마이어(Meyer)가 언급했듯이, 條約違反 與否에 대한 判斷은 기술적인 정보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軍事的 能力에 대한 評價, 상대방의 意圖 및 違反動機, 과거의 經驗에 의해 형성된 상대방에 대한 이미지, 기존의 國家關係, 國際 및 國內情勢, 위반된 조항의 重要度 등 조약 가맹국간 전반적인 政治·外交·軍事的 關係에 의존하는 매우 「主觀的」인 過程이기 때문이다.¹³⁾ 즉 수집된 정보가

13) Stephen Meyer, "Verification and Risk in Arms Control," *International Security* (Spring 1984), p. 113.

동일해도 판단 및 대응과정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라. 檢證의 機能 및 效果

검증의 기능이나 검증을 실행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1) 信賴構築機能

검증의 신뢰구축기능은 군비통제에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군사적 信賴構築方案이 수행하는 기능의 일부에 해당된다.¹⁴⁾ 검증의 신뢰구축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國家間 信賴構築機能(international confidence building function)인 데 이는 검증을 통해 상대방의 조약준수에 대한 확신을 가짐으로써 국가간 相互 信賴感을 증진시키고 다른 군비통제조약의 締結可能性도 높이는 기능을 말한다. 둘째, 國內 信賴構築機能(domestic confidence building function)은 적절한 검증방법을 통해서 자국 국민들에게 군비통제조약으로 인해 국가의 安保가 威脅받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는 對國民 說得機能을 의미한다.

(2) 條約違反을 탐지하는 安全裝置機能

상대측의 은밀한 條約違反을 探知하고 早期에 警報함으로써 검증은 조약 당사자들의 國家安保가 상대방의 조약위반으로 인

14) 전성훈, “유럽의 신뢰구축방안,” pp. 54~57.

해 威脅받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安全裝置機能을 수행한다.

(3) 違反을 억제하는 誘導機能

구체적인 검증방법을 동원하여 조약위반시에 적발될 가능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검증은 條約違反을 억제하고 協定遵守를 誘導해 나가는 기능을 수행한다.

(4) 새로운 安保構築機能

비밀성과 비공개에 기초한 기존의 안보개념에서 탈피, 開放과 透明度 및 豫測可能性 증대에 기초한 國家安保라는 새로운 개념에 입각하여 안보체제의 質的 變化를 유도함으로써 보다 建設的인 安保關係 設定과 平和定着을 실현한다. 전반적인 국제관계가 개선되고 있고 군비통제조약이 이러한 관계개선을 확고히 하는 역할을 하는 가운데 앞으로는 검증의 「새로운 安保構築機能」이 보다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第Ⅲ章 국제레짐과 檢證

1980년대에 들어서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이라는 개념이 국제관계에서 「一定 方式의 國家行爲」를 설명하는 중요한 틀로서 연구되어 왔다. 주로 經濟分野에서 레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추진되어 왔으며 이보다는 상대적으로 빈약하지만 軍事 및 安保分野에서도 레짐을 이용한 연구가 있었고¹⁾ 특히 군비통제조약을 部分安保레짐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연구도 추진된 바 있다.²⁾ 本 章에서는 레짐 이론에 입각하여 군비통제조약에서의 검증의 역할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1. 국제레짐

본 절에서는 국제레짐 이론을 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레짐은 개념적으로 原則, 規範, 規定 및 意思決定節次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으며 레짐의 生成과 維持에 영향을 미치는 다섯 가지 變數 중에는 레짐 참여자의 利己主義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레짐의 형성과 관련하여 레짐은 매우 제한된 경우에만 존재 의

1) Robert Jervis, "Security Regimes," Stephen Krasner, ed.,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pp. 173~194; Roger Smith, "Explaining the Non-Proliferation Regime: Anomalies for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Organization* (Spring 1987), pp. 253~281.

2) Joseph Nye, "Nuclear Learning and U.S.-Soviet Security Regi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Summer 1987), pp. 371~402.

의를 갖는다는 수정된 構造的 傳統이 가장 널리 받아 들여지고 있다. 또한 레짐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變化하며 레짐의 形成에 영향을 미치는 變數로부터 독립되는 自律性을 보이기도 한다.

가. 레짐의 定義

「국제레짐」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75년 존 러기(John Ruggie)에 의해서였다. 그는 레짐을 “일단의 국가들이 받아 들인 相互期待, 規定과 規則, 計劃, 組織的 에너지와 財政的 公約의 集束”이라고 정의하였다.³⁾ 1980년대 초에는 다음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레짐의 정의가 내려지게 되었다.

국제관계의 특정 분야에서 참여자들의 기대가 수렴하는 명시적 혹은 명시적 原則(principles), 規範(norms), 規定(rules) 및 意思決定節次(decision making procedures)의 집합이다. 原則이란 사실(fact), 원인(causation), 수정(rectitude)에 대한 믿음이다. 規範은 권리와 의무로 정의된 행위기준이다. 規定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강령이다. 意思決定節次는 공동으로 선택하고 이를 집행하는 實踐節次이다.⁴⁾

3)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a set of mutual expectations, rules and regulations, plans, organizational energies and financial commitments, which have been accepted by a group of states.” John Ruggie, “International Responses to Technology: Concepts and Trends,” *International Organization* (Summer 1975), p. 570.

4) Stephen Krasner, “Structural Causes and Regime Consequences: Regimes As Intervening Variables,” in Krasner, ed., *International Regimes*, p. 2.

레짐을 원칙, 규범, 규정 및 의사결정절차로 구분하는 것은 概念的인 試圖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重複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⁵⁾ 사실상 原則과 規範을 명확히 구분하기란 쉽지 않고 規範과 規定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히 레짐의 원칙과 규범이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가에는 학자들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다.⁶⁾ 그러나 특정 레짐의 原則을 레짐 참여자들이 레짐을 만듦으로써 추구하는 目的이나 目標로 보고, 規範을 합법적·비합법적 행위에 관하여 레짐 참여자에게 보다 분명한 命令을 내리고 일반적인 차원에서 責任과 義務를 규정하는 단순한 행위의 표준으로 간주한다면⁷⁾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규정과 규범이 약간 중복될 수도 있겠으나 規定은 보다 구체적이고 원칙이나 規範보다는 좀 더 쉽게 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⁸⁾ 규정은 일반적으로 條文化되는 반면 意思決定節次는 규정을 履行하는 行動이라는⁹⁾ 측면에서 두 개념은 분명히 구분되며, 의사결정절차는 조약의 규정 이행을 위해 설치되는 「機構」(institutions)라고 해

5) Nye, "Nuclear Learning and U.S.-Soviet Security Regimes," p. 374.

6) Stephan Haggard and Beth Simmons, "Theories of International Regi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Summer 1987), pp. 493~494.

7) Robert Keohane, *After Hegemon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pp. 57~58.

8) *Ibid.*, p. 58.

9) Jock Finlayson and Mark Zacher, "The GATT and the Regulation of Trade Barriers: Regime Dynamics and Functions," in Krasner, ed., *International Regimes*, p. 277.

석할 수도 있다.¹⁰⁾

이상에서 살펴 본 레짐의 定義에 따르면, 레짐은 원칙에서 규범으로 다시 규정과 절차 등으로 구체화된 정도만 다를 뿐 國家間 行爲에 대한 하나의 命令體系(a system of injunctions)로 간주할 수 있다. 편의상 원칙과 규범을 대강의 命令(broad injunctions)으로, 규정과 절차 혹은 기구를 具體的 命令(specific injunctions)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¹¹⁾ 대강의 명령은 구체적 명령을 통해 현실화된다고 볼 수 있다. 규정이나 절차 혹은 기구는 條約의 형태로 文書化된다.¹²⁾ 따라서 일반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조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해당 분야에 레짐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을 앞에서 소개한 레짐의 구조 측면에서 분석해 보겠다. GATT 레짐은 독점금지과 손쉬운 시장참여 등 자유로운 市場運營을 핵심 명제로 제2차 세계대전후 미국의 주도로 결성되었다. GATT 레짐은 이러한 명제를 원칙으로 함과 아울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규범을 갖고 있다.¹³⁾

첫째, 非差別 規範(the norm of nondiscrimination)은 무역규제를 적용할 경우, 일부 국가에만 차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되며

10) Nye, "Nuclear Learning and U.S. - Soviet Security Regimes," p. 392.

11) Ibid., p. 392.

12) Ibid., p. 393.

13) Finlayson and Zacher, "The GATT and the Regulation of Trade Barriers," pp. 278~305.

普遍性을 띠어야 한다는 규범이다. 그러나 비차별규범은 유럽경제공동체와 같은 지역적 경제협정이 기타 지역국가에 대해 차별을 두는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自由化 規範(the norm of liberalization)은 무역장벽의 축소를 말한다. 자유화 규범도 약화되어 왔는데 그 이유는 자발적인 수출제한과 같이 새로운 保護主義가 GATT 레짐의 범위밖에서 수입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쌓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相互性 規範(the reciprocity norm)은 국제무역에서 서로 타협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성 규범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게 지켜질 것이다.

넷째, 安全 規範(the safeguard norm)은 경제가 어려울 경우, GATT 규정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제조약에는 안전규정, 예외 및 회피규정 등이 있어서 條約의 遵守가 國家利益을 크게 해칠 경우 조약의 일부 규정을 지키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당 국가에게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GATT에서는 이들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과 절차상의 제한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開發 規範(the norm of development)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원조를 돕기 위해 이들 국가에 대해 특별대우를 하자는 것이지만 선진국들은 매우 제한된 경우에만 개발 규범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GATT 레짐의 대강의 命命은 GATT 조약에 條文化되어 있으며 GATT는 연례회의, 조정위원회(panel of concilia-

tion), 1947년 이후 개최되고 있는 주기적인 전체회의(round) 등 다양한 意思決定節次 및 機構를 갖고 있다.

나. 레짐에 影響을 미치는 因果變數

레짐의 형성, 지속, 변화 및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利己主義, 政治的인 힘, 포괄적인 原則과 規範, 習慣 및 知識 등의 다섯 가지 因果變數(causal variables)를 생각해 볼 수 있다.¹⁴⁾ 다섯 가지 변수중 레짐 참여자의 의사결정에 궁극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利己主義이며 나머지 변수는 레짐 참여자의 이기주의적 계산시 고려요소로 반영된다.

(1) 利己主義(Egoistic Self-interest)

이기주의는 자신의 效用만을 最大化하려는 욕망을 말하며 이기주의자는 다른 사람들의 행위가 자기의 효용에 영향을 미칠 때에만 그들의 행위에 관심을 갖는다.¹⁵⁾ 자신의 效用과 상대방의 效用 差異를 極大化하고자 할 경우 상황은 제로섬 게임(zero sum game)이 되지만 레짐이 형성되는 상황은 상호이해가 일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은 아니다. 또한 레짐은 근시안적인 이기주의의 표현일 수는 없으며¹⁶⁾ 레짐의 핵심 요소로서 利己主義는 長期的인 觀點에 근거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

14) Krasner, "Structural Causes and Regime Consequences," p. 11.

15) Ibid.

16) Smith, "Explaining the Non-Proliferation Regime," p. 256.

은 특히 안보레짐에서 매우 중요하다.

스타인(Stein)은 게임이론을 이용하여 理性的인 效用 極大主義者(a rational utility maximizer)가 공동의 意思決定을 선호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행동을 포기하게 되는 두 가지 경우, 즉 共同利害의 딜레마(dilemma of common interest)와 共同回避의 딜레마(dilemma of common aversion)를 제시하였다.¹⁷⁾ 공동이해의 딜레마에서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일반적으로 선택하여 초래되는 나쁜 결과보다는 레짐에 참여하여 次善策을 택하고 協力(collaboration)함으로써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동시에 공동의 이해를 증진하는 상황이다. 공동회피의 딜레마는 레짐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결과는 없으나 공동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상황은 있는 경우로서 相互調整(coordination)을 통해 목적을 성취한다. 하스(Haas)는 레짐이란 당사자들이 독립적·개인적 결정을 취하기 전에(before practicing self-help) 레짐을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機會費用을 신중하게 고려하게 하는 상황을 반영하는 約束이라고 규정한다.¹⁸⁾ 이러한 상황에는 스타인이 밝힌 바와 같이 공동이해의 딜레마와 공동회피의

17) Arthur Stein, *Why Nations Cooperate: Circumstance and Choi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pp. 25~55.

18) Ernst Haas, "Words Can Hurt You: or, Who Said What To Whom About Regimes," in Krasner, ed., *International Regimes*, p. 27.

딜레마 등 두 가지가 있다.¹⁹⁾

레짐은 레짐에 참여함으로써 부과되는 義務를 포기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레짐의 규정을 遵守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보다 크도록 한다는 점에서 法的 義務와 유사한 성격이 있다. 그러나 레짐의 重要性은 레짐이 제공하는 合法的 根據에 있다기보다는 레짐을 통해 레짐 참여자들이 建設的 關係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다는 서로의 行爲에 대한 安定된 期待感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²⁰⁾ 레짐은 참여자들의 行動 綱領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檢證을 통해 이들의 約束遵守 與否에 관한 情報도 제공한다.

이기주의와 관련된 개념으로서 國家利益과 學習이 있다. 국가 이익은 이기주의적 계산의 구체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國家利益에 대한 認識은 다음 세 가지 형태로 변화할 수 있다.²¹⁾

첫째, 선거, 쿠데타 혹은 세대교체 등을 통해 權力移動이 발생할 경우, 새로운 사고를 가진 指導者가 등장하여 國家利益에 대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認識을 할 수 있다. 즉 국가이익의 概念

19) 영(Young)은 레짐형성의 세 가지 類型을 제시하였다. 첫째, 自發的 類型은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시장과 같이 참여자들로부터 레짐형성에 대한 동의를 구하거나 의식적인 조정의 필요없이 각 개인의 행동이 수렴되어 레짐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경우이다. 둘째, 協商 類型은 군비통제조약과 같이 분명한 조약에 의해 레짐이 형성되는 경우이다. 셋째, 식민지와 같이 強大國의 強要에 의해 형성되는 레짐이 있다. Oran Young, "Regime Dynamics: The Rise and Fall of International Regimes," in Krasner, ed., *International Regimes*, pp. 98~101. 크레이즈너는 자발적 유형과 협상 유형에 의해 형성된 레짐을 利己主義에 기초한 레짐이라고 보았다. Krasner, "Structural Causes and Regime Consequences," p. 12.

20) Smith, "Explaining the Non-Proliferation Regime," p. 273.

21) Nye, "Nuclear Learning and U.S.-Soviet Security Regimes," p. 378.

에 대한 부분적인 變化는 단순히 정치엘리트의 변화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둘째, 국가이익은 規範的인 變化를 통해 새롭게 정의될 수 있다. 규범적 변화로 인해 한 시대의 행동패턴이나 국가이익은 후에 비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식민주의나 노예제도가 이러한 사실을 보여준다.²²⁾

셋째, 認識의 變化(cognitive change) 혹은 學習(learning)을 통해 국가이익이 변화할 수 있다. 學習이란 경험이나 연구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지식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새로운 情報은 기존의 믿음에도 변화를 주게 된다. 예를 들어 핵무기의 경우, 사용하기 위해서 발명한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특히 수소폭탄의 가공할 파괴력은 오늘날 핵무기가 단지 억제용으로서의 역할만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주고있다.

學習이란 레짐생성의 관점에서 볼 때 “共同의 利益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축적된 認識”으로서 특정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이나 情報가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과거의 立場에 變化를 가져올 때” 발생한다.²³⁾ 예를 들어 핵무기가 인류에 미칠 영향에 대한 학습을 통해 대부분의 핵비보유국은 「核武器擴散禁止

22) 나이(Nye)는 규범적인 변화가 국가이익을 새롭게 정의한다고 말했지만 그 逆順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권력의 이동이나 학습을 통해 변화된 국가이익이 規範的 進化(normative evolution)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23) Ernst Haas, “Why Collaborate? Issue-Linkage and International Regimes,” *World Politics* (April 1980), p. 390.

條約」에 가입함으로써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였다. 핵비보유국에게 있어 安保는(적어도 핵무기에 관한 한) 핵무기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協商과 檢證를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새롭게 정의되었다.

단순학습에서부터 어려운 학습까지 學習의 程度는 매우 다양하다.²⁴⁾ 단순학습이란 새로운 情報를 이용하여 目標의 變化없이 手段만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어려운 학습이란 매우 복잡한 상황에서 目標와 手段간에 葛藤이 발생하고 優先順位가 다시 정해지는 경우에 일어난다. 단순학습으로부터의 변화는 變化된 狀況에 적응하는 것이며 어려운 학습은 새로운 規範의 開發과 目標의 修正을 가져온다.

레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레짐 참여자들의 學習과 行爲에 영향을 준다. 첫째, 레짐의 原則과 規範이 레짐 참여자들에게 內在化되어 合意事項 위반시 받는 被害를 증가시킨다. 둘째, 레짐은 情報를 제공하여 레짐 참여자들이 그들의 利益을 이해하는 방법에 영향을 주거나 이전에 알 수 없었던 因果關係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해 준다. 이러한 情報에는 검증에 의한 早期警報와 透明度 증대도 포함된다.²⁵⁾ 보다 구체적으로 레짐은 (1) 레짐의 구도내에서 상호 접촉을 통해 레짐 참여자들의 態度를 변화시키고, (2) 공식적·주기적 모임을 통해 전반적인 政治關

24) Nye, "Nuclear Learning and U.S.-Soviet Security Regimes," p. 380.

25) Ibid., p. 400.

係의 變化로부터 特定 分野를 격리시키는 手段을 제공한다. 레짐이 學習에 주는 影響은 다음 예에서 볼 수 있다. SALT 레짐을 통해 미국은 소련과 광범위한 情報를 공유하게 된다. SALT 레짐 초기에 소련 당국자들은 민간인들 앞에서 軍事機密에 관해 논의하는 미국에 대해 많은 불평을 하였고 미국의 각 기관이나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소련은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²⁶⁾

결론적으로 學習이란 이기주의적 계산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로서 레짐 生成에 영향을 미친다. 인과변수와 관련 행위 및 결과 사이의 매개체로서 레짐은 더 많은 학습을 유도한다. 이러한 학습의 결과 기존의 레짐이 변화되거나 새로운 레짐이 생성될 수 있다. 일단 학습이 발생하면 이익에 대한 레짐 참여자들의 기존의 믿음은 새로운 情報와 經驗 취득으로 인해 변화될 수 있다.²⁷⁾

(2) 政治的인 힘

정치적인 힘의 행사는 共同의 利益을 위한 힘의 행사와 個人의 利益을 위한 힘의 행사로 대별될 수 있다.²⁸⁾ 공동의 이익을 위한 힘의 사용은 社會 全體를 위한 最適의 結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각 행정부는 시장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경제활동에 개입하곤 한다. 즉 권력

26) Ibid.

27) Ibid., p. 391.

28) Krasner, "Structural Causes and Regime Consequences," pp. 13~16.

이 시장경제에 개입하여 사회 전체의 效用을 極大化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없는 국제관계에서 이러한 권력사용의 예를 찾기란 어렵다.

개인의 이익을 위한 힘의 行使 類型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이기주의적 계산에 의해 레짐을 형성할 動機가 발생했을 때 레짐이 형성되며 이 때 權力의 分布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 레짐을 통해 공동의 이익도 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한 힘의 행사와 유사한 점이 있다. 霸權主義的 安定理論(the hegemonic stability theory)이 이 상황을 설명하는데 패권주의적 안정이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하나의 유능한 국가의 존재는 해당 국가 뿐만 아니라 시스템이 다른 나라에도 유익한 레짐의 출현을 가져온다; 요점은 패권국가가 公益을 제공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을 파레토 最適點으로 이동시킨다는 것이다…… 역으로 패권국가의 不在나 衰退는 시스템내의 다른 국가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와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이 이론의 색다른 점은 霸權主義가 착취적이며 단지 패권국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 대신에 패권주의가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주장하는 점이다.²⁹⁾

패권주의적 안정이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前提를 갖고 있다: (1) 능력을 가진 霸權國家가 레짐을 형성할 責任이 있음, (2) 패권국가가 요구하는 協力은 패권국 뿐만 아니라 全體를 위

29) Smith, "Explaining the Non-Proliferation Regime," p. 254.

해 有益함, (3) 패권국이 사라질 때 레짐도 사라짐.³⁰⁾ 즉 利益의 普遍化를 추구하는 한 국가가 다수의 다른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레짐을 후원하고 레짐을 유지하는 데 따르는 짐을 떠맡지만 만약에 패권국가가 쇠퇴하거나 레짐유지의 動機가 弱化되었을 때는 레짐이 변화하거나 무산된다.³¹⁾

그러나 패권주의적 안정이론이 레짐의 生成現象에 대한 설명으로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레짐의 維持에 대한 論理的 根據로 활용되기는 부적절하다. 패권주의가 사라진 후에도 레짐은 유지되고 오히려 번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40년대 및 1950년대와 비교할 때 세계무역분야에서 미국의 패권주의적 영향력은 1970년대 들어 약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ATT 레짐은 多者間 貿易의 場으로 계속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核武器擴散禁止 레짐도 미국의 패권주의가 전반적으로 衰退하던 時期에 制度化되었으며 核에너지 분야에서 미국의 優位가 退潮하던 時期에 더욱 효과적으로 발전하였다.³²⁾

둘째, 정치적인 힘은 또한 상대방이 택할 수 있는 전략이나 특정 전략을 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價値를 變化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영(Young)이 제시한 강제레짐에서 볼 수 있듯이³³⁾ 강대국은 다양한 制裁와 動機賦與을 통해 약소국이 레짐에 순응

30) Ibid., pp. 262~264.

31) Haas, "Words Can Hurt You," p. 29.

32) Smith, "Explaining the Non-Proliferation Regime," p. 269.

33) Young, "Regime Dynamics," pp. 98~101.

하도록 유도하거나 弱小國의 選擇權을 제한함으로써 레짐을 받아 들이도록 강요한다.

(3) 包括的인 原則과 規範

푸찰라와 홉킨스(Puchala and Hopkins)는 구체적 個別 현안레짐과 포괄적인 複數 현안레짐을 구분하였다.³⁴⁾ 포괄적인 복수 현안레짐이 규정하는 사항들은 구체적인 개별 현안레짐을 형성하는 데 있어 주어진 條件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GATT 레짐하에서 각종 양자간 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GATT 레짐은 광범위한 복수 현안레짐으로서 양자간 협정의 包括的인 原則과 規範으로 작용한다. 또한 국제관계에서 國家主權의 守護는 중요한 포괄적 원칙임에 틀림없다.³⁵⁾

(4) 習慣

습관은 오랫동안의 實踐에 의한 行動樣式을 말하는데³⁶⁾ 특히 레짐유지에 영향을 준다. 강제레짐의 경우 약소국 국민들이 服從하는 習慣이 생기기 때문에 강대국이 약소국 국민을 항상 강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영(Young)은 주장한다.³⁷⁾ 또한 강대국의 이기주의적 계산이나 정치적인 힘에 변화가 발생하여 식민

34) Donald Puchala and Raymond Hopkins, "International Regimes: Lessons From Inductive Analysis," in Krasner, ed., *International Regimes*, p. 64.

35) Krasner, "Structural Causes and Regime Consequences," p. 17.

36) *Ibid.*, p. 18.

37) Young, "Regime Dynamics," p. 101.

주의적 규범과 이들 규범에 대한 弱小國의 遵守現象이 사라져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약소국이 강제레짐에 복종하는 습관에 젖어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5) 知識

지식은 “일정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된 公共政策에 대한 안내역할을 할 목적으로 특정 시간에 관련 당사자간에 충분히 合意된 情報과 이들 情報에 대한 理論의 集合”으로 정의된다.³⁸⁾ 지식은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복잡한 관계를 조명함으로써 새로운 協力の 場을 마련해 줄 수도 있다.³⁹⁾ 반면에 지식은 레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戰略防衛構想」(Strategic Defense Initiative: SDI)을 통해 「SALT I ABM 조약」을 재해석하려는 미국의 의도는 우주무기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다. 레짐의 意義

일반적으로 레짐의 존재가 意味가 있느냐에 대해 세 가지 다른 견해가 있다.⁴⁰⁾ 첫째, 영(Young)과 푸찰라와 홉킨스(Puchala and Hopkins)로 대표되는 「그로시안 傳統」(Grotian tradition)에 따르면 레짐이란 국제사회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인

38) Haas, “Why Collaborate?” pp. 367~368.

39) Krasner, “Structural Causes and Regime Consequences,” p. 19.

40) Ibid., p. 6.

간의 지속적인 행동양식의 내재적인 특성으로 간주된다.⁴¹⁾ 영(Young)은 “우리는 레짐들로 이루어진 세계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⁴²⁾ 스트레인지(Strange)로 대표되는 「在來의 構造的 傳統」(conventional structural traditon)에서는 국제사회는 중앙의 중심점이 없는 無政府狀態에서 각자의 힘과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는 主權國家로 구성된다는 기본전제하에 레짐이란 잘못된 개념이며 전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⁴³⁾ 스타인(Stein), 저비스(Jervis), 코헨(Keohane)으로 대표되며 또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修正된 構造的 傳統」(modified structural tradition)은 국제사회가 각자의 利益을 最大化하려는 주권국가로 구성된다는 구조적 전통의 基本前提에는 동의하지만 특정한 경우에, 즉 개별 행동을 통해 모두에게 만족스런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경우 레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⁴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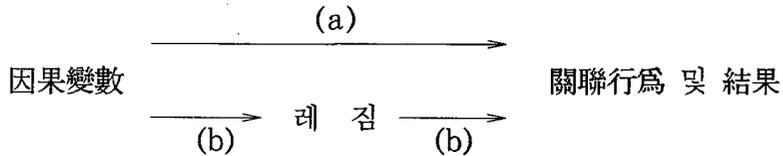
41) Young, “Regime Dynamics”; Puchala and Hopkins, “International Regimes” 참조.

42) Oran Young, “International Regimes: Problems of Concept Formulation,” *World Politics* (Spring 1980), p. 331.

43) Susan Strange, “Cave! Hic Dragones: A Critique of Regime Analysis,” Krasner, ed., *International Regimes*, pp. 337~354.

44) Stein, *Why Nations Cooperate*; Jervis, “Security Regimes”; Keohane, “The Demand for International Regimes” 참조.

<도표 1> 레짐의 意義



<도표 1>은 수정된 구조적 전통에 입각하여 因果變數와 關聯行爲 및 結果 사이에 媒介體로서의 레짐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화살표 (a)가 보여 주듯이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因果變數는 매개체없이 바로 관련 行爲 및 結果로 나타난다. 그러나 각 개인의 독자적인 행동이 모든 참여자에게 最適이지 못한 結果(Pareto-inferior outcome)를 가져오게 될 때 화살표 (b)에서 보듯이 인과변수는 레짐형성을 유도하고 레짐을 통하여 관련행위 및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다. 즉 각 개인은 독자적인 행동을 포기하고 共同의 意思決定에 합류함으로써 레짐이 형성된다. 군비통제를 예로 들면, 화살표 (a)에서는 당사자들이 競爭的 關係에서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지 않고 獨自的인 軍備 增強政策을 추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軍備競爭이 발생한다. 그러나 화살표 (b)에서는 특정 군사분야에서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는 당사자들이 相互協力과 調整을 통해 군비통제조약을 체결하여 군비증강을 자제하는 것이 모두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군비통제조약 체결이 가능해진다.

라. 레짐의 變化

레짐의 變化는 두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레짐의 原則과 規範, 즉 레짐의 규범적 틀은 그대로이나 細部規定이나 意思決定節次에 變化가 오는 경우이다. 조약을 시행하면서 조약체결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제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나 이러한 「規範 範圍內의 變化」는 큰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다. 둘째, 레짐의 규범적 틀에 變化가 오는 경우에는 레짐의 원칙과 규범이 수정되거나 포기됨으로써 레짐 자체에 根本的인 變化를 가져오게 된다.

규범적 틀에 變化를 가져오는 要因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⁴⁵⁾

첫째, 일부 레짐은 相互矛盾되는 사항을 규정하거나 虛點을 방치함으로써 條約을 대폭 修正하거나 廢棄해야 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ALT I ABM 조약」은 해상, 공중, 혹은 이동식 ABM 시스템의 개발, 실험, 배치, 다탄두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ABM 발사대와 한 번에 두 개 이상의 ABM 요격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ABM 발사대의 배치를 금지하는 반면, 조약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해 조약체결 당시 개발되지 않은 기술에 의한 ABM 시스템의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虛點을 드러내었다. 레이건 행정부이후 미국이 추진해온 「戰略防衛構想」

45) Young, "Regime Dynamics," p. 106.

(SDI)이 「ABM 조약」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미국행정부는 ABM 조약의 虛點을 이용하여 전략방위구상을 정당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ABM 조약 자체를 위협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현재 전면적인 전략방위구상 대신에 제한된 형태의 미사일防禦體系를 추진중인 미국에 러시아가 동조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ABM 조약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둘째, 레짐을 둘러싼 힘의 構造에 變化가 올 때 레짐도 변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민지를 강요한 제국주의 국가가 더 이상 식민정책을 유지할 여력이 없을 때 식민레짐에도 변화가 오게 된다.

셋째, 기술발달이나 국제환경의 변화 등 外的 要因도 레짐 자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은 레짐의 세 가지 변화요인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동시에 발생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 레짐의 自律性

레짐의 自律性은 遲延과 歸還이라는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난다.⁴⁶⁾ 遲延은 레짐이 因果變數의 영향을 덜 받고 이들 변수로부터 獨立되는 狀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요 인과변수인 利己主

46) Stephen Krasner, "Regimes and the Limits of Realism: Regimes as Autonomous Variables," in Krasner, ed., *International Regimes*, p. 359.

義와 政治的인 힘은 변화했지만 레짐 자체는 변화하지 않은 상태가 遲延에 해당된다. 歸還은 이미 존재하는 레짐이 이기주의적 계산의 基準을 변화시키거나 정치적인 힘의 再分配를 가져옴으로써 因果變數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말한다.

(1) 遲延

지연에서는 인과변수와 레짐간의 關係가 弱化되어 레짐이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해 자체적인 影響力을 행사한다. 지연이 발생하는 理由로는 習慣, 不確實性 및 認識의 失敗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다.⁴⁷⁾ 첫째, 정치적 힘과 이기주의적 계산에 변화가 발생해도 레짐의 개별 구성원들은 過去의 習慣대로 레짐을 계속 준수할 수 있다. 둘째, 새로운 環境變化의 지속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새로운 레짐 形成의 結果가 확실하지 않을 때 레짐 참여자들이 기존의 레짐을 그대로 준수하게 된다. 셋째, 레짐 참여자들이 기존의 레짐에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滿意된 知識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代替 레짐을 형성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는 기존의 레짐을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레짐의 情報提供機能이 때로는 지연을 유발하기도 한다. 즉 레짐의 構造가 약화되어도 레짐이 귀중한 情報를 제공해 줄 경우, 해당 레짐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⁴⁸⁾

47) Ibid., p. 360.

48) Keohane, "The Demand for International Regimes," p. 164.

(2) 歸還

레짐이 레짐생성의 주요 요인인 利己主義와 政治的인 힘을 變化시키는 過程이 귀환이다. 다음과 같이 네 가지 歸還 類型을 생각해 볼 수 있다.⁴⁹⁾

첫째, 레짐의 존재는 機會와 動機의 變化를 통해 레짐 참여자들의 利益을 극대화하는 計算方法에 變化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일지라도 레짐이 형성된 후와 형성되기 전과는 다를 수가 있다.

둘째, 레짐의 정보제공기능을 통한 知識과 相互利害의 증진은 레짐 참여자들의 利益 자체에 대한 認識을 變化시킬 수 있다. 레짐 참여자들의 이익에 대한 認識은 부분적으로 기존 레짐이 제공하는 情報의 결과로 끊임없이 變化하고 있으며 이는 레짐 참여자들의 새로운 행위를 유도하여 레짐 자체를 變化시킬 수 있다.

셋째, 레짐이 政治적인 힘의 根源이 될 수 있다. 힘의 기본적인 바탕이 變化하는 것은 아니나 레짐을 통해 影響力을 행사할 수 있는 能力이 신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제무역분야에서 개발도상국들은 GATT 레짐을 이용하여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 하였다. 또한 무역과 기술이전에 관한 국제협정을 통해 개발도상국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규제의 합법화와 이러한 기업을 규제할 행정부의 능력 증대를 추구하였다.

넷째, 레짐은 레짐 참여자들의 政治的인 힘에 變化를 가져올

49) Krasner, "Regimes and the Limits of Realism," pp. 361~367.

수 있다. 예를 들어 1960년대에 미국은 특히 유럽 및 일본과의 무역거래 불균형을 감수해 왔으나 자본과 기술의 수출로 인해 미국의 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2. 부분안보레짐과 檢證

本節에서는 군비통제 조약을 부분안보레짐으로 규정하고 레짐 이론의 측면에서 軍備統制條約과 檢證의 關係를 규명하고자 한다. 檢證은 레짐의 구조적 측면에서 부분안보레짐의 한 規範으로 개념화될 수 있으며 檢證規範은 條約의 規定으로 條文化되고 검증실시중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機構도 설치된다. 또한 檢證 許容程度에 따라 검증규범을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 부분안보레짐

하나의 레짐이 커버해야 할 範圍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 저비스(Jervis)는 그의 「안보레짐」을 이용하여 美·蘇間의 전반적인 安保關係를 다루고자 하였다.⁵⁰⁾ 그는 안보분야와 비안보분야의 差異를 다음과 같은 安保分野의 네 가지 特徵을 들어 설명하였다: (1) 安保問題의 優先性, (2) 고도의 利害關係가 걸린 競爭的 性格, (3) 조그만 失手도 일어킬 수 없는 結果를 가져

50) Jervis, "Security Regimes," p. 187.

을 수 있다는 사실, (4) 한 국가가 필요한 安保의 程度에 대한 不確實性.⁵¹⁾ 미·소간에는 매우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利己主義가 행위의 주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안보레짐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⁵²⁾ 한편 코헨(Keohane)은 레짐은 特定 條約과는 구분되어야 하며 국제레짐은 효용 극대주의자들간에 구체적인 條約締結을 촉진하는 裝置라고 보았다. 그는 레짐의 주요 機能이 레짐 형성을 통해 협상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분야에서 구체적인 條約締結을 促進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⁵³⁾

이와 같이 레짐을 국가간의 전반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보는 것과 달리, 안보분야의 레짐을 논하는 데 있어서 레짐의 概念을 보다 협소하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다. 나이(Nye)는 미·소간의 전반적인 安保關係가 레짐으로 분류될 수 있느냐를 논하기보다는 安保關係를 세부적인 安保懸案들로 구성된 모자이크로 간주하고 이들중 일부를 규정과 기구를 갖춘 레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⁵⁴⁾ 이러한 그의 주장은 미·소간에 왜 일부 軍事懸案에서만 軍備統制條約이 체결되어 왔는지를 설명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군비통제조약은 부분적인 軍事安保問題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부분안보레

51) Ibid., p. 175.

52) Ibid., p. 187.

53) Keohane, "The Demand for International Regimes," p. 153.

54) Nye, "Nuclear Learning and U.S.-Soviet Security Regimes," p. 376.

짐」(a partial security regime)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⁵⁵⁾

부분안보레짐의 형성은 수정된 構造的 傳統에 입각하여 상당히 制限된 條件下에서, 즉 레짐 참여자들의 개별 행동으로는 참여자 모두에게 최적의 결과인 파레토 最適點(Pareto optimal outcome)을 도출할 수 없을 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前提를 따른다. 환언하면 군비통제조약이 존재하는 경우, 당사국들은 레짐이 커버하는 분야에서 근시안적인 이기주의에 의한 軍備增強行動을 자제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레짐형성에 영향을 주는 다섯 가지 변수중에는 利己主義的 計算이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⁵⁶⁾

나. 부분안보레짐의 事例

「핵무기확산금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과 「전략무기제한조약 I」(SALT I Treaty)을 레짐의 觀點에서 분석해보겠다. 핵무기확산금지 레짐의 대강의 命命은 핵무기와 핵무기 제조기술의 擴散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핵무기확산금지 레짐의 原則은 핵무기의 水平的 擴散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威脅이 되므로 制限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규범은 레짐 참가국들은 核擴散을 촉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⁵⁷⁾ 보

55) Ibid., p. 393.

56) 레짐형성의 또 다른 요인으로 간주되는 「政治的인 힘」과 「包括的인 原則과 規範」도 이기주의적 계산에 수렴되는 것으로 전제한다. Stein, *Why Nations Cooperate*, p. 48. 이기주의적 계산을 통해 가능한 대안들에 대한 選好度(preferences)가 결정되며 선호도에 따라 레짐형성 여부가 판가름난다.

57) Keohane, *After Hegemony*, p. 58.

다 구체적으로 핵무기확산금지 레짐의 規範은 (1) 핵보유국은 타국의 核武裝能力 保有에 도움을 주지 말것, (2) 핵비보유국은 核保有 努力을 포기할 것, (3) 핵의 平和的 利用을 위한 協力은 계속할 것, (4) 평화적 핵이용이 軍事的 目的으로 轉用되는 것을 막기 위해 IAEA에 의한 적절한 檢證을 실시할 것 등이다. 이러한 원칙과 규범이 1968년에 체결된 「핵무기확산금지조약」으로 條文化되었다.

핵무기확산금지 레짐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機構를 두고 있다. 첫째, 5년에 한번씩 「NPT」의 성과를 평가하는 「檢討會議」이다.

둘째, 安全檢査를 실시하는 「國際原子力機構」(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이다.

셋째, 개발도상국에 核燃料과 裝備를 수출하는 指針과 節次를 만들어 내는 「核輸出國委員會」(Nuclear Exporters Committee), 일명 「쟁가 커미티」(Zangger Committee)이다. 핵수출국위원회는 1974년에 IAEA의 안전검사 수용없이 핵비보유국에게 수출이 허가되지 않는 부품에 대한 規制目錄을 발표하였다.

넷째, 상업적 경쟁으로 安全檢査體制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포드행정부의 주도로 결성된 「核供給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NSG), 일명 「런던 클럽」(London Club)이다. 핵공급그룹은 1976년 1월 자체 規制目錄을 발표하였고 핵관련 물질과 부품을 수출할 때 따라야 할 行動規約도 채택하였으나 義務事項은

아니다.⁵⁸⁾

다섯째, 플루토늄 확산을 막기 위해 核燃料 濃縮과 再處理에 관한 모든 활동이 적절한 安全檢査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카터행정부의 주도로 핵연료 週期の 모든 면을 토의하기 위해 개최된 「國際核燃料週期評價會議」(International Nuclear Fuel Cycle Evaluation: INFCE) 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核武器擴散禁止法案」(Nuclear Non-Proliferation Act: NNPA)이다. 미국은 핵관련 장비와 물질을 수출하는 조건으로 IAEA의 全面安全協定 체결을 요구할 것과 핵무기를 製造 혹은 獲得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을 한 국가에게는 核關聯 協力을 중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법안을 1978년 채택하였다.⁵⁹⁾

이러한 기구를 통한 情報交換과 透明度 제고는 조약위반에 대한 早期警報를 제공함으로써 조약 참가국들의 “미래의 그늘을 연장시키기에”(lengthen the shadow of the future),⁶⁰⁾ 즉 協力を

58) T. Tate, “Regime-Building in the Non-Proliferation System,”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27, No. 4 (1990), pp. 399~414.

59) 미국은 핵비보유국의 核武器 開發에 도움을 준 개인이나, 회사, 국가에 대해 새로운 制裁를 가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1992년 4월 9일 상원의 심의를 통과한 「핵무기확산 통제 일괄법안」(The Omnibus Nuclear Proliferation Control Act)의 주요 制裁手段은 개인이나 집단, 국가의 핵개발 노력을 알면서도 물질적으로 도움을 준 회사나 개인으로부터의 수입금지와 美 政府와의 거래금지이며 핵개발을 도와준 국가의 경우, 미국으로부터 특정원조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다. *Arms Control Today*, Vol. 22, No. 4 (May 1992), p. 25.

60) Smith, “Explaining the Non-Proliferation Regime,” p. 275.

통한 長期的인 利益의 증대를 도모하기에 충분하였다. 핵무기확산금지 레짐은 전반적으로 매우 잘 준수되었으며 특히 미·소 양국은 근시안적인 政治的 利益을 피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이를 포기하고 레짐을 지켜 왔다.⁶¹⁾ NPT의 規定과 機構는 미·소 양국의 근시안적 利益追求를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구를 통한 정기적인 모임은 핵무기확산금지 문제를 기타 전반적인 政治關係로부터 격리시켜서 1980년대 초 미·소 양국이 다른 군비통제회담을 중지한 동안에도 핵무기확산금지에 관한 모임은 계속 유지되었다.

전략무기제한 레짐의 原則은 핵전쟁의 危險과 위기시의 不安定을 줄이자는 것이고 規範은 (1) 相互 均衡 견지, (2) 相互 脆弱性 유지, (3) 攻守戰力 동시제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강의 명령들이 「전략무기제한조약 I」에 조문화되었으며 상설협의위원회(Standing Consultative Commission: SCC)와 같은 遵守紛爭 解決機構도 제도화되어 있다. 미·소는 SALT I 레짐을 통해 NTM 방해나 은폐 금지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고 초과무기를 폐기함으로써 근시안적인 이기주의를 포기하였다.⁶²⁾

한편 나이(Nye)는 다음 네 가지 이유를 들어 SALT 레짐이 약화되었다고 주장한다.⁶³⁾ 첫째, 미·소는 SALT 레짐을 제3세계

61) Nye, "Nuclear Learning and U.S.-Soviet Security Regimes," p. 397. 이라크의 조약위반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다.

62) Nye, "Nuclear Learning and U.S.-Soviet Security Regimes," p. 394.

63) Ibid., p. 395.

에서 양국의 競爭과 분리시킬 수 없었다. 1970년대 후반 제3세계에서의 소련의 행동에 대한 非難과 「SALT II 조약」에 대한 懷疑가 미국내에서 거세게 일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1979년 12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후 「SALT 조약」의 比準要請이 철회됨으로써 절정에 달한다.

둘째, 1980년대 對蘇 강경정책을 추진한 레이건행정부의 등장으로 전반적인 美·蘇關係의 惡化와 더불어 준수분쟁 해결과 검증문제를 논의하는 양국의 태도가 매우 적대적으로 변하였다. 특히 레이건대통령이 1984년 소련의 違反事例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과 같이 상설협의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할 수 있는 문제를 공개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양국간 不信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

셋째, 레이건행정부는 카터행정부와 달리 소련과의 軍備統制에 대해 否定的인 評價를 내렸다. 군비통제에 대한 레이건행정부의 對蘇 強硬立場은 주요 관리들의 발언에 잘 나타나 있는데, 예를 들어 美 군축처장 로스토우(Eugene Rostow)는 1970년대에 소련이 軍備統制를 이용하여 戰力的 優勢를 추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SALT I ABM 조약」이 SDI의 도전을 받고 있는 것과 같이 技術發達로 인해 SALT 레짐이 약화되었다.

다. 안보레짐과 기타 분야 레짐의 差異

레짐에 관한 연구는 주로 경제분야에 치중되어 있다. 그러나

經濟分野에서는 레짐의 違反問題가 安保分野에서처럼 심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遵守檢證 問題가 레짐이론적 측면에서 다루어진 예는 거의 없다.

악셀로드와 코헨(Axelord and Keohane)은 經濟와 安保分野의 差異點으로서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줄 정도의 秘密事項을 다루지 않는 경제분야에서는 情報交流가 군사분야에서보다 원활하므로 자연히 레짐 참여자들은 遵守情報 획득에도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본다.⁶⁴⁾ 저비스(Jervis)도 관세인상, 자금조작, 혹은 불법적 어로활동 등이 경제레짐을 위반하여 발생할 수 있지만 안보레짐의 위반보다는 探知가 용이하고 위반의 餘波도 비군사분야에서 훨씬 분명하며 따라서 군사분야에서 不確實性이 더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⁶⁵⁾ 결과적으로 비군사분야에서는 情報 不均衡問題가 군사분야에서만 심각하지 않으므로 檢證의 重要性도 크게 부각되지 않는 것이다.

립슨(Lipson)은 軍事分野의 特徵으로 일방적인 條約遵守가 가져올 즉각적이고 심각한 損失과 상대방의 행위를 적절히 감시하지 못함으로써 수반되는 危險을 들었다.⁶⁶⁾ 또한 경제활동은 안보에 관련된 활동보다 투명하고 위반 발생시 즉각적이고 심각한

64) R. Axelord and R. Keohane, "Achieving Cooperation Under Anarchy: Strategies and Institutions," in Kenneth Oye, ed., *Cooperation Under Anarch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 p. 234.

65) Jervis, "Security Regimes," p. 175.

66) Charles Lips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Economic and Security," *World Politics*, Vol. 37, No. 1 (1984), p. 14.

손실이 초래되는 것도 아니므로 경제분야에서는 신속하고 결정적인 레짐위반의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립슨은 군사분야와 비군사분야의 差異는 條約違反의 餘波, 監視의 어려움 및 안보문제를 매우 競爭的인 鬭爭의 문제로 파악하려는 경향에 있다고 보았다.⁶⁷⁾

안보레짐과 비군사레짐 사이에는 規範의 嚴格성과 敏感性에도 차이가 있다. 안보레짐의 규범은 보다 엄격하며 민감하기 때문에 규범을 어기는 조약위반의 여파가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GATT의 규범은 때로는 의도적으로 약화되어 왔다. 그러나 GATT는 아직도 중요한 다자간 무역기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이 「SALT I ABM 조약」을 재해석하여 戰略防衛構想을 시도한 것에 대해 소련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조차 條約違反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있다는 사실은 안보레짐의 규범이 훨씬 엄격하고 조약위반에 매우 민감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안보레짐에서 규범의 엄격성과 민감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안보레짐의 規範들이 보다 밀접하게 聯關되어 있어 특정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의 波及效果가 경제레짐에서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SALT I 조약」의 「相互脆弱性 堅持」 규범을 위반하는 경우 이는 다른 두 규범(「相互均衡 維持」와 「攻守戰力 同時制限」)도 위반하는 결과로 된다. 그러나 관세무역

67) Ibid., p. 18.

일반협정에서는 「개발」 규범의 위반이 「비차별」 규범이나 「자유화」 규범의 위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 檢證: 부분안보레짐의 規範

레짐은 레짐. 참여자들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目標達成과 아울러 레짐 참여자간 意思疏通의 양과 질을 증가시키고 情報 不均衡問題를 해소함으로써, 즉 情報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분야에서 레짐 참여자들의 행위에 대한 不確實性和 危險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스미스(Smith)는 「핵무기확산금지조약」을 예로 들어 IAEA 安全檢査를 통한 지속적인 情報의 흐름과 다양한 기구에서의 평가와 토의는 違反可能性에 대한 早期警報를 제공함으로써 레짐 참여자들을 위한 “미래의 그늘을 연장한다”고 주장한다.⁶⁸⁾ 새로운 정보 습득을 통한 學習은 國家利益을 형성하는 한 요소가 되어 레짐의 형성 및 변화에 영향을 주게 된다.⁶⁹⁾ 물론 정보의 正確性和 정보취득의 迅速성이 협력을 통한 長期的인 利益의 증대를 도모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부연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⁷⁰⁾

검증의 목적은 遵守情報 不均衡의 해소라고 검증의 분석적 정의를 통해 규정한 바 있다. 이는 검증문제의 핵심이 곧 情報問題임을 의미한다. 情報取得 및 解釋이 용이할수록 레짐은 더욱 安

68) Smith, “Explaining the Non-Proliferation Regime,” p. 275.

69) Nye, “Nuclear Learning and U.S.-Soviet Security Regimes,” pp. 378~379.

70) Axelord, and Keohane, “Achieving Cooperation Under Anarchy,” p. 233.

定的으로 유지될 수 있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정보취득이 용이하다는 것은 조약위반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특히 중요하다. 情報의 흐름을 增大시킴으로써 레짐은 規定違反의 探知可能性을 높이고 違反을 抑制하게 되는 것이다.⁷¹⁾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레짐을 구성하는 네 가지 구성요소 중 레짐의 原則은 레짐 참여자들이 레짐을 형성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一般的인 目的이라고 볼 수 있다. 군비통제조약은 특징에 따라 해당 조약이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군비통제레짐의 原則은 제 I 장에 제시된 바와 같이, (1) 軍事關係의 安定 증진과 軍備競爭 중지, (2) 危機時의 安定 증진, (3) 豫測可能性 제고, (4) 奇襲攻擊能力 제거 및 전쟁의 被害 최소화, (5) 우발적 戰爭勃發 危險 감소 등으로 제시될 수 있다. 분명한 사실은 레짐의 원칙이 일반적이고 개념적으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레짐의 規範은 원칙보다는 구체적으로 군비통제레짐의 特性을 설명해 주고 있다. 「SALT I 조약」에서 보듯이 부분안보레짐의 중요한 특성들은 각각 해당 레짐의 규범선에서 개념화될 수 있다.

檢證은 조약의 遵守 與否를 확인하는 程度 혹은 基準을 표시하는 부분안보레짐의 規範으로 정의될 수 있다. 검증이 레짐의 원칙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조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조약체결의 목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檢證規範은 구체적인

71) Krasner, "Regimes and the Limits of Realism," p. 362.

檢證條項의 형태로 조문화되며 조약의 원활한 履行과 遵守紛爭 해결을 위한 機構들도 조약내에 제도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검증은 레짐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규범중의 하나로서 遵守情報 不均衡을 해소함으로써 信賴를 구축하고 協力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검증은 레짐의 원칙 혹은 다른 규범들과 對立關係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레짐의 檢證規範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레짐 참여자들간에 合意를 이루지 못할 경우 검증을 강조하는 것은 1980년대 초반의 미·소간 군비통제협상에서 볼 수 있듯이 레짐형성 실패에 대한 책임전가 구실로 이용될 수 있다.

검증규범의 중요한 특징은 規範의 普遍性에 있다. 레짐의 규범은 해당 레짐의 한 특성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규범이 다른 레짐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SALT I ABM 조약의 「相互脆弱性 유지」 규범은 ABM 조약의 특성을 나타낼 뿐 「핵무기확산금지조약」이나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 I」에서는 의미가 없다. 그러나 검증규범은 검증을 수용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情報의 흐름이 불완전한, 즉 상대방의 遵守行爲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모든 레짐에 공히 필요한 규범이다. 검증조항없이 합의되는 군비통제 레짐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다. 1963년에 체결된 「부분핵실험금지조약」에서 조문화되지는 않았으나 NTM 사용이 묵시적으로 인정된 바 있고 1972년에 체결된 「세균 및 독성무기 금지협정」에서도 준수분쟁 발생시 解明 및 協議節次는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1925년에 체

결된 「제네바議定書」와 조약 가맹국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함으로써 조약 준수에 대한 法的·政治的 拘束力이 없는 「헬싱키協約」에는 검증조항이 없다.

마. 檢證 基準

부분안보레짐의 검증규범도 하나의 固定된 規範이 있는 것은 아니며 檢證受容程度(혹은 검증에 사용되는 검사방법의 강도)와 조약위반을 評價하는 基準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의 檢證規範을 생각해 볼 수 있다.⁷²⁾

(1) 無檢證(No Verification)

무검증기준은 조약에 特定한 檢證基準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독자적인 諜報蒐集이나 제3국과의 協調를 통해서만 조약의 遵守 與否를 검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1925년 「제네바의정서」, 1963년 「부분핵실험금지조약」과 1975년 「헬싱키협약」을 들 수 있다.

(2) 象徴檢證(Symbolic Verification)

상징검증기준은 구체적인 檢證方法이 조약내에 明示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검증과는 달리 遵守紛爭 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72) 클레민슨(Cleminson)과 길만(Gilman)은 검증을 절대검증, 적절검증, 제한검증, 상징검증, 무검증으로 분류한 바 있다. F. R. Cleminson and E. Gilman, *A Conceptual Working Paper on Arms Control Verification* (Ottawa: Department of External Affairs, 1986), p. 5.

解明과 協議節次는 명시한다. 예로서 1972년에 체결된 「세균 및 독성무기 금지조약」을 들 수 있다.

(3) 適切檢證(Adequate Verification)

적절검증기준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危險과 戰略的 不均衡을 초래할 정도의 違反을 適時에 探知하여 충분히 對應할 수 있는 時間을 확보하기 위해 조약내에 具體的인 檢證條項을 둔다. 상대방의 主權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條約違反의 탐지가 가능한 人工 衛星의 개발은 適切檢證基準을 채택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적절 검증기준은 닉슨, 포드, 카터행정부가 채택한 검증기준으로서 「SALT I 조약」 및 「SALT II 조약」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4) 效果檢證(Effective Verification)

효과검증기준은 소규모의 條約違反도 중요하게 간주하며 기술적으로 浸透性이 강한 검증방법인 現場檢査를 허용한다. 레이건, 부시행정부의 검증기준으로서 1986년 「스톡홀름협약」, 1987년 「중거리핵미사일폐기협정」이나 1990년 「유럽채래식무기감축협정 I」, 1991년 「전략무기감축협정」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5) 完璧檢證(Perfect Verification)

완벽검증기준은 조약준수 여부에 대한 100% 검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예로는 1957년 「南極條約」을 들 수 있다. 남극조약은 남극 전지역에 대한 무조건적·무제한적 現場檢査와 空

中檢査를 허용하고 있다. 완벽검증기준이 남극조약에서 채택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남극이 조약 가맹국의 領土는 아니며 따라서 軍事·戰略的 價値도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第Ⅳ章 檢證의 歷史와 事例

本章에서는 檢證의 歷史와 美·蘇의 檢證政策 變化過程을 검토하고 12가지 軍備統制條約의 事例를 통해 檢證이 실제 조약에서 어떻게 制度化되어 왔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1. 檢證의 歷史

檢證의 역사는 시대적으로 당시의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크게 여섯 단계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첫번째 단계인 1899년에 개최된 헤이그 평화회의에서부터 오늘날의 신데탕트시대에 이르기까지 檢證의 歷史는 軍備統制條約의 歷史와 불가분의 關係속에서 그 흐름을 같이해 왔다. 군비통제조약의 전망이 어두울 때에는 檢證도 항상 부정적인 시각에서 문제거리로 대두되었으며 軍備統制條約 체결이 活性化되던 시기에는 檢證問題가 주요 爭點이 되지는 않았다.

가. 1899년 헤이그 平和會議

檢證에 대한 논의는 군비통제에 대한 논의만큼이나 오래된 것이지만 檢證問題가 國際舞臺에서 처음으로 公式 提起된 것은 1899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平和會議에서였다. 당시 러시아가 군비축소를 촉구했을 때, 英國 代表 아더(John Ardagh) 卿은 協約이 적절히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國際的 性

格的 檢査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¹⁾ 그러나 러시아는 각국의 輿論이나 議會가 국제협약의 遵守를 보장하는데 적절한 安全裝置라는 이유를 들어 영국의 제의를 거부하였다. 헤이그 평화회의에서는 군비축소에 대한 具體的인 合意가 없었으며 따라서 검증문제도 자세하게 논의되지 않았다.

나. 1920년대와 1930년대

제1차 세계대전후 실시되었던 唯一한 軍備統制 檢證은 「베르사이유 條約」(The Versailles Treaty)을 통해 패전국 독일의 武裝解除 與否를 확인하기 위한 聯合軍의 檢査였다. 종전후 연합군은 독일이 武裝解除條項을 성실히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聯合軍檢査委員會(Allied Control Commission)을 설치하였다. 약 400명이 연합군검사위원회에 근무하였지만 패전국 독일의 군비해제에 대한 검사는 獨逸의 武裝解除를 성공적으로 實現하지 못했다. 검사팀은 때로는 현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했으며 條約違反을 억제하기 위한 奇襲的인 檢査도 실시되지 못했다. 특히 다수의 독일국민들이 독일이 연합국으로부터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믿었으며 독일정부의 條約違反事實을 묵과하려 하였다. 연합군검사위원회는 1926년 독일 영토에 대한 검사를 중단하였다.²⁾

1) Philip Towle, *Arms Control and East-West Relation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3), p. 134.

2) *Ibid.*, p. 139.

獨逸은 이미 히틀러가 베르사이유 조약을 파기하기 오래전에 제3국 영토에서 條約을 違反해 왔었다.³⁾ 특히 소련과의 협력하에 독일은 蘇聯 領土內에서 化學武器를 실험하였고 戰術飛行學校를 운영하였으며 폭격기로 변조가능한 航空機도 생산하였다. 독일 해군은 또한 독일 기업들로 하여금 外國의 造船施設을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有事時에 대비하여 造船能力을 키웠다.

연합국의 검사시스템이 실패한 또 다른 이유는 서방측이 당시에 발견된 違反事項을 국제문제화하는 것은 新獨逸과의 關係改善에 나쁜 영향을 미치리라는 우려속에서 종종 의도적으로 違反을 묵과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의 東·西 대탕트時期에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였다. 소련이 1976년 7월에 자국 航母인 「키에프」(Kiev)號를 달더넬즈(Dardanelles)를 통해 항진하도록 시도한 것은 분명히 항공모함이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선박의 통과를 금지하는 1936년 「몽뜨뢰協約」(Montreux Convention)에는 위배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서방측의 反應은 미약했는데 그 이유는 1975년에 헬싱키協約 체결이후 소련과의 關係改善 展望이 밝은 가운데 서방측의 強硬反應으로 이와 같은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⁴⁾

1920년대 미국과 영국은 검증에 대해 主權侵害를 이유로 자국

3) Ibid., p. 140.

4) Harald von Riekhoff, ed., *Compliance and Confirmation* (Ottawa: Carleton University, 1985), p. 14.

영토가 國際檢査의 對象이 되는 것을 反對하는 立場을 보였다. 예를 들어 당시 한 국제회의에서 켈로그(Kellogg)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외부의 감독을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국기관이나 개인의 검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영국 대표 세실(Cecil)은 각국은 무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해야 한다고 말하였다.⁵⁾

반면에 1930년대에는 미국과 영국도 변화를 보여서 檢證이 軍備統制條約에 必要한 要素임을 인정하였다. 1932년 國際聯盟軍縮會議(The League Disarmament Conference)에서 미국의 후버(Hoover) 행정부는 國際監視機構를 받아 들일 수 있다고 천명하였다. 같은 해 7월 스티imson(Stimson) 미 국무장관도 美國 領土에 대한 檢査를 받아 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이 정책은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 행정부에 의해 정식 채택되었다.⁶⁾ 영국 정부도 1932년 7월 條約違反에 대한 告發이 있는 경우에는 檢査를 許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비통제에 대한 대부분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 기간중에 단 하나의 중요한 軍備統制 業績이 있다면 바로 1922년 2월 6일에 체결된 「워싱턴 海軍條約」(The Washington Naval Treaty)일 것이다. 그러나 이 조약에는 檢證에 관한 條項이 없었

5) R. Burns, “Origins of the United States’ Inspection Policy,” *Disarmament and Arms Control*, p. 159; Towle, *Arms Control and East-West Relations*, p. 134에서 인용.

6) Towle, *Arms Control and East-West Relations*, p. 135.

으며 단지 조약 참가국들의 信賴에 전적으로 의존할 뿐이었다. 「워싱턴 해군조약」 초기의 成功 事例는 검증이 군비통제조약에 불필요하다는 일부 주장의 구실이 되기도 하지만, 이후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조약 참가국들의 條約違反事實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서방측이 檢證指向的 態度를 갖도록 한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가 되었다.⁷⁾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확실한 檢證裝置를 제도화한 군비통제조약이 없었다. 그러나 1926~1931년간에 개최된 「軍縮準備會議」(The Preparatory Disarmament Commission)와 1932~1934년간에 개최된 「軍備縮小와 制限을 위한 世界會議」(The World Conference for the Reduction and Limitation of Armaments)는 일부 참가국들의 國際檢査問題에 대한 立場變化를 誘導하였으며 이 회의에서 논의된 많은 事項들은 제2차 세계대전후의 軍縮會談에서 재론되었다.⁸⁾

다. 1945~1962년: 軍備縮小 論議時代

제2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경험한 후 軍備縮小, 특히 「全般的이고 完全한 軍備縮小」(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GCD)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 당시에는 「司法的」 觀點

7) Riekhoff, ed., *Compliance and Confirmation*, p. 14.

8) Canadian Government, *Verification in All its Aspects: A Comprehensive Study on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Verification Pursuant to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0/152(O)* (Ottawa: Canadian Government, April 1986), p. 5.

에서 조약의 違反 與否를 다루었으며 아무리 사소한 조약위반도 조약에 威脅을 준다고 간주하였다.⁹⁾ 이 기간중에는 檢證에 대한 동·서간의 見解差가 매우 심했지만 이러한 양 진영간의 見解差異는 근본적으로 政治的인 것이었다. 서방측은 檢證이 군비통제 조약에 先行하기를 원했고 상대측의 軍事力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情報獲得을 군비통제조약 체결의 필수불가결한 前提條件으로 간주한 반면, 소련은 서방측의 檢證構想을 間諜行爲의 조짐으로 인식하였다. 사실 이 시기의 檢證協商은 냉각된 동·서관계에 否定的인 影響을 주었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소련이 서방측의 검증제의를 거부할수록 서방측은 蘇聯의 意圖를 더욱 疑心한 반면, 폐쇄된 사회에 서방측 검사팀을 입국시킬 경우 내부혼란을 우려한 소련은 서방측의 檢證要求를 體制顛覆企圖로 간주했기 때문이다.¹⁰⁾

이 시대에 군비통제와 관련된 두 가지 주요 提案은 「바루치計劃」(Baruch Plan)과 아이젠하워대통령의 「領空開放提案」(Open Skies Proposal)이다. 미국의 바루치(Bernard Baruch)에 의해 1946년 6월 14일 UN에 상정된 「바루치計劃」은 모든 核施設을 軍事的 目的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國際的인 統制(감시)와 所有下에 두기 위해 國際統制機構가 자유로운 檢査를 수행하고 違

9) James Shear, "Verifying Arms Agreements: Premises, Practices, and Future Problems," *Arms Control* (December 1982), p. 82.

10) Towle, *Arms Control and East-West Relations*, p. 142.

反時에 制裁를 가할 수 있다면 미국이 核技術 獨占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핵기술이 미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소련은 보유핵무기의 즉각적 폐기를 유보한 채 統制機構의 우선 설치를 주장하는 미국의 提議를 拒否하며 핵무기의 생산·사용 금지, 기존 핵무기의 폐기 등을 규정할 회담을 제의하였다.

1955년 7월 21일 제네바에서 열린 美·英·佛·蘇 4開國 頂上會談에서 아이젠하워대통령은 기습공격 가능성에 대비하여 早期警報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각국의 영토를 포괄적으로 空中檢査할 것을 포함하여 모든 군사시설물에 대한 완전한 靑寫眞을 상호 교환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領空開放提案」을 했지만 이 제안 역시 실현되지 못했다. 당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련의 奇襲攻擊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憂慮는 심각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반면에 미국은 소련이 보유한 核武器를 공격하는 데 필요한 軍事力을 갖고 있었지만 목표물의 位置에 대한 정확한 資料가 없었다.¹¹⁾ 당시 소련의 軍事力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劣勢였다는 점과 영공개방에 의한 情報蒐集의 여과 등을 고려해 볼 때 소련의 거부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¹²⁾ 이 회담에서 소련수상 불가닌(Nikolai Bulganin)은 핵무기의 最初使用을 금지할 것

11) Allan Krass, "The Soviet View of Verification," in William Potter, ed., *Verification and Arms Control* (Lexington: Lexington Books, 1985), p. 41.

12) Ibid.

과 위험한 군사활동의 早期警報를 위해 항구, 철도 교차로 및 공항에 統制所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¹³⁾

라. 1963~1979년: 데탕트時代

1960년대의 軍備統制協商은 「전반적이고·완전한 군비축소」라는 포괄적인 제안보다는 검사문제가 덜 심각한 보다 범위가 縮小된 提案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범위가 제한된 個別的인 軍備統制條約에 대한 檢證이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이 기간중에는 검증문제가 「戰略的」 觀點에서 “어느 정도의 探知能力이면 군사적으로 중요한 條約違反을 막을 수 있을까”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¹⁴⁾ 전략적 관점이 수용될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人工衛星을 통한 革新的인 遠距離 偵察技術의 발전이었다.

소련은 1957년 10월 최초로 人工衛星 스푸트닉(Sputnik)號를 발사한 후 타국이 소련의 領土를 人工衛星으로 偵察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1960년 파리 頂上會談에서 흐루시초프는 어느 국가라도 원한다면 人工衛星으로 자유로이 소련을 사진정찰할 수 있다고 인정한 바 있으며 1963년에는 UN 決議案을 통해 國家의

13) Stanley Sloan, *Conventional Arms Control and Europe's Future*, Headline Series No. 287 (Washington, D.C.: Foreign Policy Association, 1988), p. 12.

14) James Schear, “Verifying Arms Agreements,” p. 81.

안보가 우주에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原則을 수용하였다.¹⁵⁾ 인공위성이 개발되기 전에 미국은 U-2 사진정찰기를 이용했지만 검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¹⁶⁾ 혁신적인 偵察衛星이 사용되고 검증문제가 司法的 觀點보다 완화된 戰略的 觀點에 입각하여 다루어짐으로써 여러 軍備統制條約이 체결되고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었다. 또한 인공위성과 같은 원거리 탐지장치는 목표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서 작동되기 때문에 조약 가맹국의 領土, 領空 및 領海를 침범하지 않음으로써 主權侵害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는 점에서 군비통제조약의 檢證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후 최초의 중요한 핵관련 조약인 「部分核實驗禁止條約」(The Limited Test Ban Treaty: LTBT)이 1963년에 체결된 것을 시발로 많은 협정들이 이 기간중에 체결되었다.¹⁷⁾ LTBT 체결시 명확히 정의된 檢證基準이 채택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당시 논의된 내용으로부터 美 行政府의 立場을 추론할 수

15) Mark Lowenthal and Joel Wit, "The Politics of Verification," in Potter, ed., *Verification and Arms Control*, p. 155;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Verification Technologies: Cooperative Aerial Surveillance in International Agreements* (Washington, D.C.: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1991), p. 51.

16) Luther Carter, "Strategic Weapons: Verification Keeps," *Science* (March 1975), p. 936.

17) 「LTBT」의 기원은 1950년대 후반에 시작된 전면핵실험금지협상이지만 美·蘇 양국은 現場檢査 回數(소련은 연 3회, 미국은 최소한 연 7회)에 합의하지 못함으로써 지하핵실험금지 規制對象에서 제외되었다.

있다.¹⁸⁾ 당시 테일러(Maxwell Taylor) 합참의장은 소련의 條約違反可能性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탐지위험, 우주실험의 비용과 어려움 등이 秘密實驗에 커다란 제약이 될 것이다. 지상, 해저에서의 비밀실험도 그 크기에 따라 우리의 첩보수집수단이나 원자탐지시스템에 탐지될 확률이 크다. 더욱이 합참이 생각하기로는 적절한 安全裝置만 유지된다면 소련이 비밀실험을 통해 성취하는 것은 앞으로의 전반적인 힘의 均衡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¹⁹⁾

적절한 안전장치란 LTBT 체결이 가져올 虛僞安保意識과 眩惑效果를 막기 위해 미 합참이 LTBT를 지지하는 前提條件으로 제시한 다음 네 가지 사항을 말한다: (1) 地下核實驗 계속 실시, (2) 國立研究所 유지, (3) 필요한 경우 大氣核實驗을 즉각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 (4) 검증을 위해 NTM의 지속적 개발.²⁰⁾

이 시기에 체결된 주요 조약은 (1) 「핫라인 諒解覺書」(The Hot-Line MOU, 1963), (2) 「宇宙空間에 관한 條約」(The Outer

18) 「LTBT」의 비준동의 여부를 심의하며 당시 타워(John Tower) 상원의원은 現場檢査를 요구했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LTBT의 제한된 특성과 당시 탐지기술의 우수성을 들어 현장검사는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Michael Krepon, "The Political Dynamics of Verification and Compliance Debates," in Potter, ed., *Verification and Arms Control*, p. 141. 즉 LTBT는 미국의 감시능력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른 政治·軍事的 要素들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다.

19) Ibid., p. 138.

20) Ivo Daalder, "The Limited Test Ban Treaty," in A. Carnesale and R. Haass, eds., *Superpower Arms Control: Setting the Record Straight* (Cambridge, Mass.: Ballinger Publishing Company), p. 28.

Space Treaty, 1967), (3) 「중남미 非核地帶化條約」(The Treaty of Tlatelolco, 1967), (4) 「核武器擴散禁止條約」(The Non-proliferation Treaty: NPT, 1968), (5) 「海底非核地帶化條約」(The Seabed Treaty, 1971), (6) 「細菌 및 毒性武器 禁止條約」(The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Convention: BTWC, 1972),²¹⁾ (7) 「戰略武器制限協定 I」(The SALT I Treaty, 1972), (8) 「地下核實驗禁止條約」(The Threshold Test Ban Treaty: TTBT, 1974), (9) 「헬싱키協約」(The Helsinki Final Act, 1975), (10) 「平和的 地下核爆發에 관한 條約」(The Peaceful Nuclear Explosion Treaty: PNET, 1976), (11) 「環境變化技術의 軍事的 使用 禁止條約」(The Environmental Modification Convention: ENMOD, 1977), (12) 「戰略武器制限協定 II」(The SALT II Treaty, 1979) 등이다.

마. 1980~1986년: 緊張時代

미·소관계가 競爭과 敵對感으로 특징지어지고 있는 緊張時代에는 단 하나의 구조적 軍備統制條約도 체결되지 못했다. 檢證問題도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졌으며 검증이 군비통제조약의 체결

21) 「BTWC」는 세균무기의 軍事的 價値를 과소평가한 미국이 조약체결전 이들 무기의 보유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특수한 경우이다. 당시 닉슨대통령에게는 BTWC의 遵守檢證보다는 미국이 이미 포기한 細菌武器를 소련도 公式的으로 拋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고 보여진다. Krepon, "The Political Dynamics of Verification and Compliance Debates," p. 137.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요소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레이건 행정부는 닉슨, 포드 및 카터 행정부에서 채택했던 「適切한 檢證」(adequate verification)과는 달리 「效果的 檢證」(effective verification)이라는 보다 嚴格한 檢證基準을 채택하여 강력한 검증을 요구함으로써 軍備統制協商 진전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이 기간중에 미국은 SALT I ABM 조약을 재해석하여 「戰略防衛構想」(Strategic Defense Initiative: SDI)을 추진하였으며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ABM 연구도 계속하였다. 또한 1986년 5월에는 SALT II 조약에 대한 公約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6개월후인 1986년 11월 28일 크루즈미사일 장착 B-52 폭격기를 131대째 배치함으로써 다탄두 장착 미사일이나 폭격기의 총수를 1,320기로 제한하는 SALT II 조약을 스스로 파기하였다.

그러나 1986년 9월 19일 체결된 「스톡홀름協約」(The Stockholm Document)은 미·소관계가 긴장시대에서 新데탕트時代로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國際安保協力時代를 알리는 신호였다.²²⁾ 유럽에서의 信賴安保構築方案을 합의한 스톡홀름협약은 동·서 양 진영의 條約締結 意志와 검증에 대한 소련의 轉向의인

22) 1986년을 신데탕트시대의 元年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미국의 SALT II 조약 위반 사실과 더불어 1986년에 발생한 일련의 外交的 紛爭에 기인한다. 미국은 3월에 소련의 핵실험금지 제의를 거부하였으며 전함 2척이 흑해의 소련영해를 침범하였고 4월에는 소련의 友邦인 리비아를 공습하여 소련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1986년 美·蘇間 外交紛爭은 8월 소련 물리학자 자카로프(Gennadi Zakharov)가 간첩혐의로 FBI에 체포된 데 이어 9월초 미국 *US News and World Report*의 기자인 대너로프(Nicholas Daniloff)가 같은 혐의로 모스크바에서 체포됨으로써 절정에 이른다.

態度變更으로 검증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체결될 수 있었다. 「스톡홀름협약」은 헬싱키협약의 軍事的 信賴構築方案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軍事的으로 그 의미가 크며 政治的으로도 拘束力이 있고 적절한 檢證方法을 포함하고 있다. 스톡홀름협약은 큰 위반없이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²³⁾

바. 1987년~현재: 新데탕트時代

미·소 양국은 상호불신과 긴장고조 분위기가 팽배했던 관계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와 같은 關係進展은 그 동안 정치·외교적으로 많은 변화를 추구해 온 소련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신데탕트시대의 도래를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中距離核미사일廢棄條約」의 체결이다. 1981년 11월 레이건대통령이 464基의 지상발사 크루즈미사일과 108基의 퍼싱 II (Pershing II) 미사일의 유럽배치계획을 철회하는 대신 소련이 유럽에 배치한 SS-4, SS-5, SS-20 중거리 미사일의 철수를 제의함으로써 INF 협상은 시작되었다.²⁴⁾ 1986년 10월에 개최된 레카빅(Reykjavik) 頂上會談에서 양국은 유럽에 중장거리 INF 배치금지과 각각 100基의 중장거리 미사일 보

23) 스톡홀름협약의 체결배경과 이제까지의 준수기록에 대해서는 전성훈, “유럽의 신뢰구축방안: 경험과 그 의미,”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한반도 군비통제: 제2집」(서울: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pp. 60~63.

24) 흔히 「zero-option」 proposal이라고 한다.

유에 합의하였고 檢證問題에도 原則的인 合意를 보았다.²⁵⁾ 1987년 6월 레이건은 중단거리 미사일(미국의 Pershing IA; 소련의 SS-12, SS-23)의 폐기도 제안하였고²⁶⁾ 소련이 이를 받아 들임으로써 1987년 12월 8일에 레이건과 고르바초프간의 워싱턴 頂上會談에서 「INF 條約」이 조인되었다. 同 조약이 체결된 背景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²⁷⁾

첫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蘇聯의 變化에서 찾을 수 있다. 고르바초프가 1985년에 집권한 이후 1987년까지 군축에 관한 30여개의 獨自的인 提案을 해 왔다는 사실에서 군축에 대한 소련의 積極的인 意志를 읽을 수 있다.²⁸⁾ 고르바초프의 軍縮提案은 그의 開放과 改革政策의 일환으로서 최초에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그 意圖에 疑懼心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과연 그가 진실성있는 인물인가에 대한 의문이 그가 표방하고 있는 改革과 開放政策이 소련내 강경보수 세력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成功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로 바뀌게 되었다.

둘째, 미국도 軍備統制에 대해 점차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25) *Newsweek*, October 27, 1986, p. 19.

26) 흔히 「double-zero option」 proposal이라고 한다.

27) Seong W. Cheon and Niall M. Fraser, "Arms Control Verification: An Introduction and Literature Survey," *Arms Control*, Vol. 9, No. 1 (May 1988), pp. 44~45.

28) Jonathan Dean, "Gorbachev's Arms Control Moves,"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June 1987), p. 34.

점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두 가지 要因을 들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레이건이 고르바초프와의 頂上會談 개최와 軍縮協定을 자신의 재임중 커다란 業績이 될 것으로 간주했다는 사실이다.²⁹⁾ 즉 군축협정이 최고 의사결정자의 政治的 意圖에 부합하는 案件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요인은 미국도 國內問題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만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막대한 豫算赤字로 인해 1980년대 초와 같은 거대한 軍事力 增強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었다. 즉 소련이 군비경쟁을 하지 않으려는 때에 國防分野에서도 豫算節減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미국내의 일반적인 분위기였다.³⁰⁾ 결론적으로 레이건행정부는 임기말에 소련에 대한 軍事的 優勢를 강조하기보다는 條約과 協商에 의해 미국의 對蘇 地位를 증진시키려는 데 더 큰 관심을 두었던 것이다.

레이건의 뒤를 이은 부시행정부도 檢證을 軍縮協商의 주요 부분으로 간주했으며 보다 확실하고 엄격한 檢證을 요구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그대로 따라왔다. 부시대통령 취임이후 체결된 「유럽在來式武器減縮條約 I」(CFE I Treaty)과 「戰略武器減縮條約」(START Treaty)에는 「INF 條約」보다 더욱 강력한 檢證시스템이 制度化되어 있다.

「START 조약」은 총 28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 말해 주듯이

29) *US News and World Report*, September 22, 1986.

30) A. Horelick, "Detente by any other nam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October 1988), p. 6.

기존 조약중 가장 복잡한 조약이므로 조약의 實行과 檢證 역시 가장 어렵고 복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1988년 1월 미국의 上院 聽聞會 證言에서 당시 국무장관 술츠(Shultz)는 「INF 條約」을 가리켜 “군비통제 역사상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檢證體系를 갖추고 있다”고 했지만 같은 해 2월 소련 외무장관 셰바르드나제(Shevardnadze)와의 회담에서 「START 조약」과 비교할 때 「INF 조약」은 “애들 장난”이라고 칭하였다는 사실³¹⁾에서도 「START 조약」 檢證體制의 複雜性을 짐작할 수 있다. 「START 조약」은 미국측 회담대표인 버트(Richard Burt)의 말대로 「검증에 관한 한 革命的인 條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³²⁾

한 가지 부연할 것은 동·서간의 緊張緩和와 和解 분위기에 편승해서 최근에 「領空開放提案」이 다시 논의되어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1989년 5월 12일 텍사스 A&M 대학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영공개방에 관한 착상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였으며 같은 해 6월 22일 國家安保指針書(National Security Directive) 제15호에서 구체적인 領空開放案을 입안하도록 지시하였다.³³⁾ 1989년 9월 22~23일 와이오밍州 잭슨

31) VERTIC, *Watching START Take Off: The Verification of a Complex Arms Control Treaty* (London: VERTIC, July 1991), p. 8.

32) Arms Control Association “Richard Burt on the state of START,” *Arms Control Today*, Vol. 20, No. 1 (February 1990), p. 8.

33) 美 국방부와 정보관계자들은 충분한 事前通報가 이루어진다면 WTO의 미국 영토에 대한 공중촬영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허용하는 것은 미국의 민감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감수할 만한 安保危險이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Jonathan

홀(Jackson Hole, Wyoming)에서 개최된 美·蘇 外務長官 會談에서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은 몇 가지 但書下에 領空開放提議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고르바초프의 서신을 베이커 국무장관에게 전달하였다.

1990년 2월 12~13일 오타와에서 열린 NATO와 WTO 外務長官 會談에서 領空開放에 관한 協商이 시작되었는데³⁴⁾ 이틀간에 걸친 회의끝에 23개국의 외무장관들은 영공개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共同宣言文을 발표하였다: (1) 가능한 最大의 開放과 偵察飛行에 대한 最小限의 制限을 보장, (2) 정찰비행은 연간 割當量에 준해서 실시, (3) 영공개방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모든 여건하에서 작동가능한 非武裝 航空機와 探知裝備 사용, (4) 유럽의 非同盟 中立國의 참여 허용, (5) 장래에 다른 영역에서의 開放 增大에도 기여.³⁵⁾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오타와 會談(외무장관 회담 직후 2주간의 실무진 협상도 포함)은 (1) 공중정찰 飛行 回數, (2) 정찰대상 領域, (3) 사용 飛行機 종류, (4) 사용 探知機 종류, (5)

Tucker, "Back to the Future: the Open Skies Talks," *Amrs Control Today*, Vol. 20, No. 8 (October 1990), p. 21.

34) 그러나 이 회담의 주요 議題는 유럽의 兵力 上限線 설정과 獨逸統一에 대한 중요한 合意였다. 오타와 회담 개최전인 1월 6일 캐나다의 C-130 수송기가 헝가리를 시범적으로 空中偵察하였다(단 탐지장비는 사용되지 않았다). 헝가리는 캐나다 외무부의 초청으로 1992년 1월 15~16일 캐나다에 대한 領空偵察을 실시하였다. 이 때는 Synthetic Aperture Radar(SAR)와 Low Light Level TV (LLLTV), Fixed Optical Camera 등의 장비가 사용되었다.

35) Tucker, "Back to the Future," p. 22.

수집된 資料의 共有問題 등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제2차 회담(1990. 4. 23~5. 14)에서도 領空開放의 浸透程度(intrusiveness)를 제한하려는 소련과 이에 반대하는 미국측 주장이 상충되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NATO측은 그간 노정된 이견의 폭을 좁힌 새로운 제안을 1991년 4월 30일 소련측에 전달하였다. 그 후 비엔나에서 계속된 협상을 통해 1992년 3월 24일 헬싱키 CSCE 頂上會談에서 領空開放協定이 체결되었다.³⁶⁾ 영공정찰에는 同一 종류의 探知機가 사용되며 사진촬영시 2개의 테이프를 사용하고 1개는 受檢國이 보관한다. 또한 다른 국가들도 촬영테이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자료의 공유를 보장하고 있다.

36) NATO 16개국과 헝가리, 불가리아, 체코, 루마니아, 폴란드, 독립국가연합에서 러시아, 벨로루시, 그루지아, 우크라이나 등 25개국이 가입하였다. 발효후 6개월내에 기타 CSCE 회원국도 가입할 수 있으며 이후 세계의 어느 나라도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VERTIC, *Trusty and Verify*, No. 26 (February/March, 1992), p. 2.

2. 美·蘇의 檢證政策

本節에서는 군비통제의 두 주역인 미국과 소련의 檢證政策 變化過程을 고찰하고 檢證에 대한 양국의 立場差異가 해소되어 온 過程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 蘇聯의 檢證政策

(1) 1920년대~1930년대

이 시기에 소련은 軍備縮小優先을 前提로 現場檢査 실시 등 구체적인 檢證方法을 제시하였다. 1928년 2월 15일 「군비축소회의 준비위원회 1차회의」(The First Session of the Preparatory Commission for the General Conference on Disarmament)에서 「軍備縮小協約 草案」(The Draft Convention on Immediate, Complete, and General Disarmament)을 발표하면서 소련은 전반적이고 완전한 軍備解除를 위한 檢證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基本原則을 제시하였다: (1) 相互性, (2) 國民大衆의 참여, (3) 公開性, (4) 國際檢證機構에서 결정된 事項의 義務化. 또한 소련은 國際常設檢證委員會(International Permanent Verification Commission: IPVC)의 설치를 제의하면서 검증 뿐만 아니라 군비해제후 조약 참가국의 安保를 보장하는 기능까지 국제검증위원회가 담당할 것을 제안하였다.³⁷⁾ 이 제안이 거부되자 소련

37) Mikhail Kokeyev and Andrei Androsof, *Verification: the Soviet Stance, Its Past, Present and Future* (New York: United Nations, 1990), p. 2.

은 곧(1928.3.23) 무기보유수가 많은 강대국이 더 많이 감축하는 비율로 각종 무기의 部分的 減縮을 제의하며 조약을 違反했다는 구체적 證據가 있는 疑惑事件에 대해 現場檢査를 실시할 것을 최초로 제의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소련의 檢證提議에 대해 강한 拒否反應을 보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당시 미 국무장관이 協商指針을 통해 미국이 외국기관이나 개인에 의한 검사나 관측을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³⁸⁾ 한편 1938년 2월 15일 소련이 국제연맹에 제출한 「全面的 4段階 軍備縮小協約草案」(A Draft Agreement for an Immediate, Total and Global Disarmament in Four Stages)에는 3개월내에 國際檢證機構를 설치할 것을 비롯하여 13개항의 檢證關聯 條項이 포함되어 있다.³⁹⁾

(2) 1940년대~1950년대

1940년대와 1950년대에는 조약체결에 앞서 檢證機構를 우선 설치하자는 미국의 「先 검증합의, 後 군비축소합의」 立場과 군비축소조약에 먼저 합의한 후 검증기구를 설치하자는 소련의 「先 군비축소합의, 後 검증합의」 立場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기간이었다. 소련은 검증이 군비축소와는 무관한 것이 되지 않기를 원했으며 특히 군축이 실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검증을 빙자하여 자국의 軍事力에 관한 諜報를 수집할 가능성에 대해

38) Ibid., p. 3; Papers Relating to th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26, Vol. I (Washington, 1941), p. 88.

39) Manfred Efinger, "The Verification Policy of the Soviet Union," *AUSSENPOLITIK*, Vol. IV (1989), p. 336.

크게 우려하였다.⁴⁰⁾ 소련은 1946년 6월 미국이 「바루치計劃」을 통해 자국의 핵무기는 그대로 둔 채 소련의 핵開發만을 억제함으로써 對蘇核優位를 차지하려 한다고 보고 이를 거부하고 대신 「그로미코計劃」(Gromyko Plan)을 발표하여 검증기구에 대한 언급없이 3개월내에 核武器의 破壞 및 生産·使用 禁止를 실현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로미코계획은 「軍備縮小優先接近」(disarmament first approach)으로, 바루치계획은 「檢査優先接近」(inspection first approach)으로 볼 수 있다.⁴¹⁾

소련은 1955년 5월 10일 2단계 軍備縮小案을 제의하면서 제1단계 軍備縮小期에 UN 총회 산하에 國際檢證機構를 설치하고 다음과 같은 機能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였다⁴²⁾: (1) 相互性의 原則에 입각해서 相關당사국의 주요 항만, 철도교차로, 주요 도로 및 공항에 監視所 설치, (2) 軍비축소와 相關된 情報 요청, (3) 國防豫算관련 文書의 무제한 열람.

소련이 軍비축소 제1단계에서 檢證機構를 設置하자고 提議한 것은 미·소간 立場差異가 크게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미국이 전면적 軍備縮小에서 개별적 軍備統制條約 체결로 정책을 선회함으로써⁴³⁾ 소련의 검증제의를 결실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1955년 7월 체네바에서 개최된 4強(美·蘇·英·佛) 頂上會談에

40) Kokeyev and Androsov, *Verification*, p. 7.

41) Efinger, "The Verification Policy of the Soviet Union," p. 336.

42) *Ibid.*, pp. 336~337.

43) *Ibid.*, p. 337.

서 소련은 미국의 領空開放提案을 거부하였다. 소련의 拒否理由는 미국이 核優位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공개방협정이 소련내 軍事·戰略的 目標物에 대한 精確한 情報를 제공함으로써 초래하게 될 戰略的 損失과 미국의 先制攻擊 可能性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후 1950년대 후반까지 검증에 대한 미·소간의 見解差異는 軍비해제문제의 接近方法에 대한 差異, 더 나아가서는 동·서간의 對決狀態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후 冷戰的 國際秩序는 양국의 見解差異를 심화시켰고 상대방의 제안을 무시하고 자기측의 제안만을 미화함으로써 쌍방 提案에 대한 심도있는 分析과 건설적인 妥協案 마련에 실패하였다.⁴⁴⁾

東·西緊張과 美·蘇對決이라는 틀 속에서 모든 문제를 볼 때 상대방의 입장을 공정하게 받아 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쌍방이 서로를 不信하고 宣傳的 次元에서 競爭하게 될 때 문제는 더욱 악화된다. 어느 일방이 자기의 제의를 고집할수록 상대방은 이를 더욱 거부하게 된다. 바로 이 점이 蘇聯은 軍備解除를 우선 추진한 후 檢證을 실시하자는 입장인 반면, 소련의 條約違反을 의심한 美國은 안전하게 먼저 檢證機構가 조약의 遵守與否를 검증할 수 있다고 결정한 후에 해당 의무를 실행하자는 입장을 취했던 상황을 설명해 준다.⁴⁵⁾

44) Kokeyev and Androsov, *Verification*, p. 7. 이러한 意見差異에 대해 크래스(Krass)는 서로 다른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經驗의 差異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분석하였다. Allan Krass, *How Much Is Enough?* (Stockholm: SIPRI, 1985), p. 116.

45) Kokeyev and Androsov, *Verification*, p. 8.

(3) 1960년대~고르바초프 등장이전

이 시기에 소련은 檢證에 대해 消極的이었으며 특히 浸透性이 강한 現場檢査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最小限의 檢證만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1950년대 후반부터 軍備解除에 대한 論議가 기습공격 방지, 핵실험금지, 화학무기폐기협상 등으로 細分化되면서 각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檢證에 대한 妥協點이 모색되었다. 1958년에 개최된 「제네바 奇襲攻擊會談」(The Geneva Surprise Attack Conference)에서 소련은 東·西獨 境界線을 중심으로 800km내에 88개소의 地上監視所를 설치하고 空中檢査를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다.⁴⁶⁾ 전면핵실험금지협상에서는 미·소 양국이 모두 거부권없는 現場檢査의 必要性에는 공감했지만 檢査回數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1962년 12월 케네디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흐루시초프는 연간 2~3회의 現場檢査를 허용할 意思가 있다고 표명했으나 미국은 연간 7회 이상을 고집하였다.⁴⁷⁾ 그러나 미·소 양국은 이듬해 지하핵실험이 허용되는 「部分核實驗禁止條約」을 체결함으로써 現場檢査없이 檢證이 가능하게 되었다.

군비축소와 검증의 先後問題는 1961년 9월 22일 합의된 「맥클로이-조린 宣言」(the McCloy-Zorin Declaration)에서 군축 시작과 동시에 검증을 병행해서 실시하기로 결정함으로써 原則的인

46) James Macintosh, *Confidence (and Security) Building Measures in the Arms Control Process: a Canadian Perspective* (Toronto: York University, 1985), p. 20.

47) Daadler, "The Limited Test Ban Treaty," pp. 12~13.

합의를 보게되었다.⁴⁸⁾ 소련의 변화된 입장은 1962년 3월 15일 「18個國 軍縮會議」(The Eighteen Nation Committee on Disarmament: ENDC)에 제출된 「엄격한 國際統制下의 전반적이고 완전한 軍備縮小條約 草案」(A Draft Treaty on 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under Strict International Control)에 잘 반영되어 있다. 당시 소련 외무장관은 서방측이 소련의 軍縮案을 수락할 경우 소련은 서방측이 제시한 어떠한 檢證方案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⁴⁹⁾ 그러나 소련은 軍備縮小에 대한 엄격한 國際的 檢證은 지지하지만 이것이 軍備에 대한 檢證으로 擴大되는 것은 국제적으로 용인된 스파이활동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반대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⁵⁰⁾

1963년 「部分核實驗禁止條約」(LTBT)의 체결을 시발로 고르바초프가 등장해서 보다 積極的인 檢證政策을 제시하기 전까지 소련은 NTM에 의한 검증에 의존하였다. 「LTBT」에는 구체적인 檢證條項은 없으나 미·소 양국은 NTM 사용을 묵시적으로 인정하

48) Andrezej Karkoszka, *Strategic Disarmament, Verification, and National Security* (Stockholm: SIPRI, 1977), p. 75. 「맥클로이-조린 선언」의 原名은 「군축협상 원칙에 대한 美·蘇 共同聲明書」(The US-Soviet Joint Statement of Agreed Principles on Disarmament Negotiations)인데 일반적이고 완전한 軍備解除를 한 가지 목적으로 설정하고 UN의 틀내에 國際軍縮機構(International Disarmament Organization: IDO)를 설치할 것도 언급하고 있다. 이 原則에 따르면, IDO의 검사 요원들은 효과적인 검증에 필요하다면 모든 장소에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受檢國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Alan Sherr, *The Other Side of Arms Control: Soviet Objectives in the Gorbachev Era* (Boston: UNWIN HYMAN, 1988), p. 273, note 10.

49) ENDC/PV2. Kokeyev and Androsov, *Verification*, p. 7에서 인용.

50) Ellis Morris, "Soviet Positions on Verification," in Riekhoff, ed., *Compliance and Confirmation*, pp. 28~29.

였으며 「SALT I 조약」에서 비로소 NTM 사용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다. 미·소는 또한 「SALT I 조약」에서 NTM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基礎的인 協力檢證方案에도 합의하였다. 그러나 檢證目的의 正찰과 軍事情報 蒐集目的의 正찰에는 차이가 있다는 소련의 계속된 主張은 NTM에 대한 소련의 지지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⁵¹⁾

고르바초프 등장 이전까지 소련이 제의한 檢證提案 검토를 통해 소련도 분명히 검증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부의 주장과 같이⁵²⁾ 미·소간에 檢證에 대한 接近態度는 정반대이며 소련은 검증에 전혀 흥미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⁵³⁾ 그러나 미·소간에 軍備統制 檢證을 接近하는 方法에 있어서 상당한 概念的·戰術的 差異를 보여준 것은 사실이다.⁵⁴⁾ 냉전체제에 의한 구조적 긴장관계와 다분히 이상적이었던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비축소」에 대한 논의는 검증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대신에 宣傳的·抽象的 論議만을 야기시

51) Allan Krass, "The Soviet View of Verification," p. 47.

52) 슬로콴(Slocombe)은 "모든 측면에서 볼 때 檢證은 엄격히 미국의 關心事項이다"라고 주장했으며 페인(Payne)은 "檢證은 주로 美國의 問題이며 소련 지도층의 커다란 關心事項은 아닐 것이다"라고 결론지었다. W. Slocombe, "Verification and Negotiation," *The Nuclear Weapons Freeze and Arms Control, Proceedings of a Symposium held at the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Harvard University, Jan. 13~15, 1983*, p. 87; S. Payne, *The Soviet Union and SALT* (Cambridge, Mass: MIT Press, 1980), p. 81; Krass, "The Soviet View of Verification," p. 37에서 인용.

53) 사실 미국에서 검증에 대한 소련의 입장이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Krass, "The Soviet View of Verification," p. 58.

54) Philip Towle, "Arms Control in East-West Relations: The Problem of Verification--Summary," in Riekhoff, ed., *Compliance and Confirmation*, p. 22.

켰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 전면핵실험금지협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소간에는 검증에 대한 意見接近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동·서 데탕트시기에 접어들면서 미·소는 NTM이 주요 檢證手段이라는 데 合意하고 NTM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協力檢證方案을 개발하였다. 사실 NTM은 간첩행위의 가능성과 의혹을 최소화하고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檢證 딜레마」를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⁵⁵⁾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두 나라간의 關係惡化, 레이건행정부의 強力한 檢證要求, 기존 조약의 준수 여부에 대한 不信 등 일련의 요인들은 검증에 대한 양국간의 합의를 다시 와해시켰다.

그러면 이러한 檢證에 대한 상이한 差異點은 어디에서 오는가? 다음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⁵⁶⁾ 첫째, 미·소 양국의 서로 다른 體制에서 오는 차이이다. 「秘密性」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閉鎖體制인 蘇聯은 민감한 軍事情報交換이 가져올 副作用을 우려하여 미국과 같은 開放社會보다는 상대적으로 검증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즉 검증활동이 가져오게 될 透明度效果와 開放效果를 소련이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 점은 현재의 북한 상황과도 매우 유사한데 투명도를 가져오는 信賴構築方案은 북한에게 「致命的」(devastating)일 것이라

55) Ibid.

56) Ibid., pp. 22~23.

는 관점도 있다.⁵⁷⁾ 또한 개방된 체제에서는 情報 公開 및 交流가 활발하기 때문에 폐쇄체제의 開放社會에 대한 情報蒐集이 훨씬 용이함으로써 폐쇄체제가 검증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일 수 있다.

둘째, 技術的인 要因 역시 소련으로 하여금 검증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 소련의 NTM은 미국보다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技術的인 劣勢를 만회할 때까지 소련은 遵守 與否를 확인하기 위해 NTM에만 依存해야 하는 軍비통제조약 체결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다.

셋째, 소련은 대부분의 核戰力이 劣勢에 놓인 상태에서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소련이 아이젠하워의 「領空開放提案」을 거부한 커다란 이유인 것이다. 情報交換과 諜報蒐集의 許容은 소련의 戰略的 劣勢를 전면적으로 노출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이 先制攻擊을 가하는 데 필요한 情報를 제공해 주게 될 것이라는 것이 소련의 우려였다. 따라서 戰略的 安定을 유지하고 奇襲攻擊의 위험을 막겠다는 아이젠하워의 의도는 이와는 정반대로 「侵略을 위한 戰略」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고르바초프 집권이전까지의 軍備統制 檢證에 대한 소련의 立場을 가장 포괄적으로 정확히 나타내주는 原則은 1981년 3월 31일 제네바 UN 軍縮會議(UN Committee on Disarmament) 제119차 회의에서 소련대표 이스래린(Victor Issraelyan)에 의해 밝혀

57) 외교안보연구원 주최 세미나(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What Lessons Can We Learn From European Experiences?)에서 제임스 굿비(James Goodby)와의 의견교환 (1990년 10월).

진 바 있다. 이스라엘은 군비통제조약에 장애가 되어온 檢證問題에 대한 서방측의 3가지 接近方法을 (1) 不信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2) 검증문제가 條約의 範圍를 결정하며, (3) 軍縮없이 또는 軍縮以前에 檢證을 강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는 檢證問題가 조약체결의 障礙物이 되었으며 人爲的으로 造作되고 있기 때문에 조약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스라엘은 검증문제를 우선시하지 않고 지나치게 자세한 검증도 반대하며 조약에 반드시 필요한 정도의 合理的인 檢證만을 지지한다는 소련의 입장을 다음의 7개 原則을 통해 밝혔다.

(가) 檢證實施로 인한 主權 侵害 및 內定干涉 許容 절대 불가

소련이 국제적인 검증보다는 自體的인 檢證을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련은 군비통제협상에서 主權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해 왔다. 예를 들어 흐루시초프는 U-2기 격추사건 이후 1960년 5월에 개최된 파리 頂上會談에서 소련영토에 대한 航空機의 偵察을 반대한 반면, 衛星偵察은 허용하였다(소련은 스푸트닉 위성을 1957년에 발사함). 그러나 미국의 위성개발이 임박해지자 소련은 인공위성에 의한 단순한 비행은 허용되나 偵察目的의 飛行은 禁止된다고 주장하며 主權侵害問題를 제기하였다.⁵⁸⁾ 이러한 소련의 입장은 1963년에 체결된 「부분핵실험금지조

58) John Gaddis, "The Evolution of a Reconnaissance Satellite Regime," in A. George, P. Farley and A. Dallin, eds., *U.S.-Soviet Security Cooperation: Achievements, Failures, Less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p. 356.

약」에서 NTM의 사용이 묵시적으로 인정됨으로써 다소 완화되었다고 보여진다. 물론 미국도 국가의 주권수호라는 기본원칙은 유지했지만 奇襲的 現場檢査와 같은 강력한 檢査方法이 검증을 위해 필요하고 조약에서 규정된다면 받아 들일 수 있다는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하였다.

(나) 정확하고 분명한 軍備統制條約을 前提로 한 檢證

무엇을 줄이거나 제한할 것인가에 대한, 즉 軍備統制에 대한 具體的인 內容의 합의없이 검증방법을 먼저 논의할 수는 없다. 「맥클로이-조린 宣言」 이후 미·소간에는 군비통제와 검증은 같이 실시되는 「並列過程」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에 이견이 없었지만 실제 군비통제협상에서 검증과 군비통제의 實施時期와 무엇에 重點을 두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종종 의견차이가 노출되었다. 예를 들어 MBFR 협상에서 NATO는 정식 병력감축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존 兵力數를 확인할 檢證方案에 먼저 합의하자고 주장했으나 소련은 이러한 제의를 일축하였다.⁵⁹⁾

(다) 條約의 性格 및 範圍에 준한 檢證範圍와 形態 결정

군비통제조약의 條項과 상응하는 檢證方案은 자연스럽게 調和되어야 한다. 이러한 검증과 조약 내용간의 「相應性 原則」(principle of commensurability)에는 서방측도 동의하고 있다.⁶⁰⁾

59) Philip Towle, "Arms Control in East-West Relations," p. 25.

60) Ibid.

(라) 條約의 規制範圍에 대한 合意 導出이후 자세한 檢證
條項 합의

적절한 檢證方法을 확보하려는 미국으로 인해 조약의 실제 내용보다는 複雜한 檢證問題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상황이 유발되곤 했으나 소련은 검증에 관한 자세한 事項을 협의하기 전에 禁止하고자 하는 對象, 즉 조약의 실제 내용에 관한 基本原則에 미리 합의하기를 선호하였다. 소련은 조약의 範圍는 검증문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해당 조약의 實際內容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토웰(Towle)은 基本原則에 우선 합의하는 것이 信賴와 理解를 증진하고 검증에 수반되는 技術的 問題解決을 수월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소련의 태도가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⁶¹⁾

(마) 條約 違反이 아닌 遵守를 위한 條約의 가입

검증의 패러독스를 잘 반영하고 있는 「信賴의 原則」(principle of trust)이다. 검증의 필요성은 상대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지만 지나친 檢證要求는 相互不信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수 있다. 신뢰의 원칙은 상호불신의 가정에 기초하여 조약 참가국을 잠재적인 위반자로 보는 미국의 입장(「不信의 原則」)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바) 國際的 形態의 檢證 제한

미·소간 國際檢證의 制限原則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정부가 제안한 國際衛星偵察局(International Satellite

61) Ibid.

Monitoring Agency: ISMA)의 설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소는 모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소련은 特定 形態의 國際的 檢證은 지지하기도 하였다.⁶²⁾

(사) 科學·技術發達에 따른 違反의 探知 용이

과학발전이 檢證技術發展 뿐만 아니라 검증의 대상인 武器開發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이 점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과학기술 개발에 의해 검증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되어온 사실이다.⁶³⁾

(4) 고르바초프 등장이후~현재

고르바초프 등장이후에 소련은 기존의 軍備統制에 대한 입장 뿐만 아니라 檢證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態度變化를 보여 왔다. 고르바초프의 改革과 開放政策은 강력한 軍비통제정책 추진과

62) 이러한 國際的 檢證形態의 예로는 (1) 조약 가맹국의 협의와 협력을 위한 國際的인 節次, (2) UN 안전보장이사회에 提訴할 수 있는 權利, (3) 국가기술수단에 의해 얻어진 地震 觀測資料의 國際的 交換, (4) 「해저비핵지대화조약」의 검증에서 特定形態의 國際的 協力, (5) NPT에서 IAEA를 통한 檢證裝置 설치 등이다. Ellis Morris, *The Verification Issue in United Nations Disarmament Negotiations* (New York: United Nations, 1987), p. 95.

63) 技術發達이 檢證을 어렵게 할 可能性을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1) 용도의 多樣性(versatility): 무기의 兩用性(dual-capable)은 軍비통제조약에서 무기의 어느 一面만을 규제할 경우 遵守紛爭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크다. (2) 隱蔽性(concealibility): 무기의 소형화로 인해 은폐가 용이하고 은폐된 무기를 탐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3) 機動性(mobility): 무기의 기동성은 감시를 어렵게 할 것이다. (4) 종류의 多樣性(diversity): 무기종류의 다양화는 유사무기의 구분을 어렵게 할 것이다. (5) 量的 擴散(quantity): 무기수량의 증가는 검증에 부담을 줄 것이다. (6) 실험의 模糊性(testing obscurity): 무기 실험장소나 장비가 소형화됨으로써 무기실험에 관한 정확한 정보수집을 통한 무기성능평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W. Kinkade, "Challenges to Verification: Old and New," *Arms Control* (December 1982), pp. 24~26.

아울러 검증에 대한 소련의 입장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소련은 더 이상 現場檢査와 같은 浸透性이 강한 檢證方法을 거부하지 않게 된 것이다.

소련은 1986년 1월 15일 핵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의 폐기를 위한 3段階 軍縮案에서 NTM의 優先性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조약에 現場檢査와 더불어 기타 어떠한 강도 높은 檢證方法도 포함시킬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⁶⁴⁾ 1986년 2월말 제27차 소련 공산당대회에서 고르바초프는 “소련은 검증에 관해 개방되어 있으며 다른 국가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극히 包括的이고 빈틈없는 檢證은 軍縮過程에서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⁶⁵⁾

이러한 변화는 제네바 UN 군축회의 대표였던 이스라엘이 1988년 4월 소련의 다고미스(Dagomys)에서 개최되었던 UN 주최 검증에 관한 전문가 모임에서 밝힌 입장에도 잘 나타나 있다. 1981년 소련의 檢證 7個 原則을 발표한 바 있는 그는 軍備統制條約을 체결하고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軍事分野의 開放과 豫測可能性의 증대, 필요한 情報의 相互交換, 그리고 「강력하고 효과적인 遵守檢證 시스템」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⁶⁶⁾

이러한 소련의 檢證指向的 立場은 고르바초프이후 체결된 여러 조약의 協商過程과 檢證條項을 살펴 보면 잘 나타난다. 특히

64) Kokeyev and Androsov, *Verification*, p. 11.

65) Efinger, “The Verification Policy of the Soviet Union,” p. 342.

66) Victor Issraelyan, “Openness, Transparency, and Confidence Building,” in The United Nations, *Multilateral Aspects of the Disarmament Debate* (New York: Taylor and Francis, 1989), p. 158.

항상 강력한 검증제도를 추구한다는 이미지에 맞지 않게 美國이 소련보다 檢證에 대해 消極的이었던 경우도 있다.⁶⁷⁾ 예를 들어 INF 협상초기에 미국은 상당히 강도높은 검증장치를 요구하였으나 1987년 8월 25일 기존의 검증요구를 부분적으로 철회하였다. 그 이유는 현장검사 방법중의 하나인 任意現場檢査(short-notice OSI)가 합의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한 검사방법에 소련측이 동의했을 때 미국은 자국의 민감한 軍事施設을 소련 검사요원들이 검사함으로써 가져오게 될 安保危險에 대한 우려를 의식하여 현장검사의 강도를 당초 제안보다 축소했기 때문이다. 즉 소련이 전통적으로 우려해 온 檢證의 合法化된 間諜行爲 가능성을 이제는 역으로 미국이 우려하게 된 것이다.

나. 美國의 檢證政策

(1) 1920년대~1930년대

이 시기에 미국은 檢證에 대해 매우 消極的인 立場을 보였다. 1920년대 미국은 당시 국무장관 켈로그가 “미국은 외부의 감독을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국기관이나 개인의 검사에도 응하지 않을 것”⁶⁸⁾이라고 한 발언에서도 나타나듯이 검증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1930년대들어 후버행정부가 1932

67) 미국이 항상 엄격하고 강도높은 檢證을 요구하지만 이는 소련이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政治的인 提案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소련이 미국의 제안을 받아 들이겠다고 하면 과연 미국이 자신의 제안을 구체화시킬 용의가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항상 제기되어 왔다.

68) Burns, “Origins of the United States’ Inspection Policy,” p. 159.

년 「國際聯盟軍縮會議」(The League Disarmament Conference)에서 國際監視機構를 받아 들일 수 있다고 천명하고 같은해 7월 스티imson(Stimson) 국무장관도 美國領土에 대한 檢査를 받아 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힘으로써 검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⁶⁹⁾

검증에 대한 미국의 소극적 태도는 검증대상무기가 在來式 武器였다는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재래식 무기의 경우 軍事的 威脅을 줄 정도로 軍備를 증강하는 條約違反은 쉽게 탐지될 수가 있고 따라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⁷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미국이 檢證條項에 대한 協商 자체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워싱턴 海軍條約」(The Washington Naval Treaty)에는 情報交換規定은 있으나 건설중인 군함에 대한 검사 등 분명한 檢證條項은 없다. 조약을 위반하여 군함의 건조를 탐지하고 對應手段을 강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검증이 필수불가결하게 여겨지지 않았을 것이다.⁷¹⁾ 미국이 검증을 반대한 이유는 오히려 당시의 唯一한 檢證手段인 現場檢査가 가져올 主權侵害 가능성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69) Towle, *Arms Control and East-West Relations*, p. 135.

70)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 I」(CFE I) 협상에서도 핵무기 협상과는 달리 小規模 違反可能性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위반이 발생해도 군사·전략적 영향은 주지 못한다고 보았다.

71) William Rowell, *Arms Control Verification: A Guide to Policy Issues for the 1980s* (Cambridge, Mass.: Ballinger Publishing Company, 1986), p. 3.

(2) 1940년대~1950년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가 본격화되면서 강력한 적대국으로 부상한 蘇聯의 核武器 개발·보유가 미국으로 하여금 檢證問題에 주된 관심을 갖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先 검증합의, 後 군비축소합의」를 주장하였으며 소련사회의 閉鎖성과 당시의 기술적 檢證能力 不足으로 군축회의에서 당연히 現場檢査를 강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소련이 미국의 현장검사요구를 間諜行爲로 간주하여 반대함으로써 해결점을 찾지 못하였다. 검증과 검증될 내용의 先後問題에 대한 미·소 양측의 立場差異는 1961년 「맥클로이-조린 宣言」에서 軍備縮小와 동시에 檢證을 실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원칙적으로 해소되었다.

1950년대 중반이후에는 미국의 檢證技術이 발전하여 1956년부터 U-2 정찰기가 소련을 감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으로 자신을 가진 미국은 1960년대에 들어와 소련과 실질적인 軍備統制協商을 시작할 수 있었다.

(3) 1960년대~카터행정부시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미국은 소련보다 檢證에 대해 적극적이었으며 정찰위성을 비롯한 技術的 探知能力 향상을 배경으로 「適切한 檢證」(adequate verification)을 檢證政策으로 채택하여 많은 군비통제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시기는 미·소간에 現場檢査 없이 가능한 조약들이 체결되었으며 가장 중요한 조약은 「SALT I, II 조약」일 것이다. 1969년에 시작된 SALT I 협상은 1972

년 미·소 頂上會談에서 「ABM 조약」과 「SALT I Interim 조약」의 체결로 결실을 보게 된다.

「適切한 檢證」基準은 1969년 닉슨대통령이 SALT I 협상대표에게 시달한 指針을 통해 최초로 알려졌다. 닉슨대통령은 완벽하게 검증할 수 있는 조약은 없다고 주장하고 적절한 검증은 重要的 危險을 초래할 정도로 큰 규모의 違反이 일어난다면 이를 발견하여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만큼 필요한 時間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實質的 基準이 충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⁷²⁾ 1973년에 체결된 「美·蘇間 戰略武器減縮協商 基本原則」(The U.S.-Soviet Basic Principles of Negotiations on the Further Limitation of Strategic Offensive Arms)에서도 제4항에 “전략무기 제한은 NTM으로 적절히 검증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⁷³⁾ 한편 1977년 미 의회는 더윈스키(Derwinski) 의원의 제안에 따라 「軍備統制法案」(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ct)을 수정하여 “의회는 適切한 遵守檢證이 국제군비통제조약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이어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밝힘으로써 적절한 검증기준을 정식으로 채택하였다.⁷⁴⁾

카터행정부 당시 「SALT II 조약」의 비준동의를 위한 議會 聽聞會에서도 適切檢證基準에 대한 定義問題가 논의되었다. 당시

72) Krepon, “The Political Dynamics of Verification and Compliance Debates,” p. 138.

73) Jozef Goldblat, *Arms Control Agreements: A Handbook* (Stockholm: SIPRI, 1982), p. 176.

74)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ct, 22 U.S. Congress 2577, sec. 37, Rowell, *Arms Control Verification*, p. 83에서 인용.

브라운(Brown) 미 국방장관은 戰略的 均衡에 영향을 줄 정도의 違反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時間內에 探知될 수 있는 경우 適切檢證基準이 확보된 것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당시 미 군 축처장 세그니우스(Seignious)는 「SALT II 조약」이 적절히 검증될 수 있느냐는 질문은 “우리의 檢證能力이 어떠한 소련의 違反도 중요한 軍事的 危險을 가져 오거나 戰略的 均衡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전에 探知될 것이라는 충분한 확신을 준다는 점을 우리가 신뢰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⁷⁵⁾

「SALT I 조약」의 비준 토의시에는 검증문제가 크게 거론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⁷⁶⁾ 첫째, 「SALT I 조약」 체결 당시 심각한 遵守問題를 야기시킨 군비통제조약은 없었다. 둘째, 「SALT I 조약」은 미·소 양국의 友好的 關係가 시작되던 데탕트 초기에 맺어진 결실이었다. 셋째, 닉슨대통령의 對蘇 強硬 이미지와 힘의 優位政策을 통해 미 행정부는 「SALT I 조약」으로 인해 미국의 安保가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과 미국의 檢證能力에 대해 國民의 信賴를 얻었다. 이 점은 군비통제와 검증에서 大統領이 차지하는 比重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이와 관련하여 검증이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信賴의 問題이기 때문에 대통령 자신이 주요 檢證問題에 대해 國회를 說得하고 國民에게 弘報해야 할 필요가

75) Rowell, *Arms Control Verification*, p. 83.

76) Richard Haass, “Verification and Compliance,” in A. Carnesale and Richard Haass, eds., *Superpower Arms Control: Setting the Record Straight* (Cambridge, Mass.: Ballinger Publishing Company, 1987), p. 305.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⁷⁷⁾

반면에 「SALT II 조약」의 비준 토의시에는 檢證問題가 크게 부각되었는데 그 이유를 다음 세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우선 美·蘇關係가 「SALT I 조약」 체결 당시와는 달리 악화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둘째, 「SALT II 조약」에서는 「SALT I 조약」의 경우와 달리 武器의 量的 規制와 함께 質的 制限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즉 장거리 폭격기와 순항미사일에 대한 규제, ICBM과 SLBM에 탑재가능한 탄두수에 대한 규제와 같은 質的 制限은 NTM만 가지고는 검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算定規則」이나 「기능적으로 識別可能한 差異」(functionally related observable differences: FRODs)와 같은 協力檢證方案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기술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셋째, 「SALT I 조약」을 비롯한 기존 조약의 遵守問題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왔다. 미국의 檢證政策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1976년 여름 「部分核實驗禁止條約」(TTBT)의 비준 동의를 위한 上院 聽聞會에서 분명해졌다. 미국 언론은 소련이 고강도의 核實驗을 실시함으로써 「TTBT」를 違反했다고 보도하였지만 당시 대통령 선거전에 열중하던 포드행정부는 이 사실을 한 달이 지나서야 발표했고 그 후의 실험에 대해서는 아예 발표하지도 않았다. 여론의 압력속에 포드행정부는 미국의 檢證能力에 不確實한

77) Rowell, *Arms Control Verification*, p. 102.

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시인할 수 밖에 없었다.⁷⁸⁾ TTBT 사건은 「SALT I 조약」의 遵守紛爭과 더불어 검증과 관련된 政治的 狀況을 악화시킬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사실은 카터행정부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SALT I 조약」의 대표적인 遵守紛爭 事例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⁷⁹⁾ 첫째, 「SALT I Interim 조약」에서 미·소는 「중형미사일」의 定義에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소련 SS-11 경미사일의 신형 SS-19로의 交替가 규제될 수 없었다. 미국은 조약체결시 一方的 解釋을 통해 SS-19을 중형미사일로 분류한다고 선언했지만 이에 대한 소련의 遵守義務는 없는 것이었다. 신형 SS-19미사일이 등장함으로써 미국 지상미사일의 취약성과 더불어 군비통제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한 실망감이 미국내에서 동시에 제기되었다.

둘째, 「SALT I ABM 조약」 제VI조 (a)항에서는 對空防禦레이더 實驗을 「ABM 형식」으로 실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련은 탄도미사일 실험시 인근에 위치한 SA-5 대공방어레이더를 의도적으로 작동시켜 이들 SA-5 레이더가 탄도미사일 추적능력을 갖도록 시도하였다. 미국이 SCC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자 소련은 이러한 실험을 중단하였으나 SA-5 레이더의 예는 조약이 兩用性을 지닌 武器體系의 어느 일면만을 규제할

78) TTBT의 허용 폭발강도는 150kt인데 포드대통령 자신도 폭발실험의 강도가 100~300kt이라고 말했을 정도였다. Lowenthal and Wit, "The Politics of Verification," p. 158.

79) Haass, "Verification and Compliance," pp. 309~313.

때 條約違反 可能性이 상존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셋째, 「SALT I ABM 조약」에서는 조약체결 당시 존재하는 實驗地域에서만 ABM 실험을 실시하되 쌍방 合意에 의해 새로운 지역에서 실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75년 미국은 캄차카 반도의 탄도미사일 실험지역에 소련이 ABM 레이더를 건설하는 것을 포착하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해당 시설이 「ABM 조약」 체결 당시부터 존재했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ABM 조약」에는 기존 시설에 대한 目錄을 提出하는 規定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은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었다. 이 분쟁은 조약체결시 細部事項에 대한 協議 未備로 효과적인 검증에 실패한 좋은 예이다.

넷째, 「ABM 조약」 제V조는 移動式 레이더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련의 플랫폼 트윈(Flat Twin)과 편 숭(Pawn Shop) 레이더는 큰 어려움없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동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조약의 規制對象은 아니지만 그와 類似한 特性을 가진 武器體系를 制限하지 못함으로써 遵守 紛爭이 유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섯째, 소련은 크라스노야르스크(Krasnoyarsk)에 LPAR (large, phased-array radar)을 건설하였다. 「ABM 조약」은 조기경보용 LPAR을 국경주변에 외부로 향하는 조건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반면, 우주의 비행물체 추적용 혹은 첩보수집용 LPAR은 어느 곳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크라스노야르스크 레이더의 위치와 방향으로 볼 때 早期警報用으로 판단

된다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이 레이더가 우주물체 추적용이라고 주장하였다. 크라스노야르스크 레이더 사건은 多用途 시스템의 어느 일면만을 규제하는 데에서 오는 條約履行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⁸⁰⁾

上記 다섯 가지 사례중에서 크라스노야르스크 레이더 사건을 제외하고는 분명한 조약위반 사례가 없다. 크라스노야르스크 레이더 사건도 「ABM 조약」의 核心 目標에 영향을 주거나 미국에 軍事的 威脅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⁸¹⁾ 이는 지난 수십년간 미·소간에 체결된 군비통제조약이 대체적으로 잘 지켜져 왔다는 사실을 반증한다.⁸²⁾

1960년대와 1970년대의 「適切한 檢證」 基準도 「SALT II 조약」의 비준동의 토의시 많은 비판을 받게 된다. 레이건행정부 당시 국방차관을 지낸 바 있는 펄(Richard Perle)은 카터행정부가 戰略的 均衡의 變化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定義하지 못했다고 강조하고 “條約과 一致하지 않는 모든 行動이 探知될 수 있을 때 그 조약은 檢證可能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⁸³⁾ 니체(Paul Nitze)도 「戰略的 不均衡」 혹은 「適切한」이라는 용어

80) 1989년 9월 소련은 크라스노야르스크 레이더를 철거하기로 결정하였고 1989년 10월 당시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은 크라스노야르스크 레이더가 ABM 조약을 위반한 것임을 시인하였다. *Arms Control Today*, Vol. 20, No. 6 (July/August 1990), p. 27.

81) *Arms Control Today, Arms Control and National Security: An Introduction* (Washington, D.C.: Arms Control Association, 1989), p. 152.

82) Gloria Duffy, “Study Finds Treaty Complianc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July 1987), pp. 30~32.

83) Richard Perle, “What is Adequate Verification?” *SALT II and American Security* (Cambridge, Mass.: Institute for Foreign Policy Analysis, 1980), p. 53.

가 主觀的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였다.⁸⁴⁾

카터행정부가 심혈을 기울였던 「SALT II 조약」의 比準이 실패한 理由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⁸⁵⁾ 우선 「SALT II 조약」 자체가 非難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니체는 「SALT II 조약」을 비준할 경우, 이는 소련이 지난 10년간 이룩해 온 戰略武器 증강을 비준하는 것이며 미국은 전략적으로 불리해진다고 비난하였다. SALT I 협상의 주역이었던 키신저(Henry Kissinger)도 「SALT II 조약」에 대한 지지를 유보한 채, 제3세계에서 쿠바와 소련의 활동을 예로 들며 소련의 군사·정치적 膨脹主義 위험을 강조하고 미국이 소련의 부당한 행동에 대한 對應策을 마련하지 않는 한 「SALT II 조약」의 비준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1979년 8월초까지 비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따라서 「SALT II 조약」의 비준이 실패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條約外的 要因이 더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카터행정부의 데탕트 外交政策과 軍備統制政策에 반대하며 개별적으로 활동해 오던 保守右翼團體들이 1979년 「保守政治行動委員會」(The National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mmittee: NCPAC)를 결성하고 1980년 상원의원 선거를 겨냥하여 「SALT II 조약」을 지지하는 의원들에 대한 反對鬭爭을 전개하였다. 더욱이 1979년

84) Rowell, *Arms Control Verification*, p. 85.

85) C. Blacker and G. Duffy, *International Arms Control: Issues and Agreement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269~272.

8월말 쿠바에 소련 전투여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소련과 쿠바의 軍事冒險主義에 대한 새로운 경계심리가 미국내에 고조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이란 미 대사관의 人質事件은 카터행 정부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었으며 1979년 12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侵攻後 카터대통령은 소련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결국 1980년 1월 「SALT II 조약」의 비준동의 요청을 철회하였다.

(4) 레이건행정부 등장이후~현재

이처럼 카터행정부의 군비통제와 검증정책이 비판받고 기존 조약의 준수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던 상황에서 레이건행 정부는 새로운 검증기준으로 「效果的 檢證」을 채택하고 現場檢査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효과적 검증」이라는 용어는 1977년 더윈스키(Derwinski) 의원이 軍備統制法案(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ct)의 개정을 요구하며 처음 사용하였으나 당시 미 상원은 「適切한」이라는 표현이 보다 現實的이라는 이유로 더윈스키 의원의 제의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레이건대통령은 미국의 새로운 검증정책은 “과거 군비통제에 대한 信賴를 손상시켜 왔던 秘密과 疑心 대신 開放과 創意性を 강조할 것”⁸⁶⁾이라고 천명하였다. 미 군축처장 로스토우(Eugene Rostow)는 새롭고 創意的인 아이디어란 NTM 이외에 現場檢査, TV 카메라와 같은 協力手段이라고 설명하고 特別檢査도 가능하다고 말하였다.⁸⁷⁾ 效果

86) James Shear, “Cooperative Measures of Verification: How Necessary? How Effective?” in Potter, ed., *Verification and Arms Control*, p. 9.

87) Ibid.

的 檢證이 적절한 검증보다 強力한 檢證基準이라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첫째, 레이건행정부는 적절한 검증기준에 의거하여 체결된 「지하핵실험제한조약」(TTBT)과 「평화적 핵실험 제한조약」(PNET)의 檢證條項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강력한 검증방법을 원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 5월 31일 부시-고르바초프 頂上會談에서 새로운 檢證議定書가 채택되었는데 검증의정서의 중요한 특징은 핵실험국 영토내 3개 지진탐사소에서의 實驗規模 측정과 실험현장 주변 암반의 폭격파를 측정하여 實驗의 爆發力을 결정하는 콜텍스(Corrtext) 技法의 사용을 허용한 것이다.

둘째, 1984년 1월 23일 레이건대통령은 미 의회가 요청한 소련의 條約違反事例에 관한 報告書를 발표하였다. 미국은 소련이 「제네바의정서」, 「세균 및 독성무기 금지협정」, 「헬싱키협약」 등에서 조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조약위반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한 검증」 기준을 채택했던 닉슨, 포드, 카터행정부에서는 유례가 없던 일로서 이는 條約違反의 重要性을 강조하는 레이건행정부의 檢證政策에 기인한다.

셋째, 「적절한 검증」 기준하에서 체결된 대부분의 조약에 현장검사가 채택되지 않은 것과 달리 1984년 4월 「化學武器禁止條約」(Chemical Weapons Convention: CWC) 協商에서는 당시 부시 미 부통령이 당시로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고 強力한 現場檢査의 실시를 提案하였다. 레이건행정부의 현

장검사 실시 요구는 「스톡홀름協約」에서 수용되었으며 이후 체결된 「INF 조약」, 「CFE I 조약」, 「START 조약」에서도 현장검사가 주요 검증수단으로 채택되었다.

NTM에 의한 檢證可能性에 의거하여 조약의 實質條項을 협상하려 했던 카터행정부의 接近方法과는 달리 레이건행정부는 NTM에 제약받지 않고 조약의 具體的 內容을 결정하는 입장을 취하였다.⁸⁸⁾ 당시 미 군축처장이던 그레이(Robert Grey)는 레이건행정부의 檢證協商方法을 NTM의 제한된 능력에 따라 조약의 성격과 範圍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NTM 檢證의 充分性 여부에 관계없이 戰略的으로 有益하다고 생각되는 사항들을 제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⁸⁹⁾ 이러한 政策的 背景에서 미국은 NTM을 지원할 수 있는 현장검사 등 協力檢證方案을 강조하였고 부시행정부에 들어와서도 이러한 정책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소련이 미국의 검증정책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스톡홀름協約」을 시작으로 체결된 여러 조약에서는 NTM과 함께 자세한 現場 檢査條項 등 구체적인 協力檢證方案이 채택되었다. 이들 방안들은 서로의 기능을 상호보완하며 상승효과를 가져와 檢證能力을 극대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냉전이 종식된 상태에서 戰略的

88) 니체(Nitze)는 검증에 대한 지나친 우려와 조약체결 압력때문에 카터행정부가 「SALT II 조약」에서 미사일이나 탄두 대신 발사대를 제한요소로 규정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주장하였다. Ibid., p. 95.

89) Alan Niedle, ed., *Nuclear Negotiations: Reassessing Arms Control Goals in U.S.-Soviet Relations* (Austin: Lyndon Johnson School of Public Affairs, 1982), p. 78; Rowell, *Arms Control Verification*, p. 96에서 인용.

優位를 점하기 위한 의도적 違反可能性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START 조약」에 따라 핵무기를 감축한 후에도 미·러시아 양국은 상당한 戰略核을 보유할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 違反만이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위반은 곧 탐지가 될 것이며 또한 새로운 국제정세속에서 러시아가 軍事的 利益에 비해 政治的 損失이 엄청난 條約違反을 감행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할 것이다. 「INF 조약」의 비준동의를 위한 의회 청문회에서 당시 미 합참의장 크로우(William Crowe) 제독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는데 같은 논리가 기타 조약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소련의 條約違反이 발각된다면 이는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그의 外交政策을 통해 成就하고자 하는 모든 것—즉 소련의 이미지 改善, 서방측과의 協力下에 蘇聯經濟의 부흥, 소련사회의 開放—에 위배될 것이다. 이와 같이 보다 포괄적인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INF 조약의 違反은 매우 위험스럽고 아주 커다란 利害가 걸린 문제일 것이다.⁹⁰⁾

3. 國際條約의 檢證事例

本節에서는 주요 군비통제조약의 檢證條項을 분석하고 그 特

90) Dunbar Lockwood, "Verifying START: From Satellites to Suspect Sites," *Arms Control Today*, Vol. 20, No. 8 (October 1990), p. 19.

徵을 파악함으로써 軍備統制 檢證이 실제 조약에서 어떻게 정착되어 왔는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1925년에 체결된 「제네바議定書」(The Geneva Protocol)에서부터 최근의 「戰略武器減縮協定」(The Strategic Arms Reduction Talks Treaty: START Treaty)에 이르기까지 11가지 군비통제조약을 검토하겠다.

먼저 「조약의 개요」에서는 각 조약의 (1) 締結時期, (2) 發效時期, (3) 有效期間, (4) 조약 가맹국의 數, (5) 조약의 內容과 特徵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검증조항의 특징」에서는 각 조약별로 檢證條項을 분석·정리하여 검증조항의 특징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조약의 검증조항 全文은 번역하여 附錄에 수록하였으나 「중거리핵미사일폐기조약」(INF Treaty),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 I」(CFE I Treaty),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 Treaty)은 워낙 내용이 광범위하고 분량이 많기 때문에 검증조항을 요약하여 수록하였다.

가. 「제네바議定書」(The Geneva Protocol)

(1) 條約의 概要

「제네바의정서」는 1925년 6월 17일 제네바에서 체결되었으며 1928년 2월 8일 발효되었고 有效期間은 무기한이다. 1991년 1월 1일 현재 미국, 소련, 영국, 중국, 일본, 남한, 북한, 독일 등 125개국이 가입하였다(이하 각 조약의 모든 가맹국도 1991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제네바의정서」는 전쟁에서 질식, 유독

및 기타 가스의 사용과 세균전을 금지하고 이것이 국제법의 일부로서 보편적으로 받아 들여져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제네바의정서」는 戰爭에서의 使用禁止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보다 근원적인 生産禁止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가스 및 세균무기가 인류에게 주는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었으며 이후의 여러 전쟁에서 이들 무기가 다시 사용되었다.

(2) 檢證條項의 特徵

검증조항이 없으므로 「無檢證基準」에 해당된다.

나. 「南極條約」(The Antarctic Treaty)

(1) 條約의 概要

「남극조약」은 1959년 12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되었으며 1961년 6월 23일 발효되었고 有效期間은 효력발생후 최소 30년이다. 미국, 소련, 영국, 중국, 일본, 남한, 북한, 독일 등 39개국이 가입하였다. 「남극조약」은 남극이 國際紛爭의 場이 되어서는 안되고 平和的 目的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군사기지, 군사훈련, 무기실험 등 軍事的 性格의 일체 行動을 금지하고 핵폭발이나 방사능 물질의 처리도 금지하고 있으며 남극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정보를 교환할 주기적인 모임을 설치하였다.

(2) 檢證條項의 特徵

「남극조약」의 제VII조에서는 남극의 전지역, 시설 및 장비에 대

한 무조건적인 現場檢査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남극의 모든 지역에서 空中檢査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남극조약」은 흔히 完璧한 혹은 理想的인 檢證의 例로서 자주 인용되고 있다. 또한 제VI조에서는 조약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해서 紛爭이 발생했을 경우 平和的인 方法으로 관련 당사국간의 協議에 의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협의에 의해 해결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쟁당사국들의 동의하에 문제를 國際司法裁判所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남극조약」은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無制限의 現場檢査를 허용함으로써 「남극조약」의 검증은 「完璧檢證基準」에 부합한다. 그러나 남극이 결코 조약 가맹국들의 領土는 아니며 더욱이 軍事的으로도 그 價値가 制限되어 있는 장소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이와 비슷한 예로서 1972년에 체결된 「해저비핵지대화조약」이 있다).

다. 「部分核實驗禁止條約」 (The Limited Test Ban Treaty: LTBT)

(1) 條約의 概要

「부분핵실험금지조약」은 1963년 7월 25일 모스크바에서 체결되었으며 1963년 10월 10일 발효되었고 有效期間은 무기한이다. 미국, 소련, 영국, 일본, 한국, 독일 등 118개국이 가입하였다(북한과 중국은 불참). 「부분핵실험금지조약」은 대기권, 대기권밖 및 해저에서의 核武器 實驗이나 核爆發을 禁止하고 있으며 地下

核實驗의 경우에도 핵폭발을 실행한 국가의 국경선밖으로 放射能物質이 流出되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⁹¹⁾

(2) 檢證條項의 特徵

구체적인 검증조항이 없는 「無檢證基準」에 해당되나 조약체결 시 미·소 양국은 國家技術手段의 사용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라. 「細菌 및 毒性武器 禁止協定」 (The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Convention: BTWC)

(1) 條約의 概要

「세균 및 독성무기 금지협정」은 1972년 4월 10일 런던, 모스크바, 워싱턴에서 同時に 체결되었으며 1975년 3월 26일 발효되었고 有效期間은 무기한이다. 미국, 영국, 소련, 중국, 일본, 남한, 북한, 독일 등 112개국이 가입하였다. 「세균 및 독성무기 금지협정」은 平和的인 目的 이외의 세균 및 유독성 물질의 保有, 獲得, 貯藏, 生産, 開發을 금지하며, 이러한 물질을 전쟁에서 혹은 敵對的 目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武器, 裝備, 運送手段도

91) 1989년 4월, 「LTBT」 총 회원국의 1/3이 조약의 수정을 제의하는 안건을 미국, 영국, 소련 등 3개 條約寄託國에 제출하였다. 내용은 「NPT」와 「LTBT」의 전문에 명시된 全面的인 核實驗禁止(Comprehensive Test Ban: CTB)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LTBT」를 수정하자는 제안이었다. 이 修正案에 대한 토의를 위한 회의가 1991년 1월 7일부터 2주간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LTBT」에 대한 修正은 3개 조약기탁국(미국, 영국, 소련)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부시행정부가 수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修正提議은 부결되었다.

금지하고 있다.⁹²⁾

(2) 檢證條項의 特徵

구체적인 檢證條項은 없으나 제V조에서 문제 발생시 협의 및 해명을 통해 平和的으로 해결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제VI조에는 告發節次를 명시함으로써 조약위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違反國을 UN 안전보장이사회에 고소할 수 있으며 안전보장이사회는 고소가 접수되면 調査에 착수하고 각 조약 가맹국은 조사에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약 발효 5년후 또는 그 이전에 조약 가맹국 과반수의 발의에 의해 조약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評價會議를 개최할 수 있다(제XII조). 「세균 및 독성무기 금지협정」의 검증은 「象徴檢證基準」에 해당된다.

마. 「戰略武器制限協定 I」(SALT I Treaty)

(1) 條約의 概要

「전략무기제한협정 I」은 「邀擊彈道미사일條約」(ABM Treaty)과 「戰略攻擊武器에 관한 暫定協定」으로 구성된다. 「전략무기 제한협정 I」은 미·소간의 조약으로서 1972년 5월 26일 모스크바에서 체결되었으며 1972년 10월 3일 발효되었다. 「요격탄도미사일조약」의 有效期間은 무기한으로서 5년에 한 번씩 評價會議

92) 미국은 부시대통령이 1990년 5월 22일 細菌武器를 개발하거나 소지하는 것이 不法이라는 法案(The Biological Weapons Anti-Terrorism Act)에 서명함으로써 「BTWC」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게 되었다. Matthew Bunn, "Biological Weapons Outlawed," *Arms Control Today*, Vol. 20, No. 5 (June 1990), p. 35.

를 개최할 수 있으며 「전략공격무기에 관한 잠정협정」은 새로운 조약으로 대체되지 않는 한 5년간 유효하다.

「전략무기제한협정 I」은 미·소 양국의 戰略核이 均衡을 이루게 되고 양측이 더 이상의 軍備增強을 피하자는 데 공감함으로써 체결될 수 있었다. 「요격탄도미사일조약」은 戰略攻擊武器의 경쟁을 막고 核戰爭 발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요격탄도미사일 시스템(요격탄도미사일, 발사대, 레이더로 구성됨)의 보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전략공격무기에 관한 잠정협정」은 ICBM의 追加生産과 구형 ICBM의 신형 중형 ICBM으로의 轉換을 금지하며 SLBM과 탄도미사일 잠수함 수를 현재 보유중이거나 건설중인 선에서 동결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 檢證條項의 特徵

두 조약의 검증조항은 동일하다. 제XII조 1항에서는 군비통제조약 역사상 최초로 NTM 使用를 공식적으로 認定하였다. 또한 제XII조 2항 및 3항에서는 NTM을 간접한거나 NTM에 의한 준수검증을 방해할 목적의 隱蔽裝置 使用도 금지하고 있다. 제XIII조에서는 常設協議委員會(SCC)를 설치하여 조약시행시 야기되는 제반 遵守問題를 다루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인 자문이나 해명은 정상적인 외교채널을 통해 문제발생시 특별히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SCC는 상호협력과정을 발전시키고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諮問協力機構이다⁹³⁾ 「전략무기제한협정 I」의 검증

93) K. Kleijn, "Basic Military Views in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Arms Control Verification--Summary and Elaborations," in Riekhoff, ed., *Compliance and Confirmation*, p. 3.

조항은 「適切檢證基準」에 해당된다.

바. 「헬싱키協約」(The Helsinki Final Act)

(1) 條約의 概要

「헬싱키협약」은 1975년 8월 1일 헬싱키에서 체결되었으며 같은 날 발효되었고 有效期間은 무기한이다. NATO, WTO 회원국과 비동맹 중립국 등 유럽 35개국이 가입하였다. 「유럽安保協力會議」(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에서 체결된 「헬싱키협약」은 유럽의 안보·경제·기술 및 人本的인 問題를 다루고 있는데 정치적 합의사항으로서 法的 拘束力은 없다.

유럽의 안보와 관련하여 「헬싱키협약」의 「信賴構築文書」(Document on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and Certain Aspects of Security and Disarmament)에는 軍事的 信賴構築方案이 최초로 제시되어 있다. 각국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헬싱키협약」은 2만 5천명 이상이 참가하는 주요 軍事訓練에 대해 가능하면 21일전에 事前通報하며 통보시에는 훈련의 명칭, 목적, 참가국, 참가부대의 종류와 병력, 실시지역, 예상소요기간에 관한 情報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 조약 가맹국은 다른 가맹국들을 자발적으로 초청하여 자국의 軍事訓練을 參觀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소규모의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사전통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信賴構築에 기여한다는 견지에서 각국의 자유재량에 따라 주요 軍事移動에 대한 통보와 군대표단을 비롯한

軍人士 교환 및 교류의 실시도 권장하고 있다.

(2) 檢證條項의 特徵

「헬싱키협약」의 「신뢰구축문서」에는 檢證條項이 없으며 따라서 「無檢證基準」에 해당한다. 條約의 履行은 각 참가국의 自發的인 遵守에 의존할 뿐이며 따라서 法的·政治的 遵守義務도 없다.⁹⁴⁾

사. 「戰略武器制限協定 II」(The SALT II)

(1) 條約의 概要

「전략무기제한협정 II」는 미·소의 양자간 조약으로서 1979년 6월 18일 비엔나에서 체결되었으나 미 의회의 比準拒否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국의 政治的 合意下에 준수되어 왔다. 유효기간은 6년으로 효력발생후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되지 않는 한 1985년 12월 31일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유효기간후에도 쌍방의 정치적 합의하에 준수되어 왔으나 미국이 1986년 11월 일방적으로 조약을 위반함으로써 폐기되었다.

「전략무기제한협정 II」은 ICBM 및 SLBM 발사대, 중폭격기 및 공대지 탄도미사일(ASBM)의 上限線을 1981년 말까지 2,250基로 함과 아울러 다음과 같은 制限을 두고 있다.

- 다탄두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장거리 크루즈미사일탑재 중폭격기 ≤ 1,320
- 다탄두 탄도미사일 발사대 ≤ 1,200

94) John Borawski, *From the Atlantic to the Urals* (New York: Pergamon-Brassey's International Defense Publishers), p. 15.

- 다탄두 ICBM ≤ 820
- 고정 ICBM 발사대 신설과 固定重型 ICBM 발사대 수의 증가 금지
- 중형 이동식 ICBM 발사대 및 重型 SLBM, ASBM 발사대 금지
- 新型 ICBM 배치 혹은 실험 금지(단, 輕 ICBM의 경우 1개 신형 개발 가능)
- 기존 ICBM 탄두수 증가를 금지하고 신형 ICBM의 최대허용 탄두수를 10개로 제한하며 SLBM 탄두수를 최고 14개, ASBM 탄두수를 최고 10개, 중폭격기탑재 장거리 크루즈미사일의 수는 평균 28개로 제한
- 전략탄도미사일의 발사중량(launch weight)과 투하중량(throw weight)을 제한하고 輕ICBM 발사대를 重型ICBM 발사대로 전환할 수 없음
- SS-16 ICBM을 금지하고 신속재탑재(rapid reload) ICBM 시스템 금지
-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배치된 적이 없는 함상발사 장거리 탄도미사일, 해저발사 탄도미사일, 해저발사 크루즈미사일 등 일부 신형 전략공격무기체계 금지
- 자료교환과 특정 ICBM 시험발사시 사전통보

(2) 檢證條項의 特徵

「전략무기제한협정 II」의 검증조항은 NTM 使用의 公式 認定

과 干涉 및 隱蔽 금지(제XV조), 常設協議委員會의 운영(제XVII조) 등 「전략무기제한협정 I」과 유사한 조항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새로운 사항을 채택하고 있다. 첫째, 제XII조에서는 조약의 「回避」(circumvention)를 금지하고 있다. 회피는 조약을 직접적으로 違反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약 가맹국이 아닌 우방국을 돕는 행위 등을 통해 조약에서 금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둘째, 제XVI조(통보 조항)에서는 쌍방이 예정된 ICBM의 발사 전에 發射 趣旨를 상대방에게 사전에 수시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전략무기제한협정 II」의 검증기준은 「適切檢證」에 해당된다

아. 「스톡홀름協約」 (Stockholm Document)

(1) 條約의 概要

「스톡홀름협약」은 1986년 9월 19일 스톡홀름에서 체결되었으며 비준없이 1987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有效期間은 무기한이고 「헬싱키협약」 회원국 35개국이 가입하였다. 「스톡홀름협약」은 「헬싱키협약」의 軍事的 信賴構築方案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서 「헬싱키협약」보다는 安保問題에 관해 보다 구체적이고 한 단계 발전된 것이라는 점을 표시하기 위해 「信賴安保構築方案」(Confidence and Security Building Measures: CSBM)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또한 適用地域도 「헬싱키협약」보다 광범위한 대서양에서부터 우랄산맥(From the Atlantic to the Urals: ATTU)까지이며 정치적으로 拘束力이 있고 군사적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

「스톡홀름협약」은 訓練通報와 情報交換을 위해 13,000명 이상

이나 300대 이상의 탱크, 200대 이상의 항공기가 출격하는 훈련, 3,000명 이상의 해병대나 공수부대가 참가하는 훈련은 최소한 훈련시작 42일전에 통보할 것과 매년 11월 15일 이전에 次期年度 軍事訓練에 관한 情報를 교환하고 40,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훈련은 1년전에, 75,000명 이상의 훈련은 2년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훈련실시국은 17,000명 이상의 훈련이나 5,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상륙·공수훈련의 경우 訓練參觀團을 초청해야 하며, 72시간 이상 실시되는 非常訓練도 參觀團을 초청해야 한다.

(2) 檢證條項의 特徵

「스톡홀름협약」은 NTM에 의한 條約遵守 檢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제64항) 준수 여부가 의심되는 조약 가맹국에 대해 現場檢査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6항). 그러나 어떤 조약 가맹국도 CSBM 적용지역내의 자국 영토에서 연간 4회 이상(67항) 또는 동일 국가로부터 연간 2회 이상(68항) 검사를 받아 들일 필요는 없다. 현장검사팀은 검사요청후 36시간내에 피검사국에 입국하여(79항) 48시간내에 검사를 종료해야 하며 地上·空中 檢査가 모두 가능하다(83항). 검사요원 및 보조요원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비엔나 外交協約에 따라 외교관에게 주어지는 免責特權을 부여받을 수 있다(85항). 현장검사팀의 입국지점까지 經費는 검사실시국이 지불하며 또한 자국의 차량과 항공기를 이용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檢査費用은 수검국이

지불한다(96항). 군사적으로 의미있는 조약에 현장검사가 허용되기는 「스톡홀름협약」이 처음이며 同 조약의 검증기준은 「效果檢證基準」에 해당된다.

자. 「中距離核미사일廢棄條約」(The INF Treaty)

(1) 條約의 概要

「INF 조약」은 1987년 12월 8일 워싱턴에서 미·소간에 체결되었으며 1988년 6월 1일 발효되었다. 「INF 조약」의 有效期間은 무기한으로서 사정거리 500~1,000km인 중단거리 및 1,000~5,500km인 중장거리 「지상발사 탄도미사일」(Ground Launched Ballistic Missile: GLBM)과 「지상발사 크루즈미사일」(Ground Launched Cruise Missile: GLCM), 이들 미사일의 발사장치, 基地, 보조장비와 시설을 廢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단거리 미사일은 조약 발효후 최초 18개월 이내에, 중장거리미사일은 3년 이내에 폐기를 끝내도록 되어 있으며 폐기대상 미사일의 發射實驗이나 生産도 금지하고 있다. 1991년 5월 21일 소련이 마지막 21基의 SS-20 미사일을 폐기함으로써 廢棄節次를 완료하였다.

(2) 檢證條項의 特徵

「INF 조약」의 검증조항은 〈도표 2〉과 같이 요약될 수 있으며 도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INF 조약」의 검증은 「效果檢證基準」에 해당된다.

〈도표 2〉 「INF 條約」의 검증시스템

檢證 方法

- (1) National Technical Means (NTM)
- (2) 資料 交換
- (3) 現場 檢査
 - (a) 기초 검사
 - (b) 폐기절차 및 폐기완료 확인검사
 - (c) 임의 검사
 - (d) 상주 감시소
- (4) 附隨方案

機 構

- (5) 特別檢證委員會 (SVC)
- (6) 核危險減少센터 (NRRC)

차. 「유럽在來式武器減縮條約 I」 (The CFE I Treaty)

(1) 條約의 概要

「CFE I」은 1990년 12월 19일 파리에서 체결되었으며 미국, 독일, 독립국가연합 8개 공화국(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 그루지야, 몰도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 등 29개국이 가입하였고 有效期間은 무기한이며 1992년 7월 17일 발효되었다.

「CFE I 조약」은 ATTU지역내에서 NATO 그룹과 舊 WTO 그룹(each group of states)별로 탱크, 야포, 장갑차, 항공기, 헬리콥터 등 5개 주요 攻擊用 武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 종류의 保有上限線을 설정하였다.

(가) 각 그룹에 대한 全體 上限線

탱크: 20,000대; 야포: 20,000문; 장갑차: 30,000대; 항공기: 6,800대; 헬리콥터: 2,000대.

(나) 각 그룹별 4개 지역에서의 地域上限線

단, 지역상한선은 상비군 보유무기에만 적용된다.

地域 I: (베네룩스 3국, 독일, 체코, 헝가리, 폴란드)

탱크: 7,500대 이하; 장갑차: 11,250대 이하; 야포: 5,000문 이하

地域 II: (지역 I,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벨로루시 군구, 카파티아 군구, 키예프 군구)

탱크: 10,300대 이하; 장갑차: 19,260대 이하; 야포: 9,100문 이하

키예프 군구의 상비군 보유 및 저장 무기의 총수:
탱크: 2,250대 이하; 장갑차: 2,500대 이하; 야포: 1,500문 이하

地域 III: (지역 II, 포르투갈, 스페인, 모스크바 군구, 불가-우랄 군구)

탱크: 11,800대 이하; 장갑차: 21,400대 이하; 야포: 11,000문 이하

周邊地域: (그리스, 노르웨이, 터키, 루마니아, 불가리아, 레닌그라드 군구, 북카커서스 군구, 트랜스카커서스 군구)

탱크: 4,700대 이하; 장갑차: 5,900대 이하; 야포: 6,000문 이하

(다) 제VI조: 充分의 法則

사실상 소련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으로서 한 국가가 保有할 수 있는 武器의 總數는 ATTU 지역내 總武器數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한 국가가 보유할 수 있는 무기의 총수는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탱크: 13,300대; 야포: 13,700문; 장갑차: 20,000대; 항공기: 5,150대; 헬리콥터: 1,500대.

(2) 檢證條項의 特徵

「CFE I 조약」의 검증조항은 <도표 3>과 같이 요약될 수 있으며 도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CFE I 조약」의 검증은 「效果檢證基準」에 해당된다.

〈도표 3〉 「CFE 條約」의 검증시스템

<p><u>檢證 方法</u></p> <p>(1) 通報 및 情報交換</p> <p>(2) 現場檢査</p> <p> (a) 공개장소검査</p> <p> (b) 특별검査</p> <p> (c) 폐기검査</p> <p> (d) 재분류확인검査</p> <p>(3) NTM 및 MTM</p> <p>(4) 空中檢査</p> <p><u>機 構</u></p> <p>(5) 合同諮問團 (JCG)</p>

카. 「戰略武器減縮條約」 (The START Treaty)

「전략무기감축조약」은 1991년 7월 31일 모스크바에서 미·소간에 체결되었으며 현재 비준심의중이고 有效期間은 발효후 15년인데 이후 5년씩 연장이 가능하다. 발효후 7년간 3단계로 나누어 ICBM, SLBM, Heavy Bomber(HB)로 구성되는 戰略核運搬手段 (Strategic Nuclear Delivery Vehicle: SNDV)과 算定(accountable) 핵탄두(nuclear warhead: WH)의 上限線을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第1段階인 발효후 3년까지는 SNDV: 2,100基; ICBM

& SLBM WH: 8,050개; ICBM, SLBM & HB WH: 9,150개로 규제한다. 第2段階인 발효후 5년까지는 SNDV: 1,900기; ICBM & SLBM WH: 6,750개; ICBM, SLBM, & HB WH: 7,950개로 규제한다. 第3段階인 발효후 7년까지는 SNDV: 1,600기 (이중 heavy ICBM은 154기); ICBM & SLBM WH: 4,900개 (이중 mobile ICBM의 WH는 1,000개, heavy ICBM의 WH는 1,540개); HB WH: 1,100개로 규제한다. 운반수단별 규제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탄도미사일

11개 이상의 RV(reentry vehicle)를 보유한 신형 탄도미사일을 금지하고 현존하는 탄도미사일도 기존의 RV수를 초과해서 실험할 수 없다.

- 중형미사일에 대한 규제: 소련의 SS-18을 현재 308기에서 154기로(탄두수는 3,080개에서 1,540개)으로 감축하고 다음 네 가지 制限을 통해 소련의 중형미사일 現代化를 제한하였다: (1) 新重型 ICBM 금지, (2) 이동식 중형미사일 금지, (3) 현존하는 중형미사일의 投下重量(throw-weight), 發射重量(launch-weight), 탄두수의 증가 금지, (4) 11개 이상의 탄두를 탑재한 SS-18미사일은 실험 불가.⁹⁵⁾

95) 「START 조약」에서는 중형미사일에 대한 이와 같은 규제와 더불어 다탄두 순항 미사일과 특이한 基地形態(exotic basing mode)의 금지를 제외하고는 運搬手段(delivery systems)이나 탄두의 現代化를 허용하고 있다.

- 이동식 미사일(mobile missile)에 대한 규제: 이동식 ICBM의 RV 총수를 1,100개로 제한하였다. 비배치 이동식 미사일과 발사대는 다음 保有上限線과 함께 배치미사일의 기지 및 배치지역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거리에 저장하도록 규정하였다: (1) 비배치 이동식 미사일: 250基, (2) 비배치 이동식 발사대: 110基, (3) 비배치 다탄두 철로이동식 미사일: 125基, (4) 비배치 다탄두 철로이동식 발사대: 18基.

(나) 중폭격기

- 核重力爆彈과 단거리공격용 核미사일 (Nuclear Gravity Bombs and Nuclear SRAMs): 핵중력폭탄이나 단거리공격용 핵미사일을 탑재한 폭격기는 1개의 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할인하여 계산함으로써 96대의 B-1B 폭격기는 총 1,536개의 폭탄과 SRAM을 탑재하지만 96개의 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계산된다.
- 空中發射 巡航核미사일 (Nuclear ALCM): 폭격기가 사정거리 600km 이상의 nuclear ALCM을 탑재할 때 「ALCM 탑재용」으로 규정된다. 미국의 경우 최초 150대의 ALCM 탑재용 중폭격기(B-1, B-52)는 10개의 탄두를 탑재한 것으로 계산하되 20개 이상의 ALCM을 탑재할 수는 없다. 소련에 대해서는 최초 210대의 ALCM 탑재용 중폭격기 (Bear and Blackjack bombers)는 8개의 탄두를 탑재한 것으로 계산하되 12개 이상의 ALCM을 탑재할 수는 없다.

이 외에는 실제 탑재된 수대로 계산한다. ALCM의 生産數量에는 제한이 없지만 폭격기 기지근처에는 저장할 수 없다. 核武器를 탑재하지 않는 폭격기와 소련의 Backfire 폭격기는 조약의 規制對象이 아니다(단, 소련은 별도의 합의서에서 공군 300基, 해군 200基로 Backfire 폭격기 수를 제한하고 미국을 공격할 수 없도록 공중급유능력도 부여하지 않기로 하였다). 「START 조약」이 채택식 순항미사일 배치의 금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1988년 미 의회의 「Sense of Congress」 決議案에 따라 채택식 장거리 ALCM은 nuclear ALCM과 외형적으로 구별가능한 경우 개발·배치가 가능하다.

(다) 해상발사 순항미사일(SLCM)

해상발사 순항미사일은 「START 조약」의 1,600 SNDV, 6,000 “accountable” 탄두수 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며 쌍방은 射程距離 600km 이상의 장거리 nuclear SLCM 880基씩 보유할 수 있도록 별도 합의하고 있다. 사정거리 300~600km의 단거리 nuclear SLCM은 제한대상이 아니지만 配置에 관련된 資料는 交換하며 채택식 장거리 SLCM는 제한되지 않는다.

(2) 檢證條項의 特徵

「START 조약」의 검증조항은 〈도표 4〉과 같이 요약될 수 있으며 도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START 조약」의 검증은 「效果檢證基準」에 해당된다.

〈도표 4〉 「START 조약」의 검증시스템

檢證 方法

- (1) 情報交換
- (2) NTM
- (3) 現場檢査
 - (a) 기초검사
 - (b) 변동사항검사
 - (c) 신시설검사
 - (d) 의혹장소검사
 - (e) RV 검사
 - (f) 기지당 이동식 ICBM 수량검사
 - (g) 전환 혹은 폐기검사
 - (h) 시설폐쇄 확인검사
 - (i) 폐쇄예정시설검사
 - (j) 탄도미사일 기술적 특성 확인검사
 - (k) 중폭격기 식별검사
 - (l) 중폭격기 용도전환 기초검사
 - (m) 상주감시
- (4) 協力檢證方案

機 構

- (5) 合同遵守檢査委員會(JCIC)

第 V 章 南北韓 軍備統制 檢證 方向

本 章에서는 검증문제를 남북한 군비통제의 구도내에서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다루고자 한다. 첫째, 국제레짐 이론과 역사 및 사례 연구를 통해 韓半島에서의 檢證을 위해 얻을 수 있는 示唆點을 도출하고, 둘째, 검증에 대한 北韓의 立場을 「정전협정」, 「남북고위급회담」 및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개진된 북한의 태도를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檢證政策 推進方向을 基本 要件과 협상시 考慮事項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협상시 고려사항에서는 한국이 검증에 대해 기본적으로 견지해야 할 12個 檢證原則과 북한의 예상태도에 대한 한국의 對應論理를 소개하고자 한다.

1. 理論 및 歷史와 事例 研究의 示唆點

本 節에서는 검증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검증의 역사와 사례 연구가 한반도 軍備統制 檢證에 주는 示唆點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 국제레짐 이론의 示唆點

(1) 부분안보레짐과 檢證

국가간의 전반적인 安保關係를 하나의 레짐으로 파악하기보다는 부분적인 懸案들로 구성된 모자이크로 간주하고 특정 軍備統制條約을 개별 懸案에 대한 안보레짐, 즉 부분안보레짐으로 규정

함으로써 국가간에 왜 일부 현안에 대해서만 군비통제조약이 체결되었는지를 설명하고 레짐 이론을 개별 軍備統制條約에 적용할 수 있는 根據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국제레짐 이론은 軍備統制條約과 檢證의 關係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인 틀을 제공해주고 있다.

레짐은 레짐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인 原則, 일반적인 차원에서 레짐 참여자들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단순한 행위의 표준인 規範, 구체적인 행동지침으로 조약에 조문화되는 規定 및 규정을 이행하는 行動이나 履行機構로 구성된다. 이러한 레짐의 구조적 측면에서 檢證은 부분안보레짐의 규범선에서 條約의 遵守 與否를 확인하는 정도나 기준을 표시하는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다섯 가지의 검증규범을 상정해 볼 수 있다. 檢證規範은 구체적인 檢證條項의 형태로 條文化되며 조약의 원활한 履行과 遵守紛爭을 해결하기 위한 機構도 마련된다. 조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조약체결의 목적일 수는 없기 때문에 檢證이 부분안보레짐의 原則이 될 수는 없다. 또한 검증은 거의 모든 조약에 포함되는 普遍性을 가지고 있으며 조약의 다른 규범들과 對立關係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안보문제의 重要性和 秘密性, 감시 및 정보획득의 어려움, 條約違反의 여파가 클 수 있다는 問題點 등으로 인해 경제분야의 레짐에서보다는 安保分野의 레짐에서 檢證問題가 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다.

(2) 레짐의 情報提供機能

특정 안보현안에 대해 레짐이 형성되는 경우, 레짐 참여자들은 부분안보레짐을 통하여 情報를 교환하고 주기적인 모임을 개최하는 등 상호 의사소통의 양과 질을 증대시키게 됨으로써 레짐은 情報提供機能을 수행하게 된다. 레짐의 정보제공기능을 통해 레짐 참여자들은 해당 분야에서의 不確實性을 제거하고 透明度를 제고할 수 있다. 따라서 레짐을 통한 開放과 透明度 증대 및 豫測可能性의 향상은 레짐 참여자들간 相互 理解增進과 信賴構築을 촉진하고 「미래의 그늘」을 연장시킴으로써 레짐 참여자들로 하여금 協力을 통한 長期的인 利益의 증대를 도모하도록 유도한다.

레짐이 갖는 정보제공기능의 큰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檢證이다. 조약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검증은 情報交流의 확대를 통해 遵守情報 不均衡을 해소함으로써 레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검증문제의 핵심은 곧 情報問題이며 정보획득이 용이할수록 레짐은 더욱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3) 레짐의 形成

레짐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레짐 자체에 대한 참여자들의 選好度가 「共同利害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각국이 독자적인 군비증강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야기되는 軍備競爭보다 상호 협력과 조정을 통해 軍備統制條約을 체결함으로써 軍備增強을 自制하는 것이 모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 군비통제조약

체결이 가능해진다.

레짐형성의 선호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이기주의적 계산에 의한 國家利益이다. 검증이 부분안보레짐의 규범으로서 국가이익을 결정하는 데 한 가지 요인으로 반영될 수는 있으나 레짐 참여자들간의 보다 포괄적인 政治·經濟·戰略·外交的 要因들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 점은 국가간의 政治的 要因들이 군비통제조약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한 레더먼(Lederman)에 의해서도 강조되었다.¹⁾ 국가이익은 指導者의 교체, 周邊環境의 변화 및 새로운 知識의 개발 등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레짐 자체에 대한 레짐 참여자들의 受容意志가 레짐형성의 先行條件이라는 사실은 참여자들의 選好度 때문에 레짐형성이 불가능한 상황이 조성되었을 경우에는 검증의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되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0년대 초 레이건행정부는 소련과의 군비통제협상에 진전이 없는 이유를 미국이 요구하는 強力한 檢證을 소련이 받아 들이지 않는 데 있다며 검증에 소극적인 소련의 태도를 비난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초 미국은

1) Itshak Lederman, "Verification of Conventional Arms Control Agreements in Europe" (Ph.D. Thesis,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1991), p. 107. 군비통제문제를 결국 상호간에 조약의 체결을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信賴와 기본적인 政治的 關係가 정립되어 있는가 하는 「政治的 解決問題」로 간주하는 의견도 있다. Young C. Kim, "Prospects for Arms Control in Korea," a paper presented at The Third International Defense Conference, KIDA and CSIS, Seoul, November 5~6, 1990, p. 15.

소련과 군비통제조약을 체결하기보다는 軍事力 增強에 더 큰 노력을 기울였으며 미·소간에 긴장이 고조되어 있었다는 사실에서 양국간에는 부분안보레짐을 형성할 與件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 협상부진의 책임을 소련측에 전가하려는 의도에서 검증을 핑계거리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많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레짐형성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레짐 참여자들은 레짐의 일부인 검증과 관련하여 檢證의 規範, 規定 및 履行節次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합의하거나 檢證에 대한 協商을 레짐형성후로 미룰 수 있을 것이다. 조약의 內容이 적용가능한 檢證方法에 맞게 조정되거나 상대방 檢證要求를 일방적으로 受容함으로써 검증이 협상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다.

무리한 檢證手段을 요구하기보다는 시행이 가능한 檢證方法에 맞추어 체결된 조약은 1963년 「部分核實驗禁止條約」(LTBT)이다. 미·소 양국은 처음에는 「全面核實驗禁止條約」(The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CTBT)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다가 지하핵실험은 허용되는 「부분핵실험금지조약」으로 그 범위를 축소하였다. 전면핵실험금지가 실현되지 않은 이유는 소규모 地下核實驗과 地震은 당시 기술수준으로는 거의 구별할 수 없었으므로 지하핵실험금지는 檢證하기가 곤란했다는 것이다.²⁾

2) 다른 이유로는 미국과 소련 모두 核武器 開發을 계속하려는 야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核實驗이 필수적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戰略武器制限協定 II」(The SALT II Treaty)의 경우에도 카터행정부는 채택가능한 검증방법에 의거하여 조약의 實際內容을 협상함으로써 협정의 각 조항이 검증가능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소련과의 협상에 임하였다. 즉 카터행정부는 검증을 협상의 일부로 보고 檢證條項에 관한 協商과 제한이나 금지 등 조약의 실질적인 內容의 協商을 병행해서 추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카터행정부의 이와 같은 협상자세는 레이건행정부에 와서 비판을 받게 되었다.³⁾

상대방의 檢證要求가 일방적으로 받아 들여짐으로써 協商妥結이 촉진된 예로는 1986년 「스톡홀름協約」을 들 수 있다. 미국이 줄곧 주장해온 現場檢査를 주권침해 소지와 간첩행위의 가능성이 있다며 거부해온 소련은 고르바초프 등장이후 現場檢査를 수용하겠다는 積極的인 意思를 표명하였다. 「스톡홀름협약」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조약에 現場檢査가 검증방법으로 採擇된 最初의 事例라는 의의를 갖고 있으며 이후 체결된 「INF 조약」, 「CFE I 조약」, 「START 조약」에서도 현장검사가 중요한 검증방법으로 채택되었다.

조약을 체결하면서 구체적인 檢證條項을 함께 마련하지 못한 채 검증에 대한 협상을 레짐형성후로 미룬 예로는 남북한간에 체결된 「비핵화 공동선언」을 들 수 있다. 남북한은 1991년 12월

3) William Rowell, *Arms Control Verification: A Guide to Policy Issues for the 1980s* (Cambridge, Mass.: Ballinger Publisher Company, 1986), p. 95.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기본합의서」를 채택하여 남북간에 緊張緩和와 平和定着을 위한 새로운 契機를 마련하였지만 核問題에 대해서는 合意導出에 실패하였다.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핵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데 대한 국제적인 우려속에서 남북한은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⁴⁾ 「비핵화 공동선언」이 타결되었으나 宣言의 履行을 확인하기 위한 檢證問題는 추후 회담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선에서 합의하였다. 남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 제4항에서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해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고 합의함으로써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후 이 기구에서 査察規定 마련을 위해 협상할 것을 명시하였다.

(4) 레짐의 變化

레짐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다. 우선 레짐 형성의 중요 요인인 이기주의적 계산에 의해서 國家利益이 변할

4) 1991년 12월 18일 盧泰愚 大統領은 “이 시각, 우리나라의 어디에도, 단 하나의 核武器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한국의 核不在를 공식 선언하였다. 「朝鮮日報」, 1991년 12월 19일자. 반면에 북한은 1991년 12월 26일 개최된 제1차 핵관련 대표접촉에서 이전의 비핵지대화 주장을 철회하고 한국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한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초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이 제안에서 核再處理施設 및 濃縮施設의 拋棄를 제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종래 주장하던 핵우산보장 협정금지, 핵무기탐재가능 항공기와 합선의 출입·통과·방문 금지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전성훈, “核問題에 대한 北韓의 立場과 韓半島 非核化 展望,” 「제5회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집」(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p. 8.

경우, 새로운 레짐을 형성하거나 이미 생성된 레짐을 변화시킬 수 있다. 국가이익에 대한 인식은 새로운 思考를 가진 政治엘리트의 등장, 레짐이 존재하는 경우 레짐의 규범에 영향을 주는 周邊環境의 변화 및 새로운 情報習得과 知識開發을 통한 學習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 또한 조약이 상호 모순되는 내용을 담고 있거나 條約文案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 레짐의 변화를 원하는 레짐 참여자가 조약의 허점을 이용할 수도 있다.

나. 歷史와 事例 研究의 示唆點

(1) 國際關係와 檢證의 函數關係

검증의 역사 고찰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전반적인 國際關係의 흐름과 軍備統制 및 檢證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부분안보레짐 형성의 先行條件은 레짐 참여자들의 이기주의적 계산에 기초한 選好度인데 전반적인 국제관계를 결정짓는 政治·經濟·軍事·外交的 要因들이 선호도에 반영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우호적인 국제관계에서는 검증이 쟁점화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많은 군비통제조약이 체결되었으며, 國際關係가 冷却되었을 때는 군비통제협상도 진전을 보지 못했고 檢證은 오히려 협상의 障礙要因으로 부각되었을 뿐이다.

제2차 세계대전후 냉전기간중에 미·소를 중심으로 全般的이고 完全한 軍縮 및 이에 대한 檢證論議가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檢證과 검증될 對象 合意의 先後問題를 놓고 의견이 대립되었으며 1957년에 체결된 「남극조약」과 같이 군사적 의미가 없는 상징적

인 조약을 제외하고는 결실을 거두지 못하였다. 이 기간중에 제외되었던 「바루치計劃」과 「領空開放提案」의 실패는 주목할 만하다. 미국이 核技術獨占 포기를 약속하며 제의한 「바루치계획」은 당시 미국에 비해 核技術이 劣勢에 놓여 있던 소련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서로의 영토를 포괄적으로 空中檢査할 것과 軍事施設에 대한 情報交換을 골자로 한 「영공개방제안」도 전반적인 군사력에 있어 미국에 비해 뒤져 있던 소련의 거부로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쿠바미사일 위기이후 냉전체제가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1963년 「部分核實驗禁止條約」을 시발로 많은 조약이 체결되었다. 동·서양 진영의 관계가 냉전체제에서보다 개선되었으나 浸透性이 강한 現場檢査를 허용할 수 있을 정도의 信賴가 조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영토·영공·영해를 침범하지 않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人工衛星의 開發이 조약체결의 커다란 촉매역할을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새로운 긴장관계가 조성되면서 군비통제와 검증에 대한 협상은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강력한 檢證要求는 기존의 不信을 악화시키는 악재로 작용하였다.

軍備統制 및 檢證 協商은 고르바초프 등장이후 미·소간 새로운 協力關係가 형성되면서 진전을 보게 되었다. 1985년 3월 집권한 고르바초프가 주도한 軍縮 이니셔티브는 1986년 「스톡홀름 협약」에 이어서 1987년 12월 군축 역사상 최초로 한 종류의 무기를 전면 폐기하는 「INF 條約」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과거 데탕

트시대보다 더욱 발전된 국제관계속에서 「CFE I 조약」과 「START 조약」이 체결될 수 있었다. 특히 「스톡홀름협약」에서부터는 그 동안 검증협상에서 쟁점이 되어 왔던 現場檢查實施가 허용됨으로써 군비통제 검증협상의 마지막 걸림돌마저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1992년 3월 24일 헬싱키에서는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25개국이 「領空開放協定」을 체결함으로써 國際關係의 진전과 軍事的 開放 및 檢證의 相關關係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2) 社會體制와 檢證의 關係

미국과 舊소련의 검증에 대한 입장을 검토한 결과 사회체제와 검증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국가의 사회체제가 開放될수록 檢證을 重要視하고 강력한 檢證裝置의 必要性을 강조하는 반면, 閉鎖된 社會일수록 檢證에 대해 消極的인 立場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개방된 자유민주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폐쇄사회에서보다 輿論과 國會의 影響力이 크기 때문에 행정부는 군비통제조약을 체결하면서 조약이 國家安保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고 자국의 국회와 국민에게 체결된 조약을 지지해 줄 것을 說得하기 위한 手段으로 조약이 충분히 檢證可能하다는 사실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개방된 사회에서 違反의 可能性이 더 적다는 점이다. 개방사회에서는 國民的 合意없이는 조약을 위반한다는 것이 불가

능하며 조약이 비밀리에 위반되더라도 이는 곧 탐지될 뿐만 아니라 행정부에 미치는 정치적 타격이 매우 클 것이다. 반면에 중앙집권적 폐쇄사회에서는 집권층이 條約違反을 결심하면 이를 쉽게 실행할 수 있을 것이며 외부에 노출되기도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폐쇄사회는 개방사회에 대한 강력한 검증요구를 요구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開放社會의 檢證要求를 차단하기 위해서 檢證에 消極的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개방사회에서는 情報交流가 활발하고 言論의 活動이 자유롭기 때문에 폐쇄사회는 이미 공개된 자료를 이용하여 개방사회에 대한 많은 情報를 수집할 수 있다. 반면에 개방사회는 폐쇄사회에 대한 매우 기초적인 정보습득에도 어려움을 겪게 됨으로써 검증을 위한 情報獲得의 측면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넷째, 檢證은 곧 公開를 의미하므로 秘密性에 가치를 두고 있는 폐쇄체제의 입장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폐쇄체제는 검증이 開放과 透明度 증대효과를 가져옴으로써 體制에 미칠 波及效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3) 戰略的 均衡과 軍備統制條約 締結

군비통제협상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은 협상 당사자간에 協商對象 武器에 대한 均衡이 달성되어야 조약체결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均衡 達成이 군비통제조약 체결의 요건이라는 사실은 열세에 놓여 있던 소련의 戰略 核戰力이 1970년대 초에 미국

과 均衡을 이루게 됨으로써 「SLAT I 조약」이 체결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특히 「SALT I 조약」이 발사대를 규제대상으로 한 점은 인공위성 등 國家技術手段(NTM)에 의한 검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협상타결의 促進要因이 되었다. 「부분핵실험금지조약」은 미·소 양측이 지하핵실험 기술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균 및 독성무기 금지협정」은 양측이 이들 무기를 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 能力의 均衡狀態에서 체결될 수 있었다. 「INF 조약」이나 「START 조약」에서도 어느 일방이 戰略적으로 크게 劣勢에 놓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조약체결의 주요 背景이었다.

(4) 軍備統制와 檢證에 대한 政策決定者의 意志

군비통제와 검증은 상대방과의 協商에 의해 타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결국 政治的인 問題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군비통제와 검증에 대한 최고 정책결정자의 意志가 협상결과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은 再論의 여지가 없다. 미국의 닉슨대통령은 1969년 「SALT I」 협상대표에게 시달한 지침을 통해 「適切檢證基準」을 최초로 구체화시켰으며 그의 힘의 優位 政策과 對蘇 強硬 이미지로 인해 미 행정부가 조약체결과 검증 능력에 대한 國民의 信賴感을 얻게 된 것은 조약비준의 肯定的인 要因으로 작용하였다.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취임후 改革과 開放을 표명하며 소련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그의 새로운 정책은 軍備統制分野에서도 과격적인 軍縮政策과 강력한 檢證選好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정책결정자의 이러한 意志

가 1986년 「스톡홀름協約」이후 군사적으로 의미있는 軍備統制條約 체결과 효과적인 檢證制度 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5) 檢證에 대한 國際社會의 認識

군비통제 역사와 사례연구를 통해 검증에 대한 國際社會의 認識이 많이 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이고 완전한 軍縮論議時代를 전후해서 조약체결시 檢證의 必要性이 인정되었으며 당시의 유일한 검증방법인 現場檢査와 같은 檢證方法이 제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前提條件으로 제시된 포괄적 군축제안의 非現實性, 협상 당사자간의 緊張과 不信, 검증대상과 검증제도 합의의 先後問題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의미있는 檢證制度가 확립될 수 없었다. 그러나 데탕트시대에는 군사적 의미는 적을지라도 여러 가지 조약들이 체결되었으며 각 조약마다 적절한 검증제도가 포함됨으로써 檢證이 軍備統制의 필수불가결한 要素라는 認識이 국제사회에 자리잡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레이건행정부 등장이후 檢證의 必要性에 대한 國際的 共感帶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나 미·소를 중심으로 檢證의 受容程度問題에 이견이 표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도 고르바초프가 등장하여 검증협상의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現場檢査를 수용함으로써 해소되었다.

검증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검증이 국제적인 관심사항임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UN의 16個

檢證原則을⁵⁾ 소개·분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캐나다 정부의 주도하에 1988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16개 검증원칙은 多者間軍縮協定에 중점을 두고 있는 UN의 특수한 입장이 일부 반영되었지만 강력한 검증을 추구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UN도 適切하고 效果的인 檢證을 지지한다는 立場表明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각국의 檢證政策 수립을 위한 方向을 제시해 준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16개 검증원칙과 각 원칙에 대한 필자의 해설은 아래와 같다.

(a) 적절하고 효과적인 檢證이 軍備統制條約의 필수요건임.

적절하고 효과적인 검증이란 1970년대의 데탕트시대에 「SALT I, II 조약」을 중심으로 확립되었던 適切한 檢證基準과 레이건행정부의 주도로 「INF 조약」에서 구체화된 效果的인 檢證基準의 특징을 포함하는 형태라고 해석될 수 있다.

(b) 檢證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軍備統制過程의 필수적인 요소임.

검증은 군비통제조약의 協商 및 施行過程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군비통제과정의 필수적인 요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검증이 군비통제조약을 체결하는 目的 자체는 될 수 없다. 검증을 조약체결의 목적으로 간주하게 될 경우 조약의 실질적인 내용보

5) Department for Disarmament Affairs, "Verification and Compliance," *The United Nations Disarmament Yearbook* (New York: United Nations, 1989), pp. 132~134.

다는 檢證可能性을 더욱 강조함으로써 비현실적인 무리한 檢證要求로 인해 협상 자체가 결렬될 가능성이 크다.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상대방의 일거수 일투족을 100% 확인할 수 있는 완벽한 검증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필요하지도 않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검증 자체를 조약체결의 목적으로 오인해서 야기되는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c) 檢證은 군비통제조약의 이행을 촉진시켜야 하며 信賴를 구축하고 조약이 모든 當事者에 의해 遵守되고 있다는 確信을 주어야 함.

조약의 遵守 與否를 확인하기 위한 檢證裝置와 遵守問題 발생시 협의·해결을 위한 協力機構는 조약준수를 촉진시키고 이에 대한 확신을 줌으로써 국가간의 信賴를 증진하고 더 나아가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軍備統制條約을 체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d) 적절하고 효과적인 檢證을 위해서는 國家技術手段, 國際技術手段, 기타 國際的 節次 및 現場檢査와 같은 다양한 方法이 사용되어야 함.

검증의 효과를 최대한도로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수단이나 국제기술수단, 현장검사 및 우방국으로부터의 도움 등 動員possible한 手段과 節次가 복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한 가지 방법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함께 적용하는 것이 각 방법의 脆弱點을 補完함으로써 上昇效果(synergistic ef-

facts)를 가져와 檢證의 效果를 極大化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상승효과는 특정 檢證方法 i 에 대한 檢證效果를 e_i 라고 할 때 첫 번째 검증방법에서부터 n 번째 검증방법을(즉, $i = 1, \dots, n$)이 용한 전체적인 검증효과 E 는 개별 검증방법이 가져오는 개개의 효과 e_i 의 합보다 크거나 최소한 같다는 것이다. 수학적으로는 $E \geq \sum_{i=1}^n e_i$ 로 표시될 수 있다.

(e) 軍備統制 檢證은 사회가 開放化됨으로써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음.

군비통제 검증은 곧 情報獲得의 문제이므로 수검국 사회의 開放程度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우선 수검국이 閉鎖된 중앙집권적인 社會인 경우, 수검국 정부 당국자들이 國民輿論에 크게 구속받지 않음으로써 조약을 위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론과 의회가 행정부내의 의사결정 과정에 활발히 참여하는 개방사회에서보다 크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開放된 社會일수록 여론, 의회 및 각종 언론 매체의 자체 監視機能이 활발하여 군비통제조약이 安定的으로 지켜질 수 있다. 또한 개방된 사회일수록 정부간행물이나 각종 잡지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해 군비통제조약에 관련된 情報가 자유롭게 提供됨으로써 개방된 사회에 대한 검증이 수월하다.

(f) 군비통제조약에는 합의된 檢證方法, 節次, 技術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명확한 條項이 포함되어야 함.

군비통제조약의 검증조항에는 특정 檢證方法의 사용에 대한

습意 뿐만 아니라 합의된 檢證方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해당 검증방법의 사용이 妨害되거나 干涉받아서 안된다는 점도 분명히 명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인공위성을 공격하여 인공위성의 기능을 정지시키거나 항공정찰의 경우 항공기의 진로를 방해하여 공중검사를 실시할 수 없게 하는 행위 등은 명백히 금지되어야 한다.

(g) 군비통제조약에는 檢證을 방해하는 計劃的인 隱蔽裝置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條項이 명시되어야 함.

군비통제조약에는 검증의 목표물을 隱蔽하여 정확한 遵守情報 획득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檢證手段의 機能을 방해하는 행위의 禁止條項도 명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인공위성이나 공중검사에 의한 사진촬영을 방해하기 위해 장막이나 지붕을 사용하는 행위나 특정 지역에 위치하거나 폐기해야 할 무기들을 다른 은밀한 장소에 숨겨두는 행위가 은폐에 해당된다.

(h) 검증시스템의 지속적인 適切性和 效率性を 검토하고 평가하기 위한 節次와 裝置가 군비통제조약에 포함되어야 함.

군비통제조약을 實行하는 過程에서 채택된 檢證方法의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으며 보다 효과적인 改善案이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檢證方法이 개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이 반영될 수 있는 制度的 裝置가 조약에 포함되어야 한다.

(i) 검증에 관한 論議는 특정 군비통제조약 協商始作부터 每段階에서 논의되어야 함.

검증에 대한 논의는 군비통제조약 협상이전에 혹은 군비통제조약의 실질적인 내용 합의후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군비통제조약의 協商과 同時에 시작되어야 한다. 즉 군비통제조약의 각 條項 協商과 관련 檢證條項의 協商이 긴밀한 관계속에서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j) 모든 국가는 그들이 체결한 조약의 國際的 檢證過程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權利를 가짐.

특히 다자간 군비통제조약에서 기술적으로 진보된 檢證手段을 보유한 특정 국가들이 檢證施行 權限을 獨占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모든 조약가맹국들은 互惠平等의 원칙하에 동등하게 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k) 적절하고 효과적인 검증은 適時에 遵守 與否에 대한 확실한 情報를 줄 수 있어야 하며 준수에 관한 持續的인 確信은 신뢰를 쌓아 나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

적절하고 효과적인 검증에서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違反이 오랫동안 探知되지 않음으로써 조약을 준수하고 있는 國家의 安保가 위협받아서 안된다. 준수에 관한 정보는 適時에 그리고 持續的으로 제공되어야 검증이 信賴構築機能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l) 특정 검증방법의 適切性, 效率性, 受容可能性에 대한 決定은 개별 군비통제조약의 內容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

특정 검증방법의 적절성, 효율성, 수용가능성을 평가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개별 條約의 具體的인 內容에 기초하여 決定되어야 한다. 이는 「어떤 한 가지 검증방법이 모든 군비통제조약에서 효과적일 것」이라는 檢證方法 채택의 一般的인 原則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NTM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발사장치와 같은 고정된 대규모 구조물의 검증에는 적합할지 모르나 탱크나 장갑차, 항공기와 같은 기동성있는 재래식 무기나 소규모 화학·생물 무기의 생산과 저장을 감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들 무기의 생산이나 저장의 검증을 위해서는 現場檢査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m) 검증은 군비통제조약 加盟國에 의해, 혹은 가맹국 동의하에 關聯機構의 요청에 의해 행해지는 행위이며 가맹국 主權의 표시임.

군비통제조약의 검증은 條約加盟國이나 조약을 통해 檢證權限이 부여된 國際機構에 의해 행해지는 정당한 과정이며 조약가맹국들이 행사할 수 있는 主權의 표시이다.

(n) 군비통제조약에 의거하여 檢査의 實施나 情報를 요청하는 것은 검증과정의 정상적인 구성요소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청은 遵守 與否의 決定에만 쓰여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안됨.

군비통제조약에 따라 행해지는 檢査나 關聯情報의 要請은 정상적인 檢證過程의 일부로 받아 들여져야 하며 수검국은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또한 이러한 검사나 정보의 요청이 군비통제 조약의 遵守 與否를 확인하는 이외의 목적으로 오용되어서도 안된다. 이와 관련하여 검증과정에서 얻어질지도 모르는 민감한 産業情報의 유출을 막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안전검사 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를 제3국에 비밀로 하고 있다.

- (o) 검증은 각 對象國에 대해 差別없이 행해져야 하며 대상국의 內部問題에 필요이상 간섭하거나 경제·기술·사회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피해야 함.

검증은 차별없이 동등하게 실시되어야 하고 主權侵害 소지가 없도록 수검국의 내부분제에 필요이상으로 간섭해서는 안된다. 또한 검증이 수검국의 경제·기술·사회발전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이용되어서도 안된다.

- (p) 적절하고 효과적인 검증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 군비통제 조약에서 채택된 檢證制度가 모든 관련무기, 시설, 장소, 설비 및 행위를 남김없이 다루어야 함.

군비통제조약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무기, 시설, 장소, 설비 및 행위에 例外를 두게 되면 그 만큼 조약과 檢證의 效果는 약화된다. 예를 들어 「CFE I 조약」은 우랄산맥 동쪽지역의 재래식 무기에는 전혀 제한을 가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CFE I 조약」이 유럽의 재래식 무기 감축에는 어느 정도 기여하게 되지만 소

련의 동부지역에는 상당수의 재래식 군사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2. 檢證에 대한 北韓의 立場

군비통제 검증의 核心은 규제대상 시설이나 무기를 外部에 公開함으로써 군사분야에서의 開放과 透明度를 증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근본적으로 體制開放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檢證에 대한 北韓의 立場 역시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북한은 군축협상을 제의하면서⁶⁾ 혹은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간헐적으로 검증문제를 언급하였지만 檢證에 대해 公式적으로 具體的인 立場을 밝힌 적은 없다.⁷⁾ 따라서 검증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는 과거에 사찰이 실시되었던 「停戰協定」과 현재 진행중인 「남북고위급회담」 및 「남북핵통제 공동위원회」에서 진행중인 남북한 相互核査察協商에서 개진된 북한의 態度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 本節에서는 북한이 검증에 대해 否定的인 立場을 취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상의 예에서 나타난 北韓의 態度를 검토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6) 예를 들어 1988년 11월 7일 북한은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 평화방안을 제의하면서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권능을 확대하여 미군무력 철수 정형과 남북무력 감축정형을 위한 검증을 실시하자고 제안하였다.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89」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9), pp. 150~154.

7) 그 동안 남북한간에 軍備統制協商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한국도 몇 가지 檢證方案을 제시한 적은 있으나 政策的 次元에서 具體的인 立場을 표명한 적은 없다.

가. 停戰協定

정전협정중에서도 檢證問題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中立國監督委員會」(이하 「중감위」)관련 조항이다. 「중감위」는 한국 의부로부터의 增援軍 搬入中止(정전협정 13항 ㄷ목)와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탄약 搬入禁止(정전협정 13항 ㄹ목)에 대한 遵守 與否 검사와 군사정전위원회가 요청하는 비무장지대 이외의 지점에 대한 特別査察(정전협정 28항)을 실시하도록 정전협정에 규정되어 있다.⁸⁾

그러나 「중감위」의 活動은 공산측의 조직적인 違反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우선 정전협정 발효후 한 달만에 스위스와 스웨덴 대표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⁹⁾ 첫째,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는 中立的 態度를 취하지 않았다. 둘째, 북한에서는 指定된 場所(신의주, 청진, 흥남, 만포, 신안주) 이외의 지역에서 物資와 人員의 출입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에 관한 情報은 북한의 報告에만 의존해야 했다. 셋째, UN군측의 檢査要請 대부분이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의 反對로 거부되었다.

1954년 2월 12일 중국과 북한은 북한이 MiG-15機를 반입했다는 UN군측 主張이 허위이기 때문에 UN군이 요청하는 移動檢査

8) 停戰協定에 대한 북한의 査察履行實態를 다룬 저서로는 Han Yong-Sup, *Designing and Evaluating Conventional Arms Control Measures: The Case of the Korean Peninsula* (Santa Monica: The RAND Corporation, 1991), pp. 42~45.

9) David Wainhouse, et al., *International Peace Observation: A History and Forecast* (Baltimore: Johns Hopkins Press, 1966), pp. 346~353.

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선언하였으며 이 후로 북한에 대한 査察回數는 크게 줄어들었다. 1954년 4월 14일 스위스와 스웨덴 「중감위」 위원들은 북한과 UN군 사령부에 「중감위」 活動의 中斷을 제의하기도 하였다. 1955년 2월 21일에는 북한에서 불법으로 반입된 MiG機 88대가 발견되었는데 이 사건후 같은 해 8월 16일 덜레스(Dulles) 미 국무장관은 「중감위」가 쓸모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¹⁰⁾

1956년 6월 5일 「중감위」는 남북한에 상주하던 각각 3개 檢査所(1954년에 각각 2개의 상주검사소가 해체됨)의 撤收를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으며 이후 「중감위」 활동은 상대방이 제공하는 情報蒐集에 국한됨으로써 사실상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¹¹⁾ 결국 1957년 7월 21일 UN군 사령부는 제75차 회의에서 북한의 軍事力과 均衡을 이룰 때까지 정전협정의 군비통제관련 조항을 遵守할 수 없다고 宣言하였으며 「중감위」의 檢査活動은 완전히 終結되었다.¹²⁾

「중감위」 사례는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하면서 軍事力 增強을 꾀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確認하려는 한국과 UN군측의 노력은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 폴란드, 체코스로바키아의 조직적인 방해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

10) U.S. Department of State, "Reply to Sweden and Switzerland on Korean Supervising Commission," *Bulletin*, Vol. 32 (1955), p. 429.

11) UN General Assembly, A/3167, August 16, 1956, p. 6 (mimeo).

12) UN General Assembly, A/3631, August 13, 1957, p. 1 (mimeo).

후 수십년간 남북간에는 검증문제를 논의할 만한 與件이 마련되지 않았다. 남북고위급회담이 시작된 최근에서야 남북한은 軍備統制 및 軍縮의 可能性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검증문제도 미약하나마 언급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 南北高位級會談

북한은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軍事的 對決狀態를 해소하기 위한 方案을 제시하면서 “상대측 지역에 대한 호상 현지시찰을 통하여 군축합의 리행 정형을 검증한다”¹³⁾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며 이후의 고위급회담에서도 검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제1차 고위급회담에서 “군축과정에서의 合意事項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現場檢證과 監視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합니다”라고 주장하며 共同檢證團과 常駐監視團의 구성·운영을 요구하였고¹⁴⁾ 이후의 협상에서도 계속 檢證問題를 언급하면서 검증을 남북간 합의사항의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이 軍事的 開放 및 檢證에 소극적이라는 사실은 「기본합의서」의 남북불가침부분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所管任務를 합의하는 과정에 잘 나타나고 있다. 남북한은 주요 軍事移動과

13) 연형묵 총리 기초연설문, 「로동신문」, 1990년 9월 6일자.

14) 강영훈 총리 기초연설문, 「남북대화: 제51호」 (서울: 국토통일원, 1990), p. 61.

訓練의 상호 통보 및 통제를 비롯한 5개 방안에 합의하였으나 군사훈련·이동에 대한 參觀團 招請은 북한의 완강한 거부로 합의되지 못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信賴가 전무하다시피한 군비통제의 初期段階에서 상호 참관단 초청도 없이 구체적인 검증이 실시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軍事施設에 대한 북한의 開放拒否態度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지난 40년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를 지속해 온 북한은 體制維持 및 國家安保와 직결되어 있는 軍事分野의 開放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經濟難으로 인해 북한의 軍事力이 인적·기술적 측면에서 남한에 비해 크게 뒤져 있다는 사실이 공개될 경우 북한은 남북대화에서 主導權을 빼앗김과 아울러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吸收統合의 실현가능성을 우려할 수도 있다. 셋째, 북한군내의 拒否感이다. 적대논리에 입각하여 교육받은 북한군에게 미제국주의의 하수인인 南韓의 軍人들이 자신들의 軍事訓練을 참관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남북한은 제5차 南北高位級會談에서 「기본합의서」의 불가침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실천방안의 하나로 「檢證」을 채택하였지만 이는 단순한 原則的 合意이며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기본합의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북한의 거부에 부딪혀 상주감시소 설치 주장을 철회해야 했다는 사실은 북한의 開放拒否的 姿勢가 앞으로의 남북한 군비통제 검증협상에 가져올

어려움을 예고하는 전주곡으로 보인다.

다. 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는 남북간에 檢證協商이 이루어진 최초의 회의로서 검증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남북한은 현재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을 檢證하기 위한 相互査察規定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중이다. 북한은 그들이 주장하는 「疑心同時解消原則」에 의거하여 한국이 북한의 영변을, 북한은 남한내 모든 주한미군 군사기지를 사찰하는 非對稱査察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相互主義에 입각하여 쌍방의 연간 査察回數는 동일해야 한다는 「相互同數原則」을 주장하며 쌍방의 핵시설 對 핵시설, 군사기지 對 군사기지의 對稱査察을 제의하고 있다. 한국은 또한 24시간이라는 단기간의 사전통보하에 상대방의 특정 지역을 사찰할 수 있는 特別査察制度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시설이나 군사시설의 여부를 막론하고 자국의 시설이 相互査察對象이 되는 것에 대해 否定的인 立場을 견지하고 있다. 핵시설의 경우, 북한은 영변 이외에 평양, 순천, 평산, 박천 등지에도 核關聯 施設이 존재한다고 IAEA에 보고하였지만 남북한 相互査察協商에서는 영변에 소재하는 시설만을 사찰대상으로 공개할 것을 고집하고 있다. 군사시설에 대해서도 북한은 핵통제공동위원회 査察의 對象은 核武器와 核基地이므로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 북한의 軍事施設은 相互査察對象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자국의 군사시설에 대해 단기간내에 奇襲的인 查察이 가능한 한국의 特別查察提議를 완강히 거부하였다.

군사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남북간 交流·協力分野에서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전반적인 開放拒否的 姿勢로 미루어 볼 때 북한으로서는 검증이 그들 체제에 미치는 波及效果를 최소화하기를 원할 것이다. 북한이 검증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檢證에 否定的인 立場을 취할 것이라는 豫測은 이와 같은 판단에 근거한다. 따라서 검증에 대한 남북한 協商展望이 현재로서는 매우 어두운 것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예상은 상호핵사찰협상에서 북한이 보여준 消極的 態度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현재 남북한은 國家技術手段(NTM)과 같은 원거리 정찰위성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검증에 대한 남북간의 논의는 現場檢査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장검사는 浸透性이 가장 큰 검증방법으로서 검증의 公開性과 開放效果가 체제에 미칠 여파를 우려하는 북한이 가장 받아 들이기 힘든 방법이라는 점에서 남북한 검증협상의 問題點이 되고 있다.

미·소간의 군비통제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現場檢査 受容 與否는 수검국의 體制開放程度와 직결되어 있으며 검증관련 논쟁의 核心이었다. 현장검사에 대한 미·소 양측의 상반된 입장은 고르바초프가 등장하여 소련의 폐쇄적인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고르바초프는 집권이후 과감한 軍備統制政策을 추진하였으며 그의 改革과 開放政策은 검증, 특히 現場檢

査에 대한 소련의 態度에도 變化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러한 소련의 입장변화로 1986년 9월 「스톡홀름협약」이 체결될 수 있었으나 이 협약의 협상에서도 현장검사가 마지막까지 걸림돌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은 군비통제조약 체결시 現場檢査에 대한 合意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남북한간 검증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게 한다.

3. 韓國의 檢證政策 推進方向

本節에서는 이론 및 역사와 사례의 시사점과 검증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의 檢證政策 推進方向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과의 군비통제 검증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한국이 고려해야 할 檢證政策 樹立의 基本 要件을 소개하겠다. 둘째, 향후 군비통제협상에서 한국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한국이 기본적으로 견지해야 할 12個 檢證原則과 북한의 豫想態度에 대한 한국의 對應論理를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檢證方法 確保方案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 基本 要件

(1) 協商環境 造成

국가간의 우호정도와 군비통제 및 검증협상의 타결가능성이 함수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역사와 사례 고찰을 통해 살펴 본 바

있다. 현재 남북한은 對決構造의 청산과 平和共存의 시대로 나아가는 전반적인 세계정세에 편승하여 1990년 10월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시작으로 和解와 協力の 可能性을 조심스럽게 모색하고 있다. 1992년 2월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 「기본합의서」가 발효되면서 각종 분과위원회와 공동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남북관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한은 관계개선의 출발점에 있을 뿐이며 가장 민감한 軍事分野에서 條約이 체결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분야에서의 활발한 交流·協力を 통하여 不信과 敵對感을 해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간의 전반적인 관계개선을 통하여 양측의 選好度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쌍방의 안보에 덜 민감한 특정 분야에서 부터(예: 군사훈련과 이동의 상호 통보 및 참관) 부분안보레짐의 형성이 가능해질 것이다.

(2) 北韓體制의 開放誘導

군비통제 협상환경이 조성되더라도 남북한 社會體制의 差異로 인해 檢證協商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미·소간 군비통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실이다. 북한체제의 開放誘導는 보다 광범위한 對北戰略次元에서 다루어 지겠지만 북한의 개방이 검증협상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는 점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3) 選別的인 軍現代化計劃 推進

군비통제조약 체결의 주요 要件의 하나는 해당 분야에서 협상

당사자들의 戰力이 대체적인 均衡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북한과의 군비통제협상 議題로 삼으려는 분야에서 戰力 不均衡을 심화시키는 戰力增強政策을 추진할 경우 軍備統制協商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은 향후 북한과 군비통제협상을 하고자 하는 분야와 북한과의 협상대상이 될 수 없는 분야를 미리 선정하고 選別的으로 軍現代化計劃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政策決定者의 意志

군비통제협상은 政治的인 問題로서 정책결정자의 意志가 협상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정책결정자는 군비통제와 검증에 대한 확고한 信念과 意志를 갖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군비통제조약 체결시 정책결정자는 條約이 갖는 軍事的인 意味 뿐만 아니라 조약체결이 수반하게 되는 信賴構築 효과, 상징적인 關係改善 효과 등 부수적인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책결정자는 조약체결이 갖는 부수적인 효과가 크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조약의 검증조항이 不充分하더라도 융통성을 발휘하여 조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5) 國際環境 造成

군비통제와 검증에 대한 國際的인 環境은 한국에 매우 有利하게 조성되고 있다. 군사적으로 의미있는 여러 가지 군비통제조약의 체결로 상징되는 전반적인 國際關係의 개선은 外交的 孤立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壓力要因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틀림

없다. 검증에 대한 국제적 입장 역시, UN의 16個 檢證原則에서 볼 수 있듯이 強力한 檢證을 선호하는 추세이며 이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은 UN이나 각종 국제회의를 통해 검증에 대한 국제적 추세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다양하게 표출하고 북한이 한국의 입장을 수용하도록 周邊與件을 조성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나. 協商時 考慮事項

(1) 檢證 原則

일관성있는 검증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검증에 대한 基本的인 原則을 수립하고 이를 향후 軍備統制 檢證協商의 指針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검증에 대한 한국의 기본 원칙은 한국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어야 하지만 국제적인 흐름을 거역해서도 안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일부 檢證原則은 UN의 검증원칙과 내용상 重複되는 것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한국의 12개 검증원칙을 소개하고 해설을 첨부하였다. 각 원칙에 대한 해설은 檢證協商時 북한이 원칙에 違背되는 主張을 할 경우 이에 대한 對應論理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가) 檢證은 軍備統制條約의 필수불가결한 要素이다.

군비통제조약은 잠재적 혹은 현실적 적대자간에 戰爭勃發의 위험을 줄이고 軍事的 安定을 증진하며 군사활동에 대한 豫測 可能性과 透明度를 증대하기 위해 체결되는 국가간의 약속이다.

군비통제조약이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주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檢證이 반드시 조약내에 制度化되어야 한다. 특히 군사 및 안보문제의 重大性, 사안의 秘密性, 이에 따른 情報獲得의 어려움, 조약위반시 야기될 수 있는 危險度에 대한 우려 때문에 軍事分野에서는 다른 분야에서보다 檢證문제가 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다.

(나) 檢증은 主權을 侵害하거나 內政을 干涉하는 것이 아니다.

檢증은 조약체결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준수에 관한 情報 不均衡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절차이다. 그러나 檢증이 수검국의 內部問題에 필요이상으로 간섭함으로써 經濟·社會發展을 沮害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檢증을 받는 수검국도 檢증이 主權을 侵害하고 間諜行爲를 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檢증은 서로에 대한 疑惑을 해소하고 理解를 증진하며 信賴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檢證에 대한 보다 肯定的인 思考가 필요하다. 또한 檢증이 상대방의 조약위반을 전제로 이를 탐지하는 장치가 아니라 條約遵守를 前提로 이를 입증하는 信賴構築에 중점을 둔 제도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 檢증은 합법화된 간첩행위가 아니며 檢證을 통해 획득된 情報는 본래의 目的과 달리 오용되어서는 안된다.

檢증이 조약준수 확인과 관련이 없는 情報를 수집하는 데 오

용된다면 검증을 통한 信賴構築은 달성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검증활동은 조약의 履行을 確認하는 데 필요한 事項들에 초점을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검증을 실시하면서 군비통제조약의 검증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附隨的인 情報의 획득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에 검증이 간첩행위라는 不必要한 誤解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검증을 통해 얻어진 정보가 조약의 遵守 與否를 確認한다는 본래의 目的과 달리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效果的이고 信賴할 수 있는 檢證이 실시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검증기준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要件이 충족됨으로써 확보가능하다: (1) 군사적으로 중요한 조약위반 뿐만 아니라 사소한 위반도 意圖的일 경우 정치적으로 重要的 違反으로 간주, (2) 검증방법상 수검국에 대한 浸透性이 가장 큰 現場檢査 채택. 검증실시는 또한 信賴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즉 각국은 검증을 통해 상대측의 條約遵守 與否를 확인할 수 있다는 신뢰를 가져야 하며 각국의 국민도 검증을 통해 상대방의 條約違反 可能性을 억제함으로써 자국의 安保가 威脅받지 않는다는 信賴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마) 검증은 軍備統制條約 協商始作段階에서부터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검증은 구체적인 조약의 내용을 협상하기 전에 혹은 조약이 체결된 후에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條約의 協商과 동시에 並行

해서 논의되고 조약에 條文化되며 함께 실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비핵화 공동선언」은 커다란 誤謬를 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을 체결하면서 檢證規定도 동시에 合意한 것이 아니라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한 후 여기에서 檢證制度 마련을 위한 協商을 하기로 하였다. 1992년 3월 14일 핵통제공동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남북한은 핵사찰규정 마련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에 있으나 쌍방의 立場差異로 인해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비핵화 공동선언」의 사례는 특히 검증문제에 소극적인 상대와 조약을 체결할 때 條約의 철저한 履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檢證體制와 條約內容을 함께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바) 검증 權限과 義務는 相互主義에 입각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상호주의는 受檢國의 입장에서 검증이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差別없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과 檢査國의 입장에서 모든 조약 가맹국은 同等하게 검증을 실시할 權限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 검증은 軍事的 開放 및 透明性的의 提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검증의 핵심은 규제대상 무기나 시설을 상대방에게 開放하는 것이므로 검증은 곧 군사적 개방과 투명성의 제고를 의미한다.

적어도 군비통제조약이 체결되는 분야에서는 國家安保에 대한 개념이 秘密性에 가치를 두기보다는 검증을 통해 서로에 대한 疑惑을 해소하고 開放과 透明度를 증대시킴으로써 성취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아) 검증은 조약 가맹국의 社會體制 差異에서 야기되는 情報獲得의 非對稱性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각국의 사회체제 차이는 검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방된 사회에서는 條約을 違反한다는 것이 어렵고 체제내에서의 情報交流가 자유로운 반면, 폐쇄된 사회에서는 집권층이 條約違反을 결심하면 이를 쉽게 실행할 수 있으며 체제내에서의 情報交流가 원활하지 못함으로써 조약위반 여부에 대한 不確實性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이한 체제를 가진 국가간에 군비통제조약이 체결될 경우 검증은 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情報獲得 난이도의 非對稱性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군비통제조약은 檢證實施가 용이한 방향으로 합의되어야 한다.

군비통제조약은 規制對象과 活動, 조약위반의 境界가 명확히 定義되고 애매모호한 부분을 없앴으로써 검증실시를 促進하는 방향으로 합의되어야 한다.

(차) 군비통제조약이 規制對象에 例外를 들 경우 效果的인 檢證이 실현될 수 없다.

군비통제조약의 규제대상이나 적용지역에 예외가 있는 경우 條約이 추구하는 目的의 완전한 성취를 기대할 수 없으며 檢證의 效果도 약화될 것이다. 또한 검증대상에 예외가 없을수록 검증실시가 용이해질 것이다.

(카) 多樣한 檢證方法이 複合的으로 適用되어야 한다.

특정 검증방법이 모든 군비통제조약에서 가장 효과적일 수는 없다. 개별 검증방법의 脆弱點을 補完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검증방법이 동원되어야 하며 검증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즉 一括檢證方案(verification package)이 마련됨으로써 上昇效果를 기대할 수 있다. 기술적 정보수집수단이 매우 제한된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現場檢査를 강조하는 것이 당연할 수 밖에 없겠으나 현장검사는 浸透性이 가장 크며 또한 현장검사 요원이 투입된 시점에서 該當 場所에 대해서만 실태 파악이 가능하다는 短點이 있다는 사실도 고려되어야 한다.

(타) 특정 검증방법의 採擇基準은 現實性和 상호 受容可能性이다.

특정 검증방법을 채택할 때는 해당방법이 동원가능한가 하는 現實性和 협상 당사자들이 해당 방법을 받아 들일 수 있는가 하는 상호 受容可能性이 함께 고려됨으로써 무리한 검증방법을 요구하여 협상 진행을 가로막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북한의 豫想態도와 한국의 對應論理

검증에 대한 남북한의 현재 입장은 고르바초프 등장 이전에 각각 미국과 舊소련이 취했던 立場과 매우 類似하다고 볼 수 있다. 폐쇄체제인 소련이 검증에 소극적이었던 것과 같이 北韓은 검증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표명은 하지 않았으나 검증이 가져올 開放의 餘波를 우려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와 달리 韓國은 미국이 검증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었던 것과 같이 檢證指向的 立場을 견지하며 浸透性이 강한 구체적인 檢證方法을 제시해 왔다. 여기에서는 향후 남북한 軍備統制協商에서 검증에 관하여 개진될 북한의 態度를 예상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對應論理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 信賴의 原則에 입각하여 自體 檢證을 선호하고 한국의 檢證要求 목살

北韓은 자국의 시설에 대한 檢證을 拒否할 目的으로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준수하기 위해서라는 「信賴의 原則」을 내세우며 한국의 檢證要求를 묵살할 가능성이 있다.

韓國은 검증은 信賴의 問題가 아니라 인간의 不完全性에 기인하는 문제로서 미·소간의 협상에서 볼 수 있듯이 소련이 주장했던 「신뢰의 원칙」은 協商妥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소련의 속담에도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라”(trust but verify)라는 말이 있듯이 檢證問題는 인간사의 보편적

인 문제인 것이다. 한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검증이 條約 違反을 탐지하는 裝置라기보다는 條約 遵守를 확인하는 制度라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도록 설득해야 한다. 한국은 또한 군비통제조약을 체결하면서 具體的이고 效果的인 檢證體制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은 國際的인 合意事項이며 이러한 국제여론은 UN의 檢證原則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북한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나) 대규모 軍縮을 前提로 한국의 檢證要求 受容意思 표명 북한은 남북간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軍事力 減縮이 우선 달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병력을 10만명으로 감축할 것을 주장해 왔다. 이러한 행태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은 실현불가능한 大規模 軍縮을 전제로 현장검사와 같은 具體的인 檢證方法 受容意思를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군비통제협상에서는 검증에 대한 합의도 중요하지만 檢證은 군비통제조약의 하나의 構成要素에 불과하며 조약 자체의 內容에 관한 提案이 쌍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現實性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의 大規模 軍縮提案이 현실성이 결여된 不合理한 提案이기 때문에 군비통제협상을 진행할 基本的인 與件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상호 조정과 타협을 통해 군비통제를 달성함으로써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合理的인 提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다) 군비통제조약 內容 합의후 檢證合意 주장

북한은 군사적 信賴構築이나 軍縮方案을 우선 합의한 후에 구체적인 檢證問題를 논의하자는 「先 군축합의, 後 검증합의」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볼 때, 군비통제와 검증의 先後問題는 이미 1961년 9월 「맥클로이-조린 원칙」을 통해 해결된 바 있으며 軍縮과 檢證의 동시 협상 및 실시는 UN의 16個 檢證原則에도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한국은 「비핵화 공동선언」의 예를 들어, 남북한은 조약의 내용에만 합의하고 檢證規定 마련을 뒤로 미룸으로써 발생하는 어려움을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경험한 바 있음을 강조하고 다소 時間이 걸리더라도 적절한 檢證體系가 갖추어진 條約을 체결하는 것이 추후 문제발생의 소지를 없애는 바람직한 協商方法이라는 점을 주장해야 한다.

(라) 조약의 文案作成 소홀

북한은 조약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를 거부하거나 相異한 解釋이 가능한 모호한 문맥을 사용하여 향후 조약실행과정에서 그들의 意圖대로 조약을 解釋하려 할 可能性이 있다.

한국은 조약 문안이 명료하게 작성되지 못하거나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겨둘 경우, 條約履行過程에서 반드시 紛爭이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조약의 허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측은 政治的 意圖에서 紛爭을 유발시킬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약의 存廢에 威脅을 주는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는 것

이다. 특히 남북한은 사용하는 용어가 서로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조약의 文案을 명료히 作成하는 問題에 대해 협상 참여자들은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 檢證方法 確保方案

한국은 검증정책의 基本原則 수립과 아울러 구체적인 檢證方法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검증의 目的이 遵守情報 不均衡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바와 같이, 검증은 결국 정보의 문제이므로 情報蒐集 및 分析能力이 우세할수록 한국은 북한과의 檢證協商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技術的인 檢證方法은 크게 각국이 독자적으로 운용가능한 獨自檢證方法과 상대방의 동의나 협조가 필요한 協力檢證方法으로 구분할 수 있다. 獨自檢證方法은 인공위성, 지상·해상·항공 탐지 장비와 같은 遠距離 諜報蒐集手段을 통한 정보수집방법과 공개·미공개 關聯資料를 활용하는 부수적 정보수집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독자검증방법은 상대방의 영토·영해·영공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첩보를 수집함으로써 主權侵害에 관한 논란의 소지가 없으며 군비통제협상시에도 중요하게 거론될 필요가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단, 遵守紛爭 발생시 확보된 證據를 활용할 수 있는 根據를 마련하기 위해 조약내에 獨自檢證方法의 사용을 認定한다는 내용은 포함될 필요가 있다.

協力檢證方法은 현장검사, 현장감시장치, 상주감시소, 영공개방

협정, 다국적 기술수단, 국제기구의 협조 등이 있는데 主權侵害와 間諜行爲 可能性에 대한 논란과 구체적인 檢證節次上의 異見 등으로 협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1) 韓國이 獨自的으로 運用可能한 檢證方法

(가) 人工衛星

한국은 현재 인공위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미간 衛星情報 協調體制를 강화하는 한편, 상업용 인공위성의 活用方案도 강구해야 한다. 미국은 현재 자국 軍事衛星이 수집한 민감한 情報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한국은 駐韓美軍의 단계적 減縮에 따른 戰略的 空白을 메우고 한국의 위성정보 처리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衛星情報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協調方案을 미국측에 요청해야 한다.

한국은 인공위성에 의한 情報蒐集能力이 전무한 현 실정에서 군사위성정보는 精密度가 떨어지지만 商業用 人工衛星도 유용한 대북한 諜報蒐集手段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상업용 인공위성의 活用方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¹⁵⁾ 한국은 또한 UN 산하에 국제위성감시기구가 설치되거나 지역차원의 공동위성기구가 설립될 경우,¹⁶⁾ 이들 機構와의 協調方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15) 현재 사용가능한 商業用 人工衛星은 미국의 랜셋 위성(Landsat Satellite), 프랑스의 스포트 위성(SPOT Satellite) 및 소련의 소유즈카르타 위성(Sojuzkarta Satellite) 등이 있다.

16)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사진위성 헬리우스(Helios)를 개발하여 1992년 발사할 예정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은 軍事用 偵察衛星의 開發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衛星製作技術을 축적함과 아울러 衛星情報를 효과적으로 活用하기 위한 고도의 사진해독·정보처리 기술을 동시에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地上·海上·航空 探知裝備

한국은 현재 대북한 감시 및 조기경보를 위해 通信情報(communication intelligence: COMINT), 電子情報(electronics intelligence: ELINT), 映像情報(image intelligence: IMINT) 등을 수집할 수 있는 探知裝備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앞으로 체결될 남북한 군비통제조약을 예상하여 이들 장비의 監視能力을 보완·발전시킴으로써 檢證能力의 向上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군비통제조약의 검증은 일반적인 정보수집이나 정찰보다는 훨씬 정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입각하여 情報蒐集能力의 向上을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探知裝備의 活用方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 附隨的인 情報蒐集

한국은 북한의 언론, 방송, 정부간행물, 국제적으로 공개된 각종 자료 및 귀순자의 증언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활용해야 한다. 북한사회가 점진적으로 개방될수록 북한에 대한 附隨的인 情報蒐集은 수월해질 것이다. 또한 북한과 긴밀한 군사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러시아를 비롯한 제3국과의 協力強化를 통해 북한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北韓과의 協商이 要求되는 檢證方法

(가) 現場檢査

현장검사는 檢査對象의 공개와 檢査時點의 사전통보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正規檢査는 가장 기본적인 현장검사방법으로서 檢査對象이 상호 교환되는 情報交換目錄에 포함됨으로써 수검국이 검사대상을 미리 파악하게 될 과 아울러 檢査實施時點이 오래 전에 통보되거나 미리 예정됨으로써 수검국이 검사시점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둘째, 任意檢査는 검사대상에 대한 情報가 交換된다는 점에서는 정규검사와 같으나 短期間의 通報後 검사가 실시되므로 수검국이 檢査時點을 충분한 시간전에 파악할 수 없는 奇襲效果를 가진다. 셋째, 特別檢査는 수검국이 檢査對象과 檢査時點을 미리 파악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상의 세 가지 검사방법이 필요에 따라 적절히 채택됨으로써 검사요원이 適時에 수검국의 원하는 지점에 파견되어 效果的인 現場檢査가 실시될 수 있어야 한다.

(나) 現場監視裝置

검사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보안장치가 완벽한 TV카메라 또는 원격감시장비(블랙박스) 등의 現場監視裝置를 사용할 수 있다. 단, 현장감시장치의 正常作動 與否를 점검하기 위해서 점검요원의 週期的인 現場訪問은 필요하다.

(다) 常駐監視所

주요 간선도로, 철도, 항만, 공군기지 등 軍事·戰略的 要衝地에 상주감시소를 설치·운영하여 북한의 주요 軍事動向을 감시한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상주감시소의 설치는 가장 受容하기 어려운 檢證方法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상주감시소의 운영은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처음 단계에서는 상주감시소의 數와 監視要員의 행동반경을 制限하도록 조치하여 북한 정부 당국이나 군을 자극하지 않도록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軍事的 信賴가 구축되고 상주감시소 運營經驗이 축적되면 상주감시소의 수와 감시요원의 행동반경을 점차적으로 늘려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 領空開放協定

영공개방은 남북한 공히 원거리 정찰능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가장 經濟的이고 效果的인 檢證方法이 될 수 있으므로 양측은 영공개방협정을 체결하여 상대방의 偵察機가 필요한 情報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영공개방은 단순한 검증방법 확보차원을 넘어서 남북한간의 信賴構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 多國籍 技術手段

UN 산하에 國際衛星監視機構가 설치되거나 지역차원의 共同衛星機構가 설립될 경우 북한과의 합의하에 이러한 機構를 活用하는 方案도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한반도 군비통제 검증을 위

해서 「美·러시아 衛星諮問委員會」의 설치를 남북한이 共同으로 提案할 필요성도 있다. 남북한은 이러한 자문위원회를 통해 양국이 보유한 첨단 衛星技術의 支援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음으로써 남북한 쌍방의 軍事的 透明度를 증대함과 아울러 한반도 군비통제가 國際的 協調下에 검증되고 있다는 對內外的 宣傳效果를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바) UN 平和維持軍

최근 강화되고 있는 UN의 位相에 비추어 볼 때, UN이 한반도 군비통제조약의 遵守 與否를 객관적으로 檢證함으로써 遵守紛爭과 意圖的인 條約違反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UN 평화유지군의 檢證參與方案도 남북한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간에 충분한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非武裝地帶의 비무장화나 완충지대화가 먼저 합의될 경우, 기존의 중립국감독위원회나 남북한 검증기구를 활용할 수도 있겠으나 일정 기간동안 UN 평화유지군이 檢證活動에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第VI章 結 論

1990년 9월 개최된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이후 남북사이에 전개된 和解와 協力を 위한 노력은 1992년 2월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 「基本合意書」를 발효시키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기본합의서」에 의거하여 남북군사분과위원회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991년 12월 체결된 「非核化 共同宣言」에 따라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구성되어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발전과정은 한반도에서 부분적으로 軍備統制協商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며 앞으로 있을 본격적인 협상에 대비한 우리의 준비를 촉구하고 있다.

檢證은 군비통제조약의 必須要素로서 군비통제협상 시작부터 논의되어야 하므로 한국은 檢證에 대한 충분한 理解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檢證政策을 수립하고 북한과의 協商에 對備할 필요가 있다. 本 研究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검증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과거 군비통제 경험의 교훈을 바탕으로 한국의 軍備統制 檢證政策 推進方向을 제시하였다.

檢證은 일방적, 상호협력적, 그리고 자발적인 手段과 方法으로 軍備統制條約 준수 여부에 대한 情報 不均衡을 해소하는 過程으로 정의된다. 검증은 조약체결의 窮極的인 目的이 아니며 또한 司法的인 制裁權限도 없다는 特徵을 갖고 있으며 檢證實施過程은 협상과정, 정보수집 및 분석과정, 판단 및 대응과정으로 구분

될 수 있다.

국제레짐 이론은 軍備統制條約과 檢證의 關係를 이론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주고 있다. 국가간 전반적인 安保關係는 개별 安保懸案들의 集合으로 간주되며 軍備統制條約의 체결은 조약이 규제하는 해당 분야에 부분안보레짐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부분안보레짐은 레짐을 형성함으로써 추구하는 目的인 레짐의 原則, 일반적인 차원에서 레짐 참여자들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는 規範, 규범을 구체화시킨 規定 및 조약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實踐機構로 구성된다. 檢證은 부분안보레짐을 특징짓는 여러 規範중의 하나로서 구체적인 檢證規定의 형태로 조약에 반영되며 검증실시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遵守紛爭 解決機構도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분안보레짐은 레짐 참여자들간 情報交換과 意思疏通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분야에서의 不確實性을 제거하고 透明度를 증대하는 情報提供機能을 수행한다. 레짐의 정보제공기능을 통한 豫測可能性의 향상은 레짐 참여자들간 상호 利害增進과 信賴構築을 촉진하고 새로운 協力の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檢證은 레짐이 갖는 정보제공기능의 큰 部分을 담당한다는 점에 그 重要性을 지닌다. 검증은 조약의 준수 여부에 관한 情報交流를 통해 조약을 安定的으로 維持시키고 레짐 참여자들간 信賴構築을 통해 새로운 條約의 締結可能性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부분안보레짐은 해당 레짐 자체에 대한 레짐 참여자들의 受容意志, 즉 해당 분야에서의 軍비통제조약 체결에 대한 당사자들의

基本的인 合意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협상이 진행중이더라도 레짐에 대한 당사자들의 選好度가 레짐형성을 원하지 않는 상황인 경우에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소용이 없으며 오히려 조약체결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오인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조약체결에 原則적으로 合意할 경우 檢證問題는 어떤 형태로든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서로의 입장을 탐색하는 協商初期에 검증을 지나치게 具體적으로 論議하려는 것은 검증에 소극적인 북한과의 협상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협상 초기에는 검증에 대한 基本的인 立場表明에 그치고 조약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후 구체적인 條約文案 협상시 檢證問題를 함께 토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레짐형성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變數는 國家利益에 대한 새로운 思考를 가진 政治엘리트의 등장 여부이다. 협상 대상국에 세대교체나 기타 정치적 變動過程을 통하여 軍備統制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새로운 政治指導者가 등장할 경우 군비통제조약의 체결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소련에 고르바초프가 등장하여 「INF 조약」을 비롯한 획기적인 군비통제조약이 체결될 수 있었다는 歷史的 事例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檢證의 歷史를 당시의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6단계로(검증 문제가 公式 論議된 최초의 국제회의인 1899년 헤이그 平和會議에서부터 1987년 「INF 조약」으로 시작되는 오늘날의 신테탕트

시대까지) 살펴 본 결과 전반적인 國際關係의 友好程度와 군비 통제 및 검증협상의 妥結可能性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관계와 군비통제의 함수관계는 軍備統制條約 체결이 국제관계 개선을 유도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외교·경제 분야에서의 國際關係 改善이 군사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軍備統制條約 체결이 가능했던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군비통제조약은 타분야에서의 관계개선을 추인하고 이를 확고히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¹⁾ 따라서 한국은 軍事分野에서의 남북간 合意導出을 타분야에서의 關係發展과 반드시 連繫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남북간 協力可能한 分野의 關係改善을 우선 실시하여 충분한 信賴가 형성되면 軍事分野에서의 協力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군비통제협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협상 당사자간에 協商對象 武器에 대한 戰力的 均衡이 달성되어야 한다. 남북간 군비통제협상도 어느 일방의 전력의 우세한 분야에서는 협상타결이 힘들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향후 軍現代化計劃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시사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군비통제조약 체결은 상대방과의 협상을 통해 相互 妥協點을 찾아야 하는 政治的인 問題이기 때문에 군비통제와 검증에 대한

1) 예외적으로 군사적 의미는 적으나 국가간 관계개선의 象徴的 意味를 가질 수 있는 군비통제조약이 먼저 체결되어 다른 분야에서의 協力を 誘導하는 돌파구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政策決定者의 意志는 협상결과의 向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군비통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최고 정책결정자의 의지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군비통제조약 협상이 상대국가와의 국가간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내 이해집단간의 협상과 의견조정이 필요한 二重的 協商問題라는 사실에 기인한다.²⁾ 이는 최고 정책결정자가 군비통제관련 각종 이해집단을 조정·중재할 수 있는 統率力과 意志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검증에 대해 한국이 견지해야 할 基本的인 原則을 수립하는 것은 一貫性있는 檢證政策 추진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일이다. 한국의 檢證原則은 검증을 통하여 軍事的 透明度와 豫測可能性을 향상시키는 것이 상호 信賴構築과 安保增進에 필수적이라는 기본 개념에 입각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한국은 이러한 개념을 반영한 다음과 같은 12개 檢證原則을 검증에 대한 한국의 基本立場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 (가) 검증은 군비통제조약의 必須不可缺한 요소이다.
- (나) 검증은 主權을 침해하거나 內政을 간섭하는 것이 아니다.
- (다) 검증은 합법화된 間諜行爲가 아니며 검증을 통해 획득된 情報는 본래의 目的과 달리 오용되어서는 안된다.
- (라) 效果的이고 信賴할 수 있는 검증이 실시되어야 한다.

2) 군비통제협상을 二重的 協商問題로 보고 협상 타결가능성을 數學的으로 分析한 예는 다음을 참조. Seong W. Cheon, "Verification of Compliance: Mathematical, Political, and Economic Perspectives" (Ph.D. Thesis, University of Waterloo, 1989), pp. 228~250.

- (마) 검증은 군비통제조약 協商始作段階에서부터 함께 논의 되어야 한다.
- (바) 검증 權限과 義務는 相互主義에 입각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사) 검증은 軍事的 開放 및 透明性의 提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 (아) 검증은 조약 가맹국의 社會體制 差異에서 야기되는 情報獲得의 非對稱性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 (자) 군비통제조약은 檢證實施가 용이한 方向으로 합의되어야 한다.
- (차) 군비통제조약이 規制對象에 例外를 들 경우 효과적인 검증이 실현될 수 없다.
- (카) 多樣한 檢證方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 (타) 특정 검증방법의 採擇基準은 現實性과 상호 受容可能性이다.

한국은 군비통제협상시에 이와 같은 原則을 고수하되 상황에 따라 融通性을 발휘해야 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國家安保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의 檢證原則에 미흡하더라도 融通性을 발휘하여 검증조항에 양보함으로써 조약 체결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군비통제 검증은 결국 情報의 問題이므로 情報蒐集 및 分析能力이 우세할수록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한국은 독자적인 情報蒐集能力의 확보가 군비통제 검증만을 위해서

가 아니라 國家의 死活이 걸린 事案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이 분야에 集中的인 投資를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人工衛星 등 첨단 諜報蒐集手段 확보를 위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를 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商業用 人工衛星의 사용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情報處理能力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합의서」의 체결과 각종 분과위원회의 출범 등에도 불구하고 남북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깊은 不信의 골과 북한의 開放 拒否姿勢를 고려할 때, 강도높은 현장검사나 상주감시소의 설치 등 浸透性이 강한 檢證方法은 당분간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 현재와 같은 불신속에서 現場檢査만의 지나친 강조는 오히려 不信을 조장하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며 북한은 한국의 現場檢査 要求를 현장검사를 통한 대북한 諜報蒐集意圖로 간주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은 북한에 대한 정확한 情報獲得을 위해 기존의 探知 裝備 現代化와 제3국과의 情報協調體制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다. 한국은 현장검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1) 現場檢査는 주된 諜報蒐集手段이 아니라 독자적인 정보로 해결되지 않는 미심쩍은 부분을 확인하는 補助的인 情報獲得手段에 불과하다: (2) 現場檢査의 弱點은 현장검사팀이 방문한 시점에, 해당 장소에 대해서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는 時間的, 空間的 制約이다.

남북한 모두 독자적인 원거리 정찰능력이 부재한 현 상황에서 서로의 영공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領空開放協定의 체결은 가

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情報蒐集 및 檢證方法이 될 수 있다. 領空開放은 북한 주민이나 군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함으로써 북한의 體制維持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영공개방은 또한 그 자체로서 하나의 信賴構築方案이며 남북한이 영공개방을 통해 서로에 대한 情報獲得과 早期警報를 허용하는 것은 상호 攻擊意思가 없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확신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새로운 和解와 協力の 時代가 도래하고 있는 가운데 군사적으로 중요한 軍備統制條約들이 이러한 關係改善을 확고히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포괄적인 군비통제조약들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檢證의 새로운 安保構築機能이 보다 중요한 役割을 담당할 것이다. 즉 秘密性和 非公開에 기초한 기존의 國家安保 概念은 검증을 통한 군사분야에서의 透明度 및 豫測可能性 증대에 기초한 새로운 안보 개념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單行本

국토통일원. 「남북대화: 제51호」. 서울: 국토통일원, 1990.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89」.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9.

Arms Control Association. *Arms Control and National Security: An Introduction*. Washington, D.C.: Arms Control Association, 1989.

Blacker, C. and Duffy, G. *International Arms Control: Issues and Agreement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4.

Borawski, John. *From the Atlantic to the Urals*. New York: Pergamon-Brassey's International Defense Publishers, 1988.

Canadian Government. *Verification in All Aspects: A Comprehensive Study on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Verification Pursuant to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0/152(O)*. Ottawa: Canadian Government, April 1986.

Cleminson, F. R. and Gilman, E. *A Conceptual Working Paper on Arms Control Verification*. Ottawa: The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Division, Department of External Affairs, Canada, January 1986.

Goldblat, Jozef. *Arms Control Agreements: A Handbook*. Stockholm: SIPRI, 1982.

- Han, Yong-Sup. *Designing and Evaluating Conventional Arms Control Measures: The Case of the Korean Peninsula*. Santa Monica: The RAND Corporation, 1991.
- Karkoszka, Andrzej. *Strategic Disarmament, Verification and National Security*. Stockholm: SIPRI, 1977.
- Keohane, Robert. *After Hegemon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 Kokeyev, Mikhail and Androsov, Andrei. *Verification: the Soviet Stance, Its Past, Present and Future*. New York: United Nations, 1990.
- Krass, Allan. *How Much Is Enough?* Stockholm: SIPRI, 1985.
- Macintosh, James. *Confidence (and Security) Building Measures in the Arms Control Process: a Canadian Perspective*. Toronto: York University, 1985.
- Morris, Ellis. *The Verification Issue in United Nations Disarmament Negotiations*. New York: United Nations, 1987.
- Niedle, Alan, ed. *Nuclear Negotiations: Reassessing Arms Control Goals in U.S.-Soviet Relations*. Austin: Lyndon Johnson School of Public Affairs, 1982.
-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Verification Technologies: Co-operative Aerial Surveillance in International Agreements*. Washington, D.C.: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1991.
- Payne, S. *The Soviet Union and SALT*. Cambridge, Mass.: MIT Press, 1980.

- Riekhoff, Harald von, ed. *Compliance and Confirmation*. Ottawa: Carleton University, 1985.
- Rowell, William. *Arms Control Verification: A Guide to Policy Issues for the 1980s*. Cambridge, Mass.: Ballinger Publishing Company, 1986.
- Sherr, Alan. *The Other Side of Arms Control: Soviet Objectives in the Gorbachev Era*. Boston: UNWIN HYMAN, 1988.
- Sloan, Stanley. *Conventional Arms Control and Europe's Future*. *Headline Series No. 287*. Washington, D.C.: Foreign Policy Association, 1988.
- Stein, Arthur. *Why Nations Cooperate: Circumstance and Choi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 Towle, Philip. *Arms Control and East-West Relation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3.
- VERTIC. *Watching START Take Off: The Verification of a Complex Arms Control Treaty*. London: VERTIC, July 1991.
- Wainhouse, D., et al. *International Peace Observation: A History and Forecast*. Baltimore: Johns Hopkins Press, 1966.

2. 論 文

전성훈. “유럽의 신뢰구축방안: 경험과 그 의미.”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한반도 군비통제: 제2집」. 서울: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1990.

_____. “核問題에 대한 北韓의 立場과 韓半島 非核化 展望,” 「제5회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Arms Control Association. “Richard Burt on the State of START.” *Arms Control Today*, Vol. 20, No. 1 (February 1990).

Arms Control Today, Vol. 20, No. 6 (July/August 1990).

Arms Control Today, Vol. 22, No. 4 (May 1992).

Axelord, R. and Keohane, R. “Achieving Cooperation Under Anarchy: Strategies and Institutions,” in Kenneth Oye, ed. *Cooperation Under Anarch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

Bunn, Matthew. “Biological Weapons Outlawed.” *Arms Control Today*, Vol. 20, No. 5 (June 1990).

Carter, Luther. “Strategic Weapons: Verification Keeps.” *Science* (March 1975).

Cheon, Seong W. “Verification of Compliance: Mathematical, Political, and Economic Perspectives.” Ph.D. Thesis, University of Waterloo, 1989.

Cheon, Seong W. and Fraser, Niall M. “Arms Control Verifica-

tion: An Introduction and Literature Survey." *Arms Control*, Vol. 9, No. 1 (May 1988).

Coldwell, Dan. "The Standing Consultative Commission: Past Performance and Future Possibilities," in William Potter, ed. *Verification and Arms Control*. Los Angeles: Center for International and Strategic Affairs, UCLA, 1985.

Daalder, Ivo. "The Limited Test Ban Treaty," in A. Carnesale and R. Haass, eds. *Superpower Arms Control: Setting the Record Straight*. Cambridge, Mass.: Ballinger Publishing Company.

Dean, Jonathan. "Gorbachev's Arms Control Moves."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June 1987).

Department for Disarmament Affairs. "Verification and Compliance." *The United Nations Disarmament Yearbook*. New York: United Nations, 1989.

Duffy, Gloria. "Study Finds Treaty Complianc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July 1987).

Efinger, Manfred. "The Verification Policy of the Soviet Union." *AUSSENPOLITIK*, Vol. IV (1989).

External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Canada, *The Disarmament Bulletin* (Winter 1990/1991).

Finlayson, Jock and Zacher, Mark. "The GATT and the Regulation of Trade Barriers: Regime Dynamics and Functions," in Stephen Krasner, ed.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 Fischer, Wolfgang. "The Verification of a Greenhouse Gas Convention--a New Task for International Politics," in J. Poole, ed. *Verification Report 1991*. London: VERTIC, 1991.
- Gaddis, John. "The Evolution of a Reconnaissance Satellite Regime," in A. George, P. Farley and A. Dallin, eds. *U.S.-Soviet Security Cooperation: Achievements, Failures, Less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 Haas, Ernst. "Why Collaborate? Issue-Linkage and International Regimes." *World Politics* (April 1980).
- _____. "Words Can Hurt You: or, Who Said What To Whom About Regimes." in Stephen Krasner, ed.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 Haass, Richard. "Verification and Compliance," in A. Carnesale and Richard Haass, eds. *Superpower Arms Control: Setting the Record Straight*. Cambridge, Mass.: Ballinger Publishing Company, 1987.
- Haggard, Stephan and Simmons, Beth. "Theories of International Regi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Summer 1987).
- Horelick, A. "Detente by any othe nam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October 1988).
- Issraelyan, Victor. "Openness, Transparency, and Confidence Building." The United Nations. *Multilateral Aspects of the Disarmament Debate*. New York: Taylor and Francis, 1989.

- Jervis, Robert. "Security Regimes," in Stephen Krasner, ed.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 Kim, Young C. "Prospects for arms control in Korea." a paper presented at The Third International Defense Conference, KIDA and CSIS. Seoul, November 5~6, 1990.
- Kinkade, W. "Challenges to Verification: Old and New." *Arms Control* (December, 1982).
- Kleijn, K. "Basic Military Views in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Arms Control Verification--Summary and Elaborations," in Harald von Riekhoff, ed. *Compliance and Confirmation*. Ottawa: Carleton University, 1986.
- Krasner, Stephen. "Regimes and the Limits of Realism: Regimes as Autonomous Variables," in Stephen Krasner, ed.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 _____. "Structural Causes and Regime Consequences: Regimes As Intervening Variables," in Stephen Krasner, ed.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 Krass, Allan. "The Soviet View of Verification," in William Potter, ed. *Verification and Arms Control*. Lexington: Lexington Books, 1985.
- Krepon, Michael. "The Political Dynamics of Verification and Compliance Debates," in William Potter, ed. *Verification and Arms Control*. Lexington: Lexington Books, 1985.

- Lederman, Itshak. "Verification of Conventional Arms Control Agreements in Europe." Ph.D. Thesis,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1991.
- Lipson, Charle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Economic and Security." *World Politics*, Vol. 37, No. 1 (1984).
- Lockwood, Dunbar. "Verifying START: From Satellites to Suspect Sites." *Arms Control Today*, Vol. 20, No. 8 (October 1990).
- Lowenthal, Mark and Wit, Joel. "The Politics of Verification," in William Potter, ed. *Verification and Arms Control*. Lexington: Lexington Books, 1985.
- Meyer, Stephen. "Verification and Risk in Arms Control." *International Security* (Spring 1984).
- Morris, Ellis. "Comparison of United States and Soviet Approaches to Verification," in John O'Manique, ed. *A Proxy for Trust*. Ottawa: Carleton University, 1985.
- _____. "Soviet Positions on Verification," in Harald von Riekhoff, ed. *Compliance and Confirmation*. Ottawa: Carleton University, 1985.
- Nye, Joseph. "Nuclear Learning and U.S.-Soviet Security Regi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Summer 1987).
- Oelrich, Ivan. "The Changing Rules of Arms Control Verification: Confidence is Still Possible." *International Security*, Vol. 14, No. 4 (1990).

- Perle, Richard. "What is Adequate Verification?" *SALT II and American Security*. Cambridge, Mass.: Institute for Foreign Policy Analysis, 1980.
- Puchala, Donald and Hopkins, Raymond. "International Regimes: Lessons From Inductive Analysis," in Stephen Krasner, ed.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 Ruggie, John. "International Responses to Technology: Concepts and Trends." *International Organization* (Summer 1975).
- Schear, James. "Cooperative Measures of Verification: How Necessary? How Effective?" in William Potter, ed. *Verification and Arms Control*. Lexington: Lexington Books, 1985.
- _____. "Verifying Arms Agreements: Premises, Practices, and Future Problems." *Arms Control* (December 1982).
- Slocombe, W. "Verification and Negotiation." *The Nuclear Weapons Freeze and Arms Control*, Proceedings of a Symposium held at the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Harvard University, January. 13~15, 1983.
- Smith, Roger. "Explaining the Non-Proliferation Regime: Anomalies for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Organization* (Spring 1987).
- Strange, Susan. "Cave! Hic Dragones: A Critique of Regime Analysis," in Stephen Krasner, ed.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Tate, T. "Regime-Building in the Non-Proliferation System."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27, No. 4 (1990).

Towle, Philip. "Arms Control in East-West Relations: The Problem of Verification--Summary," in Harald von Riekhoff, ed. *Compliance and Confirmation*. Ottawa: Carleton University, 1985.

Tucker, Jonathan. "Back to the Future: the Open Skies Talks." *Arms Control Today*, Vol. 20, No. 8 (October 1990).

U.S. Department of State. "Reply to Sweden and Switzerland on Korean Supervising Commission." *Bulletin*, Vol. 32, (1955).

VERTIC. *Trust and Verify*, No. 26 (February/March, 1992).

Young, Oran. "International Regimes: Problems of Concept Formulation." *World Politics* (Spring 1980).

_____. "Regime Dynamics: The Rise and Fall of International Regimes," in Stephen Krasner, ed.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3. 其 他

「로동신문」, 1990년 9월 6일자.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ct, 22 U.S. Congress 2577, sec. 37.

ENDC/PV2.

Newsweek. October 27, 1986.

Papers Relating to th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26, Vol. I (Washington, 1941), p. 88.

U.N. General Assembly. A/3167, August 16, 1956, p. 6
(mimeo).

U.N. General Assembly. A/3631, August 13, 1957, p. 1
(mimeo).

US News and World Report. September 22, 1986.

〈附 錄〉

軍備統制條約의 檢證條項

1. 「제네바議定書」(The Geneva Protocol)

— 檢證조항 없음.

2. 「南極條約」(The Antarctic Treaty)

제 Ⅲ 조

제 1 항: 본 조약 제Ⅱ조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극에 대한 科學 探查를 위한 國際協力 增進을 위해서, 각 조약 가맹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 (a) 임무수행의 經濟性과 效率性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 남극의 과학 프로그램에 관련된 情報를 상호 교환한다.
- (b) 남극의 각 基地와 探險에 科學자를 서로 교환한다.
- (c) 남극에서의 科學觀測資料와 結果를 교환하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2 항: 本 條를 준수하는 데 있어서 UN산하의 特別 部署 및 남극에 대해 科學的 또는 技術的 關心을 갖고 있는 다른 國際機構와의 協力的인 業務關係를 이루어 나가도록 권장한다.

제 VII 조

제 1 항: 본 조약의 遵守를 확인하고 조약의 目的 達成을 위해서, 제 IX 조에 언급된 모임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각 조약 가맹국은 본 조에서 규정된 檢査를 실시할 觀測者를 임명할 權限이 있다. 관측자들은 그들을 임명한 국가의 國籍所有者이어야 한다. 관측자의 姓名은 관측자를 임명할 권한이 있는 다른 조약 가맹국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그들의 解任時에도 유사한 通報를 해야 된다.

제 2 항: 本 條 제 1 항에 따라 임명된 각 관측자에게는 남극의 모든 地域에 언제라도 接近할 수 있는 완전한 自由가 주어져야 한다.

제 3 항: 남극의 모든 기지, 시설물과 장비를 포함한 전지역과 남극에 화물이나 인원을 수송하는 지점의 모든 船舶과 航空機는 本 條 제 1 항에 따라 임명된 관측자의 檢査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開放되어야 한다.

제 4 항: 관측자를 任命할 權限을 갖는 조약 가맹국은 何時라도 남극의 모든 지역에서 空中觀測을 실시할 수 있다.

제 5 항: 각 조약 가맹국은 본 조약이 效力을 발생할 때에 다른 조약 가맹국에게 다음 事項을 알려서 미리 통보해 준다.

- (a) 자국의 선박이나 국민이 참여하는 모든 남극 탐사 및 자국 영토에서 조직되거나 진행되는 모든 남극탐사,
- (b) 자국 국민이 점유하고 있는 남극내 모든 기지,
- (c) 본 조약 제 I 조 2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남극에 파견될

예정인 모든 군사인원과 장비.

제 VIII 조

제 1 항: 본 조약하에서 관측자들의 업무수행을 촉진하고 남극의 기타 인원에 대한 司法權과 관련된 조약 당사국들의 地位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본 조약 제VII조 1항에 따라 임명된 관측자와 제III조 1(b)항에 따라 교환된 과학자 및 이들을 수행하는 임원들은 그들이 任務遂行을 목적으로 남극에 체류하는 동안 그들의 모든 행동과 관련해서 自國의 司法權에만 구속을 받아야 한다.

제 2 항: 本條 제1항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제IX조 (e)항에 따른 방안이 채택될 때까지 南極에서의 司法權 行使에 관한 紛爭時에 관련 조약 가맹국들은 상호 수용가능한 解決點에 도달하기 위해서 즉시 協議한다.

제 XI 조

제 1 항: 조약 가맹국간에 본 조약의 解釋이나 適用과 관련한 紛爭이 발생하면 당사국들은 협상, 질의, 조정, 회유, 중재, 법적 해결이나 기타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平和的 手段으로 紛爭을 解決하도록 협의해야 한다.

제 2 항: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분쟁 당사국들의 동의하에 國際司法裁判所(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에 회부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분쟁 당사국들은 本條 제1항에 명시된 平和的 方法으

로 紛爭을 解決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책임이 있다.

3. 「部分核實驗禁止條約」(The Limited Test Ban Treaty: LTBT)

- 검증조항 없음. 그러나 國家技術手段(National Technical Means: NTM)의 사용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4. 「細菌 및 毒性武器 禁止協定」(Biological and Toxin Weapons Convention: BTWC)

제 V 조 (협의 및 해명조항)

조약 가맹국들은 본 조약의 目的이나 條項適用과 關係해서 야기되는 모든 問題를 해결하는 데 협의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本 條에 따른 協議와 協力은 UN의 틀내에서 UN 憲章에 따라 적절한 國際節次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제 VI 조 (고발절차)

제 1 항: 다른 조약 가맹국이 조약에서 규정한 義務를 違反하는 行爲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조약 가맹국은 UN 안전보장이사회에 告訴할 수 있다. 고소시에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要請과 더불어 告訴의 正當性을 확인시켜주는 모든 가능한 證據를 제시해야 한다.

제 2 항: 각 조약 가맹국은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접수된 고소

를 증거로 UN 헌장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가 착수한 調査 施行에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調査 結果를 모든 조약 가맹국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 VII 조

각 조약 가맹국은 안전보장이사회가 條約違反의 結果로 특정 조약 가맹국이 危險에 처해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 UN 헌장에 따라 도움을 요청하는 해당 가맹국에게 支援을 약속한다.

제 XIII 조

조약발효 5년후(혹은 그 이전에 전체 조약 가맹국의 과반수가 조약 기탁국에게 회의소집을 제안하면), 化學武器協商과 관련한 조항을 비롯하여 조약의 제반 조항과 전문의 目的이 실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약의 履行 與否를 검토할 會議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해야 된다. 檢討會議에서는 조약과 관련된 모든 새로운 科學, 技術의 發展도 검토되어야 한다.

5. 「戰略武器制限協定 I」 (SALT I Treaty)

가. 「요격탄도미사일조약」 (SALT I ABM Treaty)

제 XII 조 (NTM)

제 1항: 본 조약의 遵守를 확인하기 위해 쌍방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國際法의 原則에 따라 國家技術手段(National Technical Means: NTM)을 사용한다.

제2항: 쌍방은 本條의 제1항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상대국의 NTM을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3항: 쌍방은 NTM을 이용한 本 조약의 遵守檢證을 방해할 計劃的인 隱蔽裝置를 사용하지 않는다. 本 항은 현재 건설, 조립, 개조 또는 수리중에 있는 것에 대해 變更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제 XIII 조 (SCC)

제1항: 조약의 목적과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쌍방은 常設協議委員會(The Standing Consultative Commission: SCC)를 신속히 설치하여 SCC에서 다음 사항을 다룬다.

- (a) 조약 준수에 관한 문제와 이에 관련된 애매한 상황 검토,
- (b) 조약 준수에 대한 확신을 보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情報의 자발적 제공,
- (c) NTM을 우발적으로 간섭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 검토,
- (d) 本 조약 규정에 저촉되는 전략적 상황변화 가능성 검토,
- (e) 本 조약에서 규정된 ABM시스템과 부품의 폐기 또는 해체 절차와 일정 합의,
- (f) 本 조약 규정에 대한 수정안을 비롯하여 조약의 존속성을 높힐 수 있는 적절한 제안 검토,
- (g) 전략공격무기를 제한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제안 검토.

제2항: 쌍방은 협의를 통해 節次, 構成, 기타 관련문제에 대한 SCC 規定을 신설, 수정할 수 있다.

나. 「戰略攻擊武器에 관한 暫定協定」 (SALT I Interim Agreement)

제 V 조 (NTM)

SALT I ABM 조약의 제XII조와 동일.

제 VI 조 (SCC)

조약의 目的과 履行을 촉진하기 위해서 쌍방은 ABM 조약의 제XIII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SCC를 규정에 따라 활용한다.

6. 「헬싱키協約」 (The Helsinki Final Act)

— 검증조항 없음.

7. 「戰略武器制限協定 II」 (The SALT II)

제 XII 조 (조약회피 금지)

조약의 存續性和 效率性を 보장하기 위해 각 조약 가맹국은 제3국을 통해서 혹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 본 조약의 모든 條項을 回避(circumvention)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 XV 조 (검증)

ABM 조약의 제XII조와 동일.

제 XVI 조 (통보)

제 1 항: 쌍방은 실험실시지역이나 ICBM 발사대 배치지역에서

자국 영토를 벗어나지 않도록 계획된 ICBM 단발 발사들을 제외하고, 기타 모든 예정된 ICBM 發射前에 그와 같은 發射가 실시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대국에 事前에 隨時로 通報한다.

제 2 항: 쌍방은 本 條 규정의 實施節次에 관해서 常設協議委員會(Standing Consultative Commission: SCC)에서 합의한다.

제 XVII 조 (상설협의위원회)

제 1 항: 조약의 目的과 규정의 履行을 촉진하기 위해, 쌍방은 1972년 12월 21일 SCC 설치에 관한 美·蘇間 諒解覺書에 따라 설치된 SCC를 이용한다.

제 2 항: 쌍방은 SCC에서 본 조약과 관련하여 다음 事項을 다룬다.

- (a) 條約 遵守에 관한 문제와 이에 관련된 애매한 사항 검토,
- (b) 조약 준수에 대한 확신을 보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情報의 自發的인 提供,
- (c) NTM에 대한 우발적인 간섭과 관련된 문제와 NTM을 이용한 검증에 대한 偶發的인 妨害와 관련된 문제 검토,
- (d) 본 조약 규정에 저촉되는 戰略的 狀況變化 가능성 검토,
- (e) 본 조약에서 규정된 戰略攻擊武器의 교체, 개조, 해체 또는 폐기에 관한 節次와 본 조약에서 규정한 制約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 총수에서 該當 武器類를 除外시키는 절차를 합의하며, SCC 정기총회에서 上記 절차를 따라 상대방에게 적어도 연간 2회씩 完了된 措置나 進行中인 措置에

대해 통보,

- (f) 본 조약 규정에 대한 修正案을 비롯하여 조약의 存續性을 높힐 수 있는 적절한 제안 검토,
- (g) 戰略攻擊武器를 制限하는 새로운 方法에 대한 제안 검토.

8. 「스톡홀름協約」 (Stockholm Document)

- (63) 마드리드 合意事項에 따라 위에 합의된 信賴安保構築方案에는 그 내용에 부합되는 적절한 형태의 검증이 수반된다.
- (64) 가맹국들은 NTM(National Technical Means)이 합의된 신뢰안보구축방안의 遵守 與否를 감시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 (65) 同 協약의 조항에 따라 모든 가맹국은 CSBM 적용지역내의 어떠한 다른 參加國의 領土內에서도 檢査를 실시할 權利를 갖는다.
- (66) 모든 가맹국은 CSBM 적용지역내에서 합의된 신뢰안보구축방안의 遵守가 疑心되는 다른 참가국들의 領土에 대해 檢査를 요청할 수 있다.
- (67) 어떠한 가맹국도 CSBM 적용지역내에 있는 自國 領土에 대해 매년 4회 이상의 檢査를 받아 들여야 할 義務는 없다.
- (68) 어떠한 가맹국도 同一國家로부터 매년 2회 이상 檢査를 받아 들여야 할 義務가 없다.
- (69) 불가항력에 의해 實行될 수 없는 경우에 檢査가 실시된 것

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 (70) 檢査를 要請하는 가맹국은 요청에 대한 理由를 명시해야 된다.
- (71) 이러한 요청을 받은 가맹국은 제(67), (68)항에 따라 합의된 기한내에 要請에 대해 긍정적으로 應答해야 한다.
- (72) 檢査要請 理由의 妥當性和 관련한 어떠한 論爭도 檢査를 妨害하거나 遲延시켜서는 안된다.
- (73) 檢査를 요청하는 가맹국은 CSBM 적용지역내에 있는 다른 국가의 特定 領土를 指定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은 特定 地域으로 지칭된다. 특정 지역은 통보해야 할 軍事活動이 행해지거나 행해지고 있다고 믿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특정 지역은 통보해야 할 군사활동의 範圍와 規模에 의해 정의되고 한정되지만 軍級 수준의 군사활동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지는 않는다.
- (74) 특정지역에서 수검국 대표들을 동반한 검사국 대표들은 합정 및 군용 차량, 항공기와 함께 군사 및 여타 방위시설물, 통상 접근이 거부 또는 제한되는 지역이나 민감한 지점을 제외하고는 接近, 進入, 自由로운 檢査가 허용된다. 규제 지역의 숫자와 범위는 가능한 적어야 하고 영구 또는 일시적 군사시설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規制地域으로 선포되지 않으며 따라서 同 지역들은 通報義務가 있는 軍事活動의 檢査를 방해할 目的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규제지역은 합의된 검사 조항에 위배되게 사용되어서도 안된다.

- (75) 특정 지역내에서 수검국 이외의 다른 조약 가맹국들의 兵力도 검사국이 실시하는 檢査의 對象이 된다.
- (76) 검사는 地上, 空中 또는 두 가지 방법 모두 사용할 수 있다.
- (77) 수검국 대표들은 차량 및 항공기내를 포함하여 檢査 着手時부터 검사목적상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검사팀을 同行한다.
- (78) 검사요청시 검사실시국은 피검사국에게 다음 事項을 통보한다.
- (78.1) 要請 理由
- (78.2) 地理좌표로 명시된 特定 地域의 위치
- (78.3) 검사팀이 원하는 入國地點
- (78.4) 입국지점 및 가능하면 특정 지역까지의 往復交通手段
- (78.5) 특정 지역내에서 檢査가 시작될 場所
- (78.6) 검사가 地上, 空中에서 또는 同時에 실시될 수 있는지의 여부
- (78.7) 空中檢査의 경우, 비행기, 헬기 또는 둘 다를 이용하여 행할 것인지의 여부
- (78.8) 검사팀이 수검국이 제공하는 車輛을 이용할 것인지 또는 상호 합의하에 自國 車輛을 이용할 것인지의 여부
- (78.9) 검사원에 대한 外交비자 발급에 관한 정보
- (79) 요청에 대한 應答은 가능한 한 最短期間內에 이루어져야 하며 24시간 이상을 넘겨서는 안된다. 요청후 36시간이내에

- 검사팀은 피검사국의 영토에 入國이 허용된다.
- (80) 응답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檢査 要請도 모든 조약 참가국에게 지체없이 전달된다.
- (81) 수검국은 가능한 한 특정 지역에 인접한 入國地點을 설정한다. 수검국은 검사팀이 입국지점에서부터 지체없이 특정 지역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82) 모든 가맹국은 검사팀들이 그들의 領土를 통과할 수 있도록 便宜를 제공한다.
- (83) 검사팀은 特定 地域에 到着한 후 48시간이내에 檢査를 終了한다.
- (84) 검사팀의 人員은 4명을 초과할 수 없다. 검사시 검사팀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 (85) 검사요원과 가능하면 보조요원들까지 임무수행 기간중 비엔나 外交協約에 따라 외교관에게 주어지는 免責特權을 부여받도록 한다.
- (86) 피검사국은 임무수행에 적합한 지역에서 검사팀에게 적절한 宿食을 제공하며 필요시에는 醫療措處도 실시한다. 하지만 이는 검사팀 자신의 텐트와 식량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 (87) 검사팀은 자신들의 항공도표는 물론, 지도·사진기·쌍안경·구술녹음기(딕터폰)를 사용한다.
- (88) 검사팀은 검사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내의 검사원들과 차량의 검사원간에 持續的인 通話를 위해 수검국의 적절한

通信裝備를 사용할 수 있다.

- (89) 검사국은 검사가 비행기, 헬기 또는 둘 다를 사용해서 행해질 것인지의 여부를 분명히 한다. 검사를 위한 航空機는 검사국과 수검국간의 相互合意에 의해 선택된다. 검사중 지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항공기를 선택한다.
- (90) 특히 검사팀의 특정 지역에서의 비행경로, 속도, 고도의 선택을 명시하고 飛行計劃이 관련 항공통제당국에 제출된 후에 檢査航空機는 지체없이 特定 地域에 진입하는 것이 허용된다. 특정 지역내에서 검사팀은 그들의 요청에 의해 飛行安全과 航空運行上의 要求事項 뿐만 아니라 제(74)항에 부합될 시에는 구체적인 관찰을 위해서 承認된 飛行計劃으로부터 離脫이 허용된다. 승무원에 대한 指示는 검사비행기에 동승한 피검사국 대표를 통해 이루어진다.
- (91) 검사팀중 1명이 요청할 경우 언제라도 항공기의 飛行裝備에 관한 資料를 관찰하고 검사비행중 항공기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비행승무원이 사용하는 지도와 도표를 볼 수 있다.
- (92) 공중 또는 지상검사요원들은 48시간 검사기간내에서 희망시 언제라도 特定 地域으로 復歸할 수 있다.
- (93) 수검국은 검사목적에 위해 도로없는 들판을 횡단할 수 있는 車輛을 提供한다. 검사지역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형을 고려해서 상호 합의가 될 때에는 검사국은 언제든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 (94) 검사국은 차량과 항공기를 제공할 경우 각 차량 또는 항공기에 대해 한 명의 운전자 또는 승무원을 동반시킨다.
- (95) 검사국은 檢査報告書를 준비하여 지체없이 모든 가맹국에게 전달한다.
- (96) 검사국이 자국의 차량과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를 제외하고 檢査費用은 수검국이 지불한다. 입국지점까지의 왕복경비비용은 검사국이 지불한다.
- (97) 준수 및 검증과 관련한 意思疏通을 위해 外交經路를 이용한다.
- (98) 모든 조약 가맹국은 합의된 信賴安保構築方案의 적용에 관해 다른 가맹국으로부터 적절한 說明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내용의 意見交換은 적절하다면 다른 조약 가맹국에게도 전달된다.

9. 「中距離核미사일廢棄條約」(The INF Treaty)

다음은 「INF 條約」의 제 XI, XII, XIII, XIX 조 및 檢證議定書에 근거하여 INF 條約의 檢證關聯 條項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INF 條約」에서 시행되고 있는 검증시스템은 네 가지 주요 檢證方法과 두 가지 機構의 設置 및 運用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가지 주요 검증방법은 (1) NTM 사용, (2) 1987년 11월 1일 현재 및 그 이후의 폐기대상 미사일에 관한 資料交換, (3) 네 가지 現場檢査, (4) 부수방안의 채택 등이다. 네 가지 現場檢査는 (a) 최초 교환

된 자료의 正確性 여부를 가리는 基礎檢査, (b) 미사일 폐기절차 및 폐기완료 確認檢査, (c) 짧은 시간의 통보후에 이루어지는 任意檢査, (d) 생산시설 한 곳에 대한 常駐監視所 運營 등이다. INF 조약에서 운용되는 두 가지 기구는 特別檢證委員會(Special Verification Commission: SVC)와 核危險減少센터(Nuclear Risk Reduction Center: NRRC)이다.

가. 國家技術手段

각국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國際法의 原則에 따라 國家技術手段(National Technical Means: NTM)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국의 NTM에 대해 간섭을 하거나 NTM에 의한 檢證을 방해하는 隱蔽裝置를 사용할 수는 없다. 단, 미사일이나 발사장치 보호를 위해 주변 隱蔽물을 이용하는 것이나 배치지역 내에 있어서 통상의 훈련, 보수, 임무수행에 관련된 은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NF 조약은 조약이 규정하는 義務를 指定場所(designated areas)에서 履行하도록 제한함으로써 NTM 활동을 돕는다. 즉 미사일과 발사대는 특정 지점이나 폐기시설에서만 폐기될 수 있으며 조약발효 30일내에 모든 미사일과 발사대는 指定場所에 위치해야 한다. 非指定場所에서 미사일이나 발사대가 발견될 경우 이는 條約違反에 해당된다.

나. 資料 交換

「基礎資料 設定에 관한 諒解覺書」(Memorandum of Understanding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Data Base: Database MOU)는 1987년 11월 1일 현재의 중장거리 및 중단거리 미사일과 발사장치의 數字, 類型, 所在位置와 技術的 特性에 관한 資料를 담고 있다. 조약 발효 30일후, 그 후 6개월마다 變動事項에 대한 資料가 교환된다. 자료교환은 NRRC를 통해 이루어진다.

다. 現場檢査

현장검사는 INF 조약 검증시스템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각국은 자국의 航空機와 裝備를 사용하며 飛行計劃書는 NRRC를 통해 접수된다. 入國地點을 통해 입국해야 하며 도착후 수검국은 검사국이 들여온 裝備가 조약과 관련없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검사한다.

〈표 1〉 INF 條約의 現場檢査關聯 條項

現場檢査類型	檢査要員規模	事前通報期間	檢査回數 및 有效期間
基礎 檢査 (제 XI 조 3항)	10	16시간	조약발효 30일후 시작, 60일간 지속
施設廢棄確認 (제 XI 조 4항)	10	16시간	폐기통보후 60일 이내에 실시
廢棄過程 (제 XI 조 7항)	20	72시간	3년
廢棄完了 確認 (제 XI 조 8항)	20	72시간	3년
任意 檢査 (제 XI 조 5항)	10	16시간	13년간 - 처음 3년, 연간 20회 - 다음 5년, 연간 15회 - 다음 5년, 연간 10회
常駐監視所 (제 XI 조 6항)	30	해당 안됨	조약발효 30일후 시작, 13년간

(1) 基礎 檢査 (baseline inspection)

최초에 교환된 자료의 正確性을 증명하기 위해서 조약 발효 30일후에 檢査가 시작되어 60일동안 계속된다. 同 기간중 쌍방은 상대방의 모든 關聯 施設을 訪問한다. 이후 6개월마다 교환되는 情報는 폐기과정에 대한 정보를 定期的으로 提供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 정보는 廢棄節次에 대한 檢査나 任意檢査를 통해 검증된다.

- (2) 廢棄節次 및 廢棄完了 確認檢査 (elimination process, elimination confirmation, support facility elimination inspection)

조약에 의거한 미사일, 발사장치 및 관련장비의 廢棄過程 履行 與否와 廢棄過程의 完了 與否를 확인하고 보조시설물과 미사일 기지의 閉鎖 與否도 검증한다.

- (3) 任意檢査 (short-notice inspection)

INF 조약에서 획기적인 진전으로 여겨지는 임의검사를 통해 쌍방은 指定된 場所(designated sites)에 대해 短時間의 通告만으로 現場檢査를 실시할 수 있다. 검사국은 16시간전에 통보하고 수검국에 입국한 후, 4~24시간 사이에 검사대상을 통보하고 검사를 실시한다. 條約에서 지정된 미사일基地나 補助施設(미사일 폐기와 생산시설은 제외)이 任意檢査의 對象이다. 조약 발효후 최초 3년간은 연간 20회, 그후 5년간은 연간 15회, 그리고 마지막 5년간은 연간 10회의 검사가 허용된다.

- (4) 常駐監視所 (permanent continuous monitoring system)

상대국의 지정된 1個 미사일 생산시설에 常駐監視所를 설치할 수 있다(조약 발효 30일후부터 13년간 유효). 상주감시소는 중거리 미사일인 소련의 SS-20과 INF 조약에 해당되지 않는 장거리 미사일인 SS-25사이에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첨가된 조항이다.

미국은 과거에 SS-20 미사일 생산지였고 현재도 SS-25 미사

일을 계속 생산하는 소련의 볼킨스키(Votkinski)에 상주감시소를 설치했고 소련은 이전에 Pershing II 미사일 부품을 생산했고 현재는 장거리 MX 미사일의 부품을 생산하는 유타주의 마그나(Magna)에 감시소를 설치했다. 미사일을 운반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컨테이너가 上記 생산공장 밖으로 나올 때에는 미리 통보되며 미사일을 운반한다고 발표된 컨테이너는 무게와 길이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검사국은 연간 8회 컨테이너를 열고 운반미사일 유형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차량은 중장거리나 중단거리 미사일을 운반할 정도로 큰 규모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될 수 있다. 미사일 운반에 이용될 수 있다고 판정된 차량은 내부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附隨方案

모든 미사일과 發射裝置는 特定 地點이나 廢棄場所에서만 폐기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조약발효후 30일 이내에 모든 미사일과 발사장치가 이들 指定地域에 集結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NTM에 의한 검증을 도와주고 있다. 또한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SS-25의 第1段이 SS-20의 第1段과 외형상 유사하여 발생하는 혼동과 條約違反 가능성을 막기 위해 常駐監視所의 운용을 補完할 수 있는 다음 附隨方案을 채택했다. 미국측의 요구후 6시간내에 소련은 SS-25 발사대의 고정구조물 지붕을 열고 12시간동안 연 채로 놓아 두어야 한다. 이는 미국측 인공위성의 偵察活動을 돕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연간 6회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다. 만일 미국이 INF 미사일과 유사한 ICBM 미사일을 배치하게 될 경우에는 소련도 이 조항을 활용할 수 있다.

마. 特別檢證委員會

특별검증위원회(Special Verification Commission: SVC)는 遵守紛爭을 해결하고 조약의 存續性과 有效性을 높힐 수 있는 방안을 합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SVC는 SALT 조약의 상설협의위원회(Standing Consultative Commission: SCC)와는 달리 정기적으로 회동하는 것이 아니라 必要에 따라 어느 일방의 要請에 의해 소집된다.

바. 核危險減少센터

핵위험감소센터(Nuclear Risk Reduction Center: NRRC) 설치에 관한 합의는 1987년 9월 15일 체결, 당일로 발효되어 1988년 4월 첫 메시지가 교환되었다. 핵위험감소센터는 평시에는 核武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危險을 줄이기 위한 技術的·制度的 方案들의 합의·이행을 촉진하고 非常時에는 양국간의 즉각적인 意思疏通 經路로 활용된다. INF 조약하에서의 모든 검사통보와 자료 교환이 NRRC를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1971년 9월 30일 체결된 「偶發的 核戰爭防止條約」(The Accidents Measures Agreement: AMA) 제4조의 탄도미사일 발사 통보, 1972년 5월 25일 체결된 「海上事故防止條約」(The Incidents at Sea Agreement: INCSEA) 제Ⅵ조 1항의 탄도미사일 발사 통보, 1988년 5월 31일 체결된

「戰略彈道미사일發射通報條約」(Ballistic Missile Launch Notification Agreement)에서의 정보교환, 「START 조약」의 통보 및 검사의정서에 의한 정보교환등이 NRRC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¹⁾ 소련은 NRRC를 현장검사 실시에도 이용하지만 미국은 1988년 1월 현장검사 전담기구인 現場檢查處(On-site Inspection Agency: OSIA)를 별도로 설치하였다. 현재 육군준장이 처장이며 두 명의 부처장을 두고 있는데 한 명은 국무부 소속이고 다른 한 명은 FBI 소속이다. 조약 시행과 동시에 쌍방은 200명의 항공승무원 명단, 同數의 현장검사이원 명단, 역시 同數의 상주감시소 감시요원 명단을 교환했으며 名單은 교체될 수 있으나 相對國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10. 「유럽 在來式武器減縮條約 I」 (The CFE I Treaty)

다음은 「CFE I 條約」의 제 XIII, XIV, XVI, XVII조, 정보교환의정서, 검증의정서 및 JCG에 관한 의정서에 근거하여 「CFE I 條約」의 檢證關聯 條項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1) 미국의 경우 NRCC는 통신기술자 1명,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국무부직원 1명 등 2인 1조로 8시간씩 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사용장비는 IBM 컴퓨터 1대 (PC모니터, 본체, 키보드로 구성됨)와 팩시밀리 1대로 구성된 세트를 4개 준비하여 1세트는 메시지 작성용, 1세트는 메시지 송신용, 나머지 2세트는 상대방 메시지 수신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소련은 동일 장비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메시지는 합의된 양식에 따라 각자의 모국어를 사용하여 작성되고 암호화하여 송신된다.

가. 通報 및 情報交換 (제 XIII, XVII 조 및 정보교환 의정서)

교환된 모든 정보가 현장검사의 대상은 아니지만 다음 事項에 관한 정보가 교환된다:

- (1) 참가국의 地上軍 및 空軍의 구조,
- (2) CFE 조약에서 규정하는 武器의 총 보유수,
- (3) 정규군 및 준정규군 보유 武器의 장소, 유형 및 총수,
- (4) 檢證對象(Object of Verification: OOV)²⁾과 公開場所(Declared Site),³⁾
- (5) 撤收武器가 소재했던 장소.

上記 정보의 交換時期는 다음과 같이 네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 (1) 조약서명시,
- (2) 조약 발효후 30일 이내,
- (3) 조약 발효후 매년 12월 15일,
- (4) 40개월의 무기폐기기간 종료후.

2) 檢證對象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定義된다:(1) 여단, 연대, 비행단, 비행여단, 독립대대, 독립포대대, 독립비행대대 등의 부대, (2) 상급 부대에 속하지 않은 지정된 무기저장소, 독립된 수리 및 유지 부대, 군사 훈련소, 규제대상 무기가 주둔하는 군사비행장, (3) 무기 및 장비 폐기 장소, (4) 여단/연대보다 상위부대의 직속으로 규제대상 무기를 보유한 대대미만급 부대의 경우 이 상위부대가 여단/연대급 이하부대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대대미만급 부대가 예속된 상위부대.

3) 공개장소는 CFE 규제대상무기와 기타 유사무기가 상주하거나 정기적으로 주둔하는 철도하역시설, 헬리콥터장, 보수 및 격납지역, 훈련지역, 사격 실시지역이 위치하는 모든 영토를 말하며 일개 공개장소는 다수의 검증 대상을 포함할 수 있다.

조약 참가국들은 또한 군 조직 체계상의 變化, 규제대상무기의 就役·退役 여부, 규제대상무기의 ATTU지역 出入에 관해서도 情報를 교환하며 검사, 폐기, 무기 재분류의 確認은 별도의 通報要件을 구비하고 있다. 통보는 外交經路를 이용하거나 「비엔나 협약」(The Vienna Document)에 의거하여 설치된 컴퓨터 通信網을 이용한다.

나. 現場檢査 (제 XIV 조 및 검사의정서)

현장검사는 특성상 다음 네 가지로 분류된다:

- (1) 공개장소검사(declared site inspection: DSI)
- (2) 특별구역내의 특별검사(challenge inspection within specified areas: CI)
- (3) 무기폐기검사(inspection of reduction: IR)
- (4) 확인검사(inspection of certification: IC)

참가국은 어떠한 국가도 검사할 수 있으나 같은 그룹내의 국가를 연간 5회 이상 검사할 수 없다. 참가국의 檢査實施 割當量(active inspection quota)의 배분은 각 그룹내에서 결정하며 그룹내 참가국간에 권한의 양도가 가능하다.

檢證對象(Object of Verification: OOV)은 기본적으로 규제대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여단이나 비행단급의 軍部隊와 特定 武器貯藏庫로서 公開場所檢査의 대상이 된다. 하나의 공개장소는 몇 개의 검증대상으로 구성될 수 있다. 훈련장소와 같이 몇 개의 檢證對象이 공유하고 있는 施設은 각 검증대상이 검사될 때마다

검사가 가능하며 수검국에서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 동일 검사팀이 連續檢査(sequential inspection)를 실시할 수 있다. 참가국이 동시에 받아 들일 수 있는 最高 檢査回數는 별도로 정의되고 있으며 동일 참가국으로부터 檢査義務割當量(passive inspection quota)의 50%를 초과하는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 特別檢査(CI)는 공개된 장소나 검증대상외에 기타 지역에서 通報되지 않은 裝備나 軍移動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수단이다.

檢査期間과 檢査通報要件은 檢査類型에 따라 다르다. 한 검사팀은 9명으로 구성되며 다국적 검사팀은 一國이 검사팀을 운영하는 책임을 지고 검사할당량에 영향을 받게된다.

검사팀은 검사가 도보, 차량, 헬리콥터 혹은 복합적인 방법으로 실시되는지를 미리 통보해야 하고 헬리콥터는 수검국에서 제공하며 수검국 차량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公開場所檢査는 의무적으로 실시되며 特別檢査는 수검국이 拒否할 수 있으나 거부시에는 拒否理由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공개장소검사의 경우 검시팀은 規制對象 武器가 소재해 있는 모든 施設물을 방문할 수 있으나 일부 민감시설에 대해서는 접근이 금지될 수 있고 이 경우 수검국은 條約이 違反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證明할 수 있어야 한다. 검사팀은 자체보유 이동형 수동 야간관측기, 쌍안경, 비디오카메라, 고정형 카메라, 디터폰, 자, 전등, 전자콤팩트, 랩톱컴퓨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검사종료후 검사팀은 檢査結果報告書 2부를 작성하여 검사팀장과 수행팀장의 서명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다. NTM/MTM (제 XV 조)

참가국은 NTM과 MTM의 使用權限을 갖는다. NTM과 MTM은 조약에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검사대상국의 국경선밖에서 인공 위성이나 비행기, 함정 등에 탑재된 탐지기로 정보를 수집하는 技術的 手段이다. 이러한 기술적 수단을 방해하거나 은폐물을 설치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라. 空中檢査 (제 XIV 조 (6항))

공중검사 實施原則에는 합의하였으나 시간관계상 구체적 實施方法은 후속협상인 CFE-IA 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현재 CFE-IA 협상에서는 공중검사에 관한 협의가 진행중인데 1992년 3월 24일 유럽 安保協力會議(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에서 참가국간에 합의된 「領空開放協定」과는 별개이다.

마. 合同諮問團 (제 XVI 조와 JCG에 관한 의정서)

合同諮問團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교환된 정보에 대한 의문점 해소, (2) 조약준수에 관한 모호한 점 해결, (3) 조약 이행시 어려운 점 해결.

〈표 2〉 CFE- I 現場檢査條項 要約

	公開場所 檢 査 (DSI)	特別檢査 (CI)	武器廢棄 檢 査 (IR)	武器再分流 確認檢査 ¹ (IC)
拒否權限有無	無 ²	有	無	無
檢査割當量 有 無	有 ³	有	無	無
受動檢査割當量 I. 기초검사기간 (발효후 120일)	OOV의 20%	DSI 할당량의 최고 15%	무기폐기검사와 재분류확 인검사는 DSI나 CI와는 전 혀 다름. 이들 검사는 검사 할당량에도 영향을 주지 않음.	
II. 무기폐기기간 (발효후 36개월)	매년 OOV의 10%	매년 DSI할당량의 최고 15%		
III. 폐기완료후 검 사 기 간 (폐기완료후 120일)	OOV의 20%	DSI할당량의 최고 15%		
IV. 잔 여 기 간	매년 OOV의 15%	매년 DSI할당량의 최고 23%		
檢査施設通報	검사팀의 출 입지점 도착 예정시간 최 소 36시간전 에 서면통보	검사팀의 출 입지점 도착 예정시간 최 소 36시간전 에 서면통보	검사팀의 출 입지점 도착 예정시간 최 소 96시간전 에 서면통보	검사팀의 출 입지점 도착 예정시간 최 소 96시간전 에 서면통보
檢 査 期 間	공개장소에 서 최고 48 시간 ⁴	특별구역에 서 최고 24 시간 ⁴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calen- der reporting period ⁵	최고 2일

	公開場所 檢 査 (DSI)	特別檢査 (CI)	武器廢棄 檢 査 (IR)	武器再分流 確認檢査 ¹ (IC)
地形的檢査 範 圍	검사될 OOV 에 속해 있는 모든 영토(해 당 OOV가 보 유하고 있는 규제대상 무 기가 소재한 별도의 장소 와 다른 OOV와 공유 하고 있는 장 소 포함)	최고 65km ² 에 해당하는 면 적(단, 지역 내 지점을 연 결하는 직선 이 16km를 초 과할 수 없 음)	정보교환 양 식에 따라 지 명, 좌표, 폐 기될 무기의 종류, 숫자 통보	확인실시국이 확인 실시 전 확인 검사를 위해 통보
檢 査 費 用	수검국	검사국	수검국	수검국

資料: External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Canada, *The Disarmament bulletin* (Winter 1990/1991), p. 6.

참고사항

1. 다목적 헬리콥터의 再分類(recategorization)란 다목적 공격용 헬리콥터의 무장을 해제, 전투지원헬리콥터로 재분류하고 규제대상무기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단, Mi-24R기와 Mi-24K기는 100대만 재분류가 허용된다. 전투가능훈련기의 再分類(reclassification)는 전투가능헬리콥터의 무장을 해제하고 규제대상무기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2. 수검국은 「敏感한 地點」(sensitive points), 장막이 드리워진 물체, 콘테이너에 대해 검사팀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으나 이들 檢査拒否對象은 가능한 적어야 한다. 검사수행팀은 이들 검사거부대상이 규제대상무기나 유사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검사의정서 제Ⅵ조 28항).

3. 무기폐기장소나 재분류확인장소는 OOV에 해당되지 않는다.
4. 한 검사팀이 한 수검국에서 連續檢査에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은 최고 10일이다.
5. 「Calendar reporting period」는 예정된 수의 무기가 파괴되거나 불도저, 트랙터 등 비군사용으로 전환되는 기간으로서 日數로 정의된다.

〈표 3〉 各國別 檢證對象數와 公開場所(特別) 檢査回數*

國 家	OOVs	期間 I 120日	期間 II 3年	期間 III 120日	期間 IV 무기한
벨 기 에	50	10 (1)	5 (1)	10 (1)	7 (1)
불 가 리 아	93	18 (2)	9 (1)	18 (2)	13 (2)
카 나 다	13	2 (1)	1 (1)	2 (1)	1 (1)
체 코	185	37 (5)	18 (2)	37 (5)	27 (6)
덴 마 아 크	65	12 (1)	6 (1)	12 (1)	9 (2)
프 랑 스	236	47 (1)	23 (3)	47 (7)	35 (8)
獨 逸	470	94 (14)	47 (7)	94 (14)	70 (16)
그 리 이 스	61	12 (1)	6 (1)	12 (1)	9 (2)
형 가 리	58	11 (1)	5 (1)	11 (1)	8 (2)
아이슬랜드	0	0 (1)	0 (1)	0 (1)	0 (1)
이 탈 리 아	190	38 (5)	19 (2)	38 (5)	28 (6)
룩셈부르크	2	1 (1)	1 (1)	1 (1)	1 (1)
네 델 란 드	88	17 (2)	8 (1)	17 (2)	13 (3)
노 르 웨 이	59	11 (1)	5 (1)	11 (1)	8 (2)
폴 란 드	134	26 (4)	13 (2)	26 (4)	20 (4)
포 르 투 갈	28	5 (1)	2 (1)	5 (1)	4 (1)
루 마 니 아	127	25 (3)	12 (1)	25 (3)	19 (4)
스 페 인	94	18 (2)	9 (1)	18 (2)	14 (3)
터 어 키	150	30 (4)	15 (2)	30 (4)	22 (5)
英 國	225	45 (6)	22 (3)	45 (6)	33 (7)
美 國	169	33 (5)	16 (2)	33 (5)	25 (5)
蘇 聯	910	182 (27)	91 (13)	182 (27)	136 (31)

* 1991년 2월 18일 각국이 선언한 OOV를 근거로 계산된 검사회수임.

11. 「戰略武器減縮條約」(The START Treaty)

다음은 「START 條約」의 제Ⅷ, Ⅸ, X, XI, XII, XV조 및 檢査議定書에 근거하여 「START 條約」의 檢證關聯 條項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가. 정보교환 (제Ⅷ조)

쌍방은 핵위험감소센터(NRRC)를 통해 다음 事項에 대해 週期的으로 通報하여 상호 情報를 交換하기로 합의하였으며 通報時間은 그리니치 標準時間(Greenwich Mean Time)에 의거한다.

- 규제대상 무기에 대해 양해각서의 분류목록에 따라 통보
- 규제대상 무기의 이동
- ICBM과 SLBM의 투하중량
- 규제대상무기의 폐기와 전환(conversion은 장거리 nuclear ALCM탑재 폭격기를 단거리 nuclear ALCM과 재래식 무기 탑재, 혹은 훈련용 폭격기로 전환하거나 단거리 nuclear ALCM탑재 폭격기를 재래식 무기장착 혹은 훈련용 폭격기로 전환하는 것을 말함)
- NTM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방안
- ICBM과 SLBM의 비행실험과 실험데이터
- 신형 전략공격무기
- 교환된 정보중 변동사항
- 현장검사와 상주감시에 관련된 통보

－ 이동식 미사일의 作戰展開

나. NTM (제Ⅸ조)

쌍방은 “一般的으로 인정되는 國際法의 原則에 따라”(in a manner consistent with generally recognize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NTM을 사용하며 이를 妨害하지 않고(non-interference) 隱蔽裝置(concealment measures)를 사용하지도 않는다.

－ 개별 이동식 미사일에 고유확인표(unique identifier)를 사용하여 검증에 도움을 준다(제 4 항).

다. 現場檢査 (제Ⅹ조와 檢査의정서)

13종류의 現場檢査가 실시되며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檢査 및 監視要員

現場檢査요원(이하 檢査要員)의 상한선은 400명, 상주감시요원(이하 監視要員)의 상한선은 300명이며 檢査용 항공기의 승무원 총수에는 규제가 없다. 조약발효후 25일내에 최소한 24개월 유효한 비자를 발급해야 하며 檢査요원은 수검국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거나 추방된 적이 없는 한 수검국이 거부할 수 없으나 감시요원이나 항공승무원은 수검국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할 경우 거부가 가능하다.

(2) 檢査 및 監視 通報

기초檢査, 변동사항檢査, 신시설檢査, 의혹장소檢査, RV 檢査,

기지당 이동식 ICBM 수량검사, 폐쇄예정 시설검사의 경우, 검사팀이 수검국 입국지점(Point of Entry: PE) 예상도착시간(Estimated Time of Arrival: ETA) 16시간전에 (1) 입국지점, (2) 예상도착시간, (3) 검사유형과 검사장소 지정시간(기초검사와 신시설검사는 ETA후 4~48시간; 기지당 이동식 ICBM 수량검사는 4시간이나 전개연습 종료후 48시간중 적은 시간, 그외에는 ETA후 4~24시간내에 지정), (4) 검사요원과 항공승무원 명단을 통보한다.

전환 혹은 폐기검사, 시설폐쇄 확인검사, 탄도미사일 기술적 특성 확인검사, 중폭격기 식별 검사, 중폭격기 용도전환 기초검사의 경우, 검사팀은 입국지점 예상도착시간 72시간전에 (1) 입국지점, (2) 예상도착시간, (3) 검사유형과 검사장소, (4) 검사요원과 항공승무원 명단을 통보한다.

상주감시소 설치의향 통보는 상주감시요원이 입국지점 예상도착시간 3일전에 (1) 시설설계도, (2) 입국지점, (3) 예상도착시간, (4) 상주감시요원과 항공승무원 명단을 통보한다.

(3) 航空交通 및 入國地點

쌍방은 2~3개의 入國地點을 선정할 수 있다(미국은 워싱턴 D.C.와 샌프란시스코, 소련은 모스크바와 울란 우드(Ulan Ude)를 선정함). 검사국은 檢査用 飛行機를 사용하여 검사요원과 감시요원을 입국지점까지 수송할 수 있으며 상업용 항공기도 사용 가능하다. 항공승무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0명이며 수검

국이 항공기의 연료 등을 지원한다.

(4) 入國地點 到着後 措置

검사국이 수검국에 반입하는 裝備와 物品은 반입시 검사하게 된다. 수검국은 現場檢査要員이 자국내에 있는 동안 숙식, 의료 등의 便宜를 제공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수검국은 監視要員이 입국지점에 있는 동안 숙식, 의료 등의 便宜를 제공하고 입국지점에서 감시시설까지의 交通便宜를 제공하며 비용은 13가지 경우에 따라 부담자가 구분된다.

(5) 現場檢査와 常駐監視의 一般規則

검사요원과 감시요원은 임무수행중 획득한 情報를 검사국의 동의없이 公開할 수 없다. 검사현장의 境界線은 지리좌표와 현장도면 교환에 관한 미·소 합의서나 통보의정서 제 I. 3항에 의거하여 접수된 現場圖面(site diagram)의 경계선을 따른다.

기초검사, 변동사향검사, 신시설검사, 의혹장소검사, RV 검사, 기지당 이동식 ICBM 수량검사, 폐쇄예정 시설검사의 경우, 수검국은 검사팀이 檢査場所를 지명한 후 9시간내에 검사팀을 입국지점에서 검사장소로 수송해야 한다. 단, 철로이동식 ICBM 발사대 검사시에는 24시간, 입국지점에서 미리 통보된 연속검사는 9시간, 미리 통보되지 않은 연속검사는 18시간이 허용된다.

검사요원과 감시요원은 임무수행중 애매한 사항에 대해 수행팀에게 해명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기초검사, 변동사향검사, 신시설검사, 의혹장소검사, RV 검사, 기지당 이동식 ICBM 수량

검사, 시설폐쇄 확인검사, 폐쇄예정시설검사의 경우, 현장검사팀은 10명 이하로 구성되며 탄도미사일 기술적 특성 확인검사, 중폭격기 식별검사, 중폭격기 용도전환 기초검사의 검사팀은 조약발효후 165일간은 15명 이하로 그 후는 10명 이하로 구성된다. 전환 혹은 폐기검사의 검사팀은 20명 이하로 구성되며 상주감시요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0명 이하로 구성된다.

검사현장에 대한 브리핑과 같은 檢査前節次(pre-inspection procedures)는 검사팀이 검사현장에 도착후 바로 실시되어 1시간내에 종료해야 하며 이후 바로 검사가 실시된다. 기초검사, 변동사항검사, 신시설검사, 의혹장소검사, RV 검사, 기지당 이동식 ICBM 수량검사, 시설폐쇄 확인검사, 폐쇄예정시설검사, 탄도미사일 기술적 특성 확인검사, 중폭격기 식별검사, 중폭격기 용도전환 기초검사의 검사기간은 최고 24시간이며 검사수행팀과 합의하에 8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RV 검사는 검사종료시까지 실시된다. 검사기간 종료후 檢査報告書 최종작성을 포함한 檢査後節次(post-inspection procedures)가 시작되어 검사팀이 수검국이 지정한 장소에 도착한 후 4시간, 혹은 검사팀이 세분화되었을 경우 모든 그룹이 지정장소에 도착한 후 3시간내에 끝난다.

連續檢査는 동일 입국지점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기초검사, 변동사항검사, 신시설검사, 의혹장소검사, RV 검사, 기지당 이동식 ICBM 수량검사, 폐쇄예정시설검사시 연속검사를 하고자 할 경우 검사팀은 검사전절차 종료전에 連續檢査意思를 통보하고 검사후절차 종료전 혹은 입국지점 귀환후 1시간

내에 다음 檢査場所와 檢査類型을 지정하는 시간(日時)을 통보한다. 동일검사팀이 한 번에 2개 이상의 시설을 지명할 수는 없다. 전환 혹은 폐기검사, 시설폐쇄 확인검사, 탄도미사일 기술적 특성 확인검사, 중폭격기 식별검사, 중폭격기 용도전환 기초검사에 연속검사를 하고자 할 경우 검사팀은 검사후절차 종료전, 예정연속검사 시작 24시간전에 연속검사의사를 통보하고 그외 사항은 쌍방향의하에 결정한다. 연속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검사후절차 종료후 검사팀은 입국지점으로 귀환하고 24시간내에 출국한다.

(가) 基礎檢査 (baseline)

통보의정서 제 I. 1항에 의거하여 조약발효후 30일내에 교환된 정보의 正確性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는 검사이다.

(나) 變動事項檢査 (update)

통보의정서 제 I. 2, 3항에 의거하여 조약발효후 6개월마다의 變動事項에 대해 30일내에 통보되거나(제 2 항) 이 때 통보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변동사항 발생후 5일이내에 통보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이다.

(다) 新施設檢査 (new facilities)

통보의정서 제 I. 3항에 의거하여 새로운 시설에 대한 통보시에 제출되는 規制對象 武器에 관한 資料에 대한 검사이다.

- 基礎檢査는 조약발효 45일후부터 165일까지 사이에 실시한다.
- 變動事項檢査는 조약발효 165일후부터 실시 가능하며 연간

15회 실시할 수 있으나 同一 施設에 대해 연간 3회이상 실시는 불가능하다.

- 新施設檢査는 조약발효 45일후부터 실시가능하다. 통보의정서 I. 1항에 의거하여 발효 30일내에 통보되지 않았으나 통보의정서 I. 3항에 의거하여 변동사항 발생시 5일이내에 통보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통보후 60일내에 검사를 실시한다.
- 검사의정서 Ⅲ. 3, 8항에 의거하여 검사장소가 지정된 후 1시간내에 수검국은 검사장소에 대해 규제대상무기와 이들 무기를 운반할 만큼 큰 컨테이너와 같은 물체의 이동을 금지시키는 등의 檢査前規制措置(pre-inspection restrictions)를 취하고 검사전절차 종료시까지 그대로 둔다.
- 한 번에(동시에) 최고 10회의 基礎檢査와 新施設檢査를 실시할 수 있으나 이들 검사를 同一 施設에 2회 실시하지는 못한다. 동시에 2회 이상의 變動事項檢査는 불가능하며 변동사항검사와 신시설검사시에 이동식 ICBM 발사대의 고유 확인표를 검사한다.

(라) 疑惑場所檢査(suspect sites)

이동식 발사대용으로 비밀리에 ICBM을 조립하는지 여부를 검사이다.

- 조약발효 165일후 의혹장소검사를 실시한다. 단, 연간 의혹장소검사 실시회수만큼 변동사항검사 권한은 줄어든다.
- 의혹장소검사의 대상은 (1) 양해각서 부록 I 제12항에 의혹

장소검사대상으로 명시된 장소(미국의 Ogden, Sacramento, Magna; 소련의 Zlatoust, Bershet, Petropavlovsk)와 (2) 상주감시가 종료된 시설이나 조약발효후 수검국의 기존 이동식 발사대용 ICBM보다 크거나 같은 크기의 ICBM 을 생산하기 시작했지만 상주감시의 대상이 아닌 시설이다.

- 동시에 2회 이상의 검사를 실시할 수 없으며 매년 同一 시설을 3회 이상 검사할 수도 없다.
- 검사대상 지정후 1시간내에 수검국은 규제대상 무기를 운반할만한 크기의 컨테이너와 같은 물체를 검사장소에서 이동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검사전규제조치를 실시하여 검사전절차 종료시까지 유지한다.

(마) RV 檢査 (Reentry Vehicle)

배치된 ICBM과 SLBM이 규정된 탄두수 이상을 보유했는지 확인하는 검사이다.

- 조약발효 165일후부터 RV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연간 10회 실시가 가능하나 동일시설에 3회 이상은 실시될 수 없다.
- 동시에 2회 이상의 RV검사를 실시할 수 없으며 동일시설에서 다른 유형의 검사와 동시에 실시할 수도 없다.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회 RV검사시 1개의 ICBM이나 SLBM만 검사한다.
- 검사장소 지정후 1시간내에 ICBM기지 혹은 잠수함기지를 포함하여 반경 5km의 해역내에 검사전규제조치를 취한다.

(바) 基地當 移動式 ICBM 數量 檢査 (mobile ICBM post-exercise dispersal)

검사대상 기지에 존재하거나 展開된 이동식 ICBM 발사대와 미사일의 총수가 해당 기지의 保有 許容數를 초과하는가를 검사한다.

- 同一 檢査장소에서 다른 유형의 검사와 동시 실시가 불가능하다.
- 同一 檢査장소에서 전개후 검사와 NTM의 효능증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동시에 실시할 수 없다.

(사) 轉換 혹은 廢棄檢査 (conversion or elimination)

전략공격무기의 轉換과 廢棄를 확인하는 검사이다.

- 조약발효 45일후 전환·폐기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수검국은 검사팀이 통보된 장소에 도착한 후 전환·폐기 일정을 제공한다.
- 기초검사 실시기간인 발효후 45~165일 사이에 전환·폐기 검사를 실시하되 동시에 두 곳 이상에서 실시될 수는 없다.

(아) 施設閉鎖 確認檢査 (close-out)

해당 시설의 閉鎖節次가 완료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검사이다.

- 시설폐쇄 통보후 60일내에 검사를 실시한다.
- 양해각서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발효후 30일내에 정보교환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기초검사 실시기간인 발효후 45~165일 사이에 검사를 실시한다.
- 검사팀이 입국지점 도착후 48시간내에 수검국은 검사팀을

지정된 장소로 수송한다.

- 동시에 3회 이상의 검사를 실시할 수 없다.
- 同一 입국지점을 이용하는 검사를 동시에 2회 이상 실시할 수 없다.

(자) 閉鎖豫定 施設檢査 (formerly declared facility)

통보의정서 제 I. 3항에서 폐쇄통보된 시설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이다.

- 조약발효 165일후에 실시한다.
- 매년 3회 실시할 수 있으나 동일 장소에 3회 실시할 수는 없다.
- 검사장소 지정후 1시간내에 수검국은 규제대상 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크기의 콘테이너 같은 물체를 검사장소에서 옮기지 않는 등의 검사전규제조치를 취한다.
- 동시에 2회까지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동일 입국지점을 이용한 검사를 동시에 2회 이상 실시할 수는 없다.

(차) 彈道미사일 技術的 特性 確認檢査 (technical characteristics exhibitions)

각국은 탄도미사일의 技術的 特性을 공개하기 위해 이들 무기를 展示해야 하는데 이 때 검사국은 각 탄도미사일의 기술적 특성이 교환된 情報와 一致하는가를 확인하는 검사이다.

- 각국은 통보의정서 I. 1항에 의거하여 조약발효후 30일이내에 자료를 교환한 후 최소한 3일이 지나서부터 조약발효후 45일 이전에 技術特性 展示를 실시한다.

- 검사팀은 展示日 최소 1일~최고 3일전에 수검국에 입국하며 수검국은 검사팀을 展示場所까지 수송한다.

(가) 重爆擊機 識別檢査 (distinguishability exhibitions)

각국은 중폭격기, 이전에 중폭격기로 분류되었던 항공기(以前 중폭격기), 장거리 nuclear ALCM의 識別可能性을 공개하기 위해 이들 무기를 전시해야 하는데 이 때 검사국은 nuclear ALCM 탑재 중폭격기를 검사하여 技術的 特性이 교환된 情報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고 nuclear ALCM의 最大 搭載量도 확인한다.

(타) 重爆擊機 用途轉換 基礎檢査 (heavy bomber conversion)

용도전환된 중폭격기가 轉換要件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검사이다.

- 통보의정서 I. 1항에 의거하여 조약발효후 30일이내에 자료를 교환한 후 3일이 지나서부터 조약발효후 45일사이에 각국은 중폭격기, 以前 중폭격기, 장거리 nuclear ALCM의 識別展示(distinguishability exhibitions)를 실시한다.
- 식별전시 종료후 단, 조약발효후 165일내에 재래식 탄두, 以前 중폭격기, 훈련용 중폭격기 등의 用途轉換 基礎檢査를 실시한다.
- 검사팀은 전시일 1~3일전에 수검국에 입국하며 수검국은 검사팀을 지정 장소까지 수송한다.

(파) 常駐監視 (제XII조)

배치 및 비배치 이동식 발사대용 ICBM의 數量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식 미사일 생산시설에 대한 常駐監視活動을 실시한다.

조약발효 30일후부터 상주감시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수검국은 감시대상시설에 한 명의 수행요원을 상주시켜 何時라도 상주감시지역에서 감시요원을 동행할 수 있도록 한다.

쌍방은 우선 각각 두 곳의 미사일 생산시설에 常駐監視所(perimeter-portal continuous monitoring systems: PPCMs)를 설치·운영한다. 미국은 10개의 탄두를 보유한 첼로이동식 미사일인 SS-24 생산시설이 소재한 우크라이나의 파블로가드(Pavlogard, Ukraine)와 단탄두 첼로이동식 미사일인 SS-25 생산시설이 위치한 우뚝우르트 자치공화국의 봇킨스크(Votkinsk)에 상주감시소를 설치한다. 미국에는 소련과 달리 미사일의 최종조립공장은 없으나 소련은 MX와 Midgetman 미사일의 제1단이 생산되는 유타주의 프로몬토리(Promontory)에 위치한 티오콜(Thiokol) 공장과 유타주의 마그나(Magna)에 위치한 헐큐러스(Hercules) 공장에 상주감시소를 설치한다. 쌍방은 앞으로 규제대상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4개 시설을 발표하며 이들 시설도 상주감시의 대상이 된다.

규제대상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크기의 물체, 컨테이너 등은 상주감시소에 설치된 出入口(portal)를 통해서만 외부로 나갈 수 있다.

검사국이 상주감시소 설치의사를 통보한 후 3개월내에 수검국은 검사국이 요청할 경우, 전화, 위성통신시설 등을 가

설하며 비용은 수검국이 부담한다.

- 상주감시소 설치의사 통보후 6개월내에 검사국의 要請과 費用負擔下에 수검국은 상주감시소 운영을 위한 전기, 수도 등 편의시설, 건설자재, 장비를 옮기는 데 필요한 運送手段을 제공한다.

라. 協力檢證方案

제 X 조

쌍방은 극히 제한된 경우(미니트맨 II, SS-11, SS-13과 같이 비행실험시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거나 연구용 로켓과 같이 START 조약의 규제대상이 아닌 경우 혹은 작전기지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의 경우)를 제외하고 조약체결 120일후부터(1991년 11월 28일부터), 탄도미사일 실험데이터의 암호화, 전파방해, 잭술에 의한 전송을 하지 않으며 실험자료 테이프는 상호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XII 조

NTM의 檢證效果를 증대하기 위해 검사국이 정한 位置와 時間에 수검국은 ICBM과 爆擊機를 전면 露出시켜서 인공위성이 이들 기지의 ICBM과 폭격기 수를 산정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매년 7회 이러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露出은 요청접수후 12시간내에 개시되어 요청접수후 18시간내에 종료된다. 露出과 現場檢査는 동시에 실시될 수 없다.

다. 合同遵守檢査委員會 (The Joint Compliance and Inspection Commission: JCIC): 제 XIV 조

합동준수검사위원회는 조약에서 규정한 의무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조약의 有效性과 存續性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합의하며 신형 전략공격무기를 START 조약에 적용하는 경우에 야기될 문제를 해결한다. 會議은 어느 한 쪽의 요구로 개최된다.